

# 우리나라 자본소득과세의 정책과제

2001.6.22

본 자료는 『우리나라 자본소득과세의 정책과제』 정책세미나 발표자료를 금융조세연구실의 이인실 선임연구위원과 조세연구원의 현진권 박사가 편집한 것이며, 본원의 공식견해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료문의 : ☎ 3771-0020 Fax 785-0273

## 목 차

제1장 미국의 근본적 세제개혁안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	1
【요약】 .....	4
I. 서론 .....	5
II. 한국 자본소득의 유효한계세율 추이 .....	7
III. 미국의 근본적 조세개혁안 .....	14
1. 배경 .....	14
2. 1986년 조세개혁의 파급효과 .....	15
3. 근본적 조세개혁안의 내용 .....	16
(1) 근본적 조세개혁안의 대두 .....	17
(2) 근본적 조세개혁안의 대략적 내용 .....	19
IV. 한국 자본소득과세제도의 특징과 정책과제 .....	20
1. 경제개방과 법인소득세제의 변화 .....	20
2. 조세부담의 국제비교 .....	23
3. 한국 자본소득과세의 정책과제 .....	24
(1) 자본소득세 기반의 포괄성 .....	26
(2) 조세격차의 축소 .....	27
(3) 근본적 조세개혁과 법인소득세 폐지안 .....	27
V. 결론 .....	29
참고문헌 .....	32

## 표차례

<표 3-1> OECD 국가들의 법인소득세율 변화 .....	16
<표 4-1> 법인소득세수규모의 GDP 대비 비율 .....	22
<표 4-2> 한국 법인소득세율의 변천과정: 일반법인의 최고한계세율 .....	23
<표 4-3> 유효한계세율의 국제비교 .....	24

## 그림차례

<그림 2-1> 법인단계유효세율 .....	8
<그림 2-2> 개인단계 유효세율 .....	10
<그림 2-3> 총 한계유효세율 .....	12

제2장 우리나라 법인세 어떻게 바꾸어야 하나 .....	33
--------------------------------	----

【요약】 .....	35
------------	----

I. 머리말 .....	37
--------------	----

1.1. 문제의 제기 .....	37
1.2. 연구방법론 .....	38

II. 주요국의 법인세 개편 동향과 국제 조세경쟁 .....	39
-----------------------------------	----

2.1. 주요국의 감세정책 동향 .....	39
2.2. 미국의 조세감면 정책과 법인세 폐지 논의 .....	42
1. 조세감면 정책 .....	42
2. 법인세 폐지 논의 .....	44
2.3. 국제조세경쟁 .....	45

III. 우리나라 법인세 현황 .....	47
------------------------	----

3.1. 법인세율 .....	47
3.2. 법인세수 .....	49
3.3. 유효세율기준의 법인세 부담 .....	53
3.4. 한국의 법인세제도의 문제점 .....	55

IV. KOCGE 모형 .....	60
--------------------	----

4.1 KOCGE 모형: 개요 .....	60
4.2 사용 모형 .....	60

V. 법인세 개편방안 모의실험 .....	62
------------------------	----

5.1 법인세 개편에 관한 5가지 모의실험(안) .....	62
1.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완전통합: 방안 A .....	62
2. 법인세 세율 인하와 기타 조세의 세율 인상 .....	63

(1) 법인세 세율 인하와 개인소득세 세율 인상: 방안 B	63
(2) 법인세 세율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방안 C	63
3. 법인세 세율 인하와 정부지출 감소	63
(1) 법인세 세율 인하와 정부소비지출 감소: 방안 D	63
(2) 법인세 세율 인하와 이전지출 감소: 방안 E	64
5.2 개별 개편방안에 대한 평가 기준	64
1. 법인세 개편에 의한 후생변화 측정	64
2. 법인세 개편에 의한 소득분배 효과의 측정	65
3. 법인세 개편이 노동의 공급과 저축에 미치는 효과	65
4. 법인세 개편이 산업별 생산과 요소소득에 미치는 효과	65
5.3 법인세 개편 모의실험 결과	66
1. 후생효과	67
2.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68
3. 노동공급과 저축에 미치는 효과	68
4. 산업별 생산효과	68
5. 세수 효과	69
5.4. 법인세의 귀착	69
<b>VI. 결론 및 법인세 개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b>	<b>70</b>
6.1. 결론	70
6.2. 법인세 개편에 대한 정책시사점	71
1. 법인세 개편 방안	73
(1) 조세감면제도의 정비	73
(2) 조세지출예산제도의 활성화	73
(3) 법인세율 인하와 이중과세조정	75
(4) 결손금 공제제도의 선진국 수준 개선	75
(5)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상시화	76
(6)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76
(7) 기업과세제도의 간소화	77
2. 준조세의 정비	77

## 표차례

<표 2-1> 선진국들의 감세정책 주요내용	40
<표 2-2> 주요국의 법인세 과세구간과 세율	41
<표 2-3> OECD 주요국의 법인세 비중	42

<표 2-4> 미국의 개인소득세율 인하계획 .....	44
<표 2-5> 미국의 소득세액 중 자녀세액공제 확대계획 .....	44
<표 2-6> OECD국가의 법인세율 변화추이 .....	46
<표 3-1>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소득 .....	48
<표 3-2> 우리나라 법인세율의 변화 .....	49
<표 3-3> 법인세 징수 실적 추이 .....	50
<표 3-4> 주요관련지표 대비 법인세 징수실적 .....	51
<표 3-5> GDP 및 총세입 대비 법인세수 국제비교(1998년 기준) .....	52
<표 3-6> 기업의 주요 경영지표 추이 .....	53
<표 3-7> 한계 유효세율의 가중평균 .....	55
<표 3-8> 제조업에 대한 한계 유효세율 .....	56
<표 3-9> 자본이득세율의 국제비교 .....	57
<표 3-10> 자본소득과세 과세방법의 국제비교 .....	58
<표 3-11> 이중과세제도의 국제비교 .....	59
<표 5-1> 법인세 개편 모의실험 결과 .....	66
<표 5-2> 법인세 개편 방안의 후생효과: 보상변화(CV)를 중심으로 .....	67
<표 6-1>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지출 .....	74
<표 6-2> 결손금 공제제도 국제비교 .....	75

## 그림차례

<그림 3-1> 실효세율(영업잉여 기준) 추이 .....	54
<그림 3-2> 결정세액기준 유효세율추이 .....	54
<그림 4-1> 모형의 소비 및 생산구조 .....	62

<b>【우리나라 자본소득과세의 정책 과제】 정책세미나 토론내용 .....</b>	<b>83</b>
--	-----------

## 제 1 장

# 미국의 근본적 세계개혁안을 통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 【요약】

자본소득과세는 소득의 범위설정과 측정, 물가변동에 대한 조정, 중복과세, 자원배분의 왜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론적·정책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미 고전적인 논의가 되었지만, 법인소득과세의 존재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하는 이론은 아직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에 와서야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을 뿐,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통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난하다는 주장이 아직도 압도적인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효율성, 단순성, 형평성을 기치로 내건 1986년의 미국의 획기적인 조세개혁이 원래의 취지에 맞게 정착되지 못하였으며, 1993년의 세법개정 이후에는 개인소득세 최고한계세율이 39.6%에까지 도달하고 구조도 점차 복잡해지는 “과거로의 회귀”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과거로의 회귀”에 대한 개혁주의자들의 반응은 주로 소비과세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근본적 조세개혁이었다. 그들에게는 “과거로의 회귀”가 없어도 1986년 이후의 자본소득과세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과거로의 회귀는 어불성설로 보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소득과세의 결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과거로의 회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득과세를 소비과세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조세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근본적 조세개혁론자의 주장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와중에 한국 자본소득과세의 구조와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최근 미국의 근본적 조세개혁 논의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자본소득과세의 발전방향은 무엇인지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기업의 투자를 법인 규모, 재원조달방법, 자산종류 등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 유효한계세율을 살펴본 결과, 자원배분의 다양한 한계(margin)에서 뚜렷한 조세격차가 존재함을 드러내었다. 특히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사이의 유효세율 차이는 가장 큰 조세격차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의도적인 조세정책의 결과인 부분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이 투자재원의 조달방법(신주발행, 사내유보, 사채발행)에 대해 중립적으로 제공된 반면 법인소득세는 타인자본에 대한 보상인 이자에 대해서만 비용공제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에만 특유한 것은 아니지만 타인자본 의존적인 한국 기업의 재무구조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한국 자본소득과세의 기본방향은 당분간 세계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선진국의 정책흐름을 앞지르기보다는 예의 주시하면서 소득과세의 기본 틀 안에서 단순화, 효율화, 공평화를 도모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는 것이 좋다. 최근 한국 내에서 부상한 법인소득세 폐지론은 논리적으로 완전한 틀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다루기 어렵다. 법인과 개인단계의 소득과세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효한계세율은 9개 OECD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세격차를 줄이는 것이 세율을 낮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근본적 조세개혁안은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 소비과세는 구조가 단순하여 조세비용을 낮추는데 유효한 개혁안이 될 수 있다. 또 소비과세 제도 하에서는 소득을 측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과세소득의 범위설정이나 측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소됨은 물론 자본에 대한 유효한계세율이 영이기 때문에 자본의 배분이나 현재와 미래 사이의 자원배분에 관한 왜곡도 없어진다.

## I . 서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제도는 그 경제 논리적 당위성에 대한 의문으로 인하여 많은 변화를 거듭하여 왔으며 현행제도는 여전히 불안한 이론적 기반 위에 서있다. 특히 법인소득세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정수입 확보의 중요한 수단인 하나이지만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와 별도로 존재해야 하는 뚜렷한 이론적 근거를 갖지 못하고 있다. 최근 일각에서 법인소득세의 폐지론이 제기되고 있기는 하지만 자본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의 중복과세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정책대응은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의 통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의 완전한 통합은 현실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기술적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는 완전한 통합 보다는 부분통합을 선택하고 있다. 즉 배당소득에 이미 납부된 법인소득세의 일부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다시 법인단계에서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만을 개인소득세로 납부하게 하는 것이다. 부분통합은 사실상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인소득세가 개인소득세와 별도로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으며 자본소득의 일부에 대한 중복과세가 부작용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보아도 무리가 없다.

법인소득세의 통합론은 기본적으로 자본소득과세의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과세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관심을 지니고 있다. 한편 보다 근본적으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소비에 대한 과세로 대체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 최근 정률세(Flat Tax)를 주창하는 Hall and Rabushka(1995)에 의해 널리 전파되었으며 이른바 근본적 조세개혁(fundamental tax reform)의 중심적 개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2001년 5월 Paul O'Neill 미국 재무부장관의 법인소득세 폐지론은 법인소득세 통합론의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Flat Tax의 도입을 통한 소득세의 소비세 전환을 지지해 온 부시행정부의 소비세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sup>1)</sup>

소득과세를 소비과세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처음으로 체계적인 연구를 한 것으로는 1970년대 말 영국의 Meade Committee(1978)와 1970년대 미국 재무부의 세계개혁안을 들 수 있다<sup>2)</sup>. 그러나 그 후 소득세의 소비세 전환은 실천

---

1) O'Neill 장관의 제안은 미국 연방정부 수입의 10%를 차지하고 최고세율이 35%인 법인소득세를 폐지하고 부족한 세수는 개인소득세를 늘림으로써 보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철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2) 미국의 세계개혁안은 일반적으로 Blueprints for Basic Tax Reform이라 하며, Brad-

에 옮겨지지 않고 지적실험의 주제로만 남아 있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소비세로의 전환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사회·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다시 소득과세의 소비과세로의 전환이 (특히 미국의) 경제학자, 정책담당자, 정치인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1980년대의 조세개혁의 성과에 대한 반작용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1986년 조세개혁(Tax Reform Act of 1986)은 각종 조세 감면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다시피 하였으며, 그 결과 넓어진 과세기반에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조세의 중립성을 고도로 높이는 목적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대규모의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이어서 소득재분배에 큰 비중을 두는 민주당 정부의 집권으로 세율이 다시 높아지고 조세의 효율성은 낮아지는 “과거로의 회귀”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조세의 기본 틀을 바꾸지 않고 감면제도나 세율을 조정하는 것만으로는 장기적으로 조세의 효율성을 높은 수준에 유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근본적인 조세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

미국이 법인소득세를 폐지하면 소득과세는 개인소득세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미국은 자기자본에 대한 중복과세 폐지에 있어 다른 선진국들을 앞지르게 될 것이다. 소득과세를 소비과세로 전환한다면 그 충격은 법인소득세의 폐지보다 훨씬 더 큰 충격을 세계경제에 가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나 주요 OECD국가에서 소득세를 소비세로 대체하거나 법인소득세를 폐지하는 정책전환이 실제로 일어나거나 일어난다면 언제 일어날지를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단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면 1980년대에 미국의 조세개혁 이후에 그러했던 것처럼 한국의 조세정책도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한국의 자본소득과세의 현황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자본소득과세의 역사적 흐름을 투자에 대한 유효한계세율을 통해 고찰한다. 아울러 한국의 자본소득과세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탐색하는데 있어서는 자본소득과세의 정책분석과 대안개발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미국에서의 정책논의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Ⅱ장에서는 유효한계세율을 통해 우리나라 자본과세의 세부담 추이를 살핀다. 제Ⅲ장은 최근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근본적 조세개혁 논의의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현행제도와 근본적 조세개혁안을 비교해 본다. 제Ⅳ장은 먼저 한국의 자본소득과세제도의 특징을 고찰하고, 주요정책과제를 제시한다. 제Ⅴ장에서 본 연구를 결론짓는다.

---

ford(1984)에 잘 정리되어 있다.

## II. 한국 자본소득의 유효한계세율 추이

한국경제는 1960년대 이후 -2.1%의 GDP 성장을 보인 1980년을 제외하면 적어도 1997년까지는 고속성장을 지속해 왔으며 경제개발의 전 기간에 걸쳐 정부는 전략적 성장부문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금융정책, 재정지출정책과 함께 조세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구사하였다. 한국경제의 발전과정을 기술하고 평가·분석하는 연구는 많다. 그러나 경제개발과정에서 조세정책이 수행한 역할에 관한 정교하고도 계량화된 연구는 드물다. 자본비용을 계산하거나 유효한계세율을 사용하는 실증적 연구도 많지 않다.

자본소득과세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아마도 조세정책의 투입과 성과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시계열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일 것이다. 자료의 양적·질적 부족과 열악한 연구환경을 감안할 때 한국의 조세정책분석이 양이나 질의 측면에서 OECD의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조세정책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관점에 따라서는 선진국들의 조세정책에 대한 활발한 분석에 자극을 받아 한국의 조세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도 상당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국의 자본소득세 유효한계세율을 추정한 연구로는 곽태원(1985), 윤건영(1988a, 1988b), 원윤희(1996), 유일호(1995), 윤건영·김중웅(1997)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연구들은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분석기간이 짧거나 여러 해의 자료를 취합하여 평균적인 파라미터 값을 계산한 다음 이를 토대로 일정기간 동안의 한국의 자본소득과세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기준 점을 설정하고 그 기준 점에서의 유효세율을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 결과 충분히 길고도 비교 가능한 유효세율의 시계열을 만들 수 없어 자본소득과세의 한계유효세율의 추이를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 초기의 연구는 무엇보다 자료수집의 어려움으로 인해 시계열분석이 여의치 않았다.

Hyun 외(2000)는 한국의 경제개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1960년부터 가장 최근 자료가 가능한 1998년까지 39년간의 유효한계세율을 법인단계와 개인단계로 나누어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림 2-1>, <그림 2-2>, <그림 2-3>과 같다<sup>3)</sup>. 이 연구는 동일한 방법으로 비교적 장기간인 39년간의 유효한계세율을 측정하기 때문에 다양한 자료의 불완전성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도처에서 조세정책 및

---

3) 유효한계세율의 계산과정과 사용한 가정은 매우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서는 가중치를 특정연도에 고정시킨 결과만을 제시하며, 이는 세법효과만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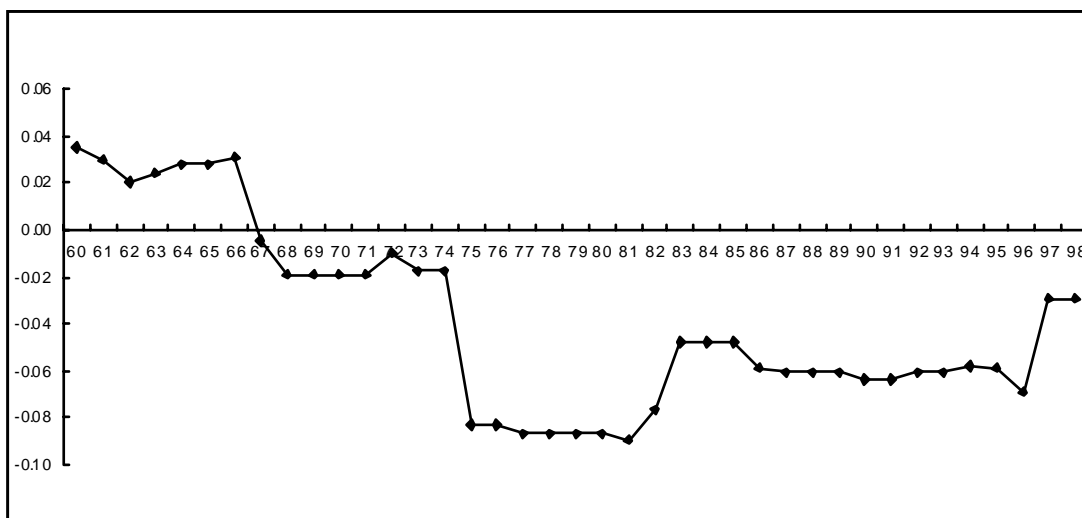
기업의 경영구조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가정을 해야만 했다. 이러한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960-1998의 39년간의 유효한계세율에 대한 분석으로부터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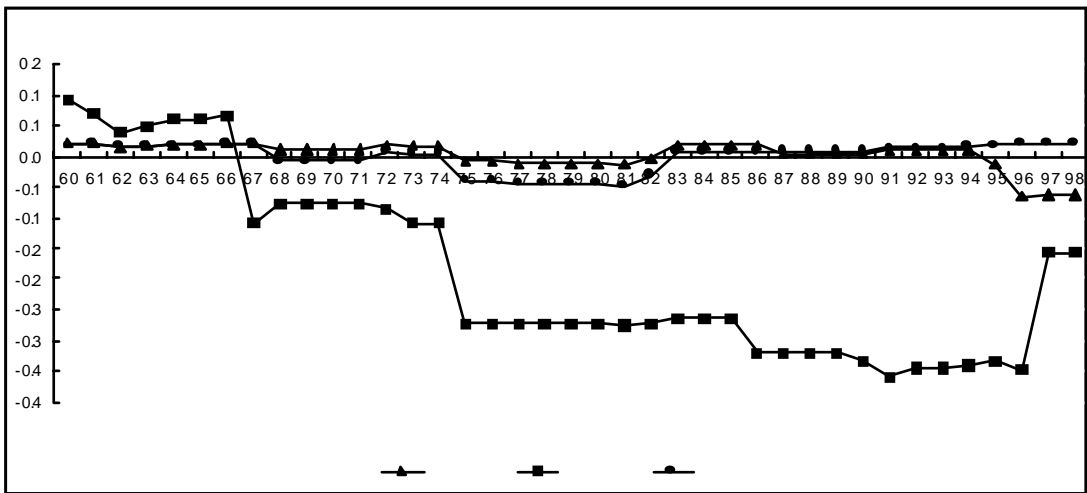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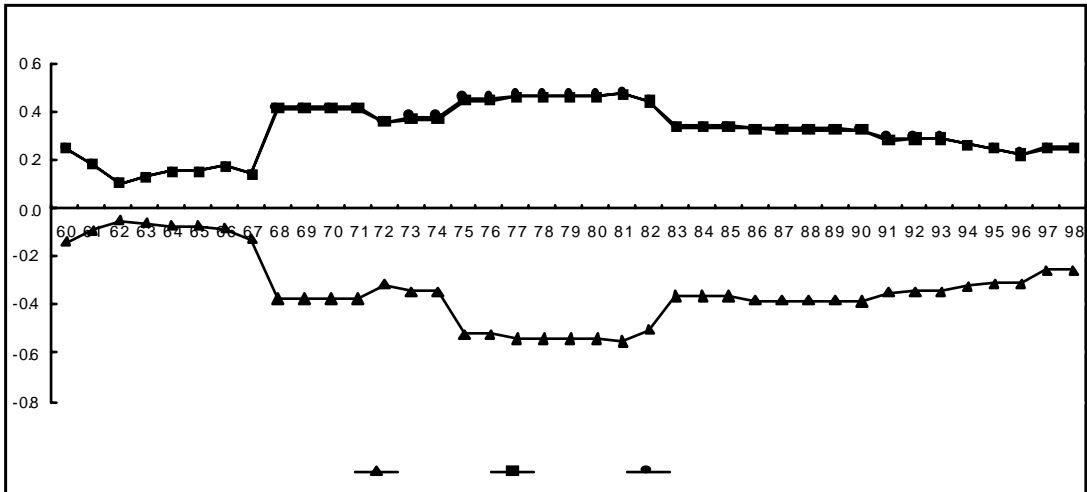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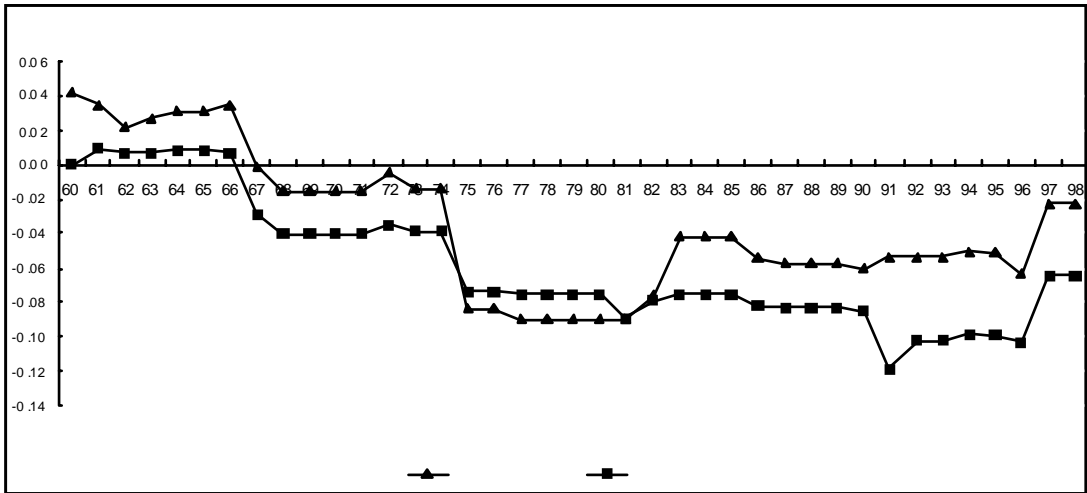
첫째, 조세지원정책은 1970년대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1975-1980년의 조세지원 강도는 매우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82년 이후 조세지원이 특정업종 중심에서 기능 위주로 바뀜에 따라 세부담이 다소 증가하였다.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법인단계에 집중되었으며 개인단계의 조세지원은 미미하였다. 그 결과 법인단계에서의 유효한계세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반면 개인단계의 유효세율은 사내유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양의 값을 지니고 있었다.

법인규모별, 재원별, 투자자산 종류별 조세부담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법인의 경우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중소기업, 차입에 의한 재원조달, 기계 및 장비자산 투자에 대한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곧 조세지원이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는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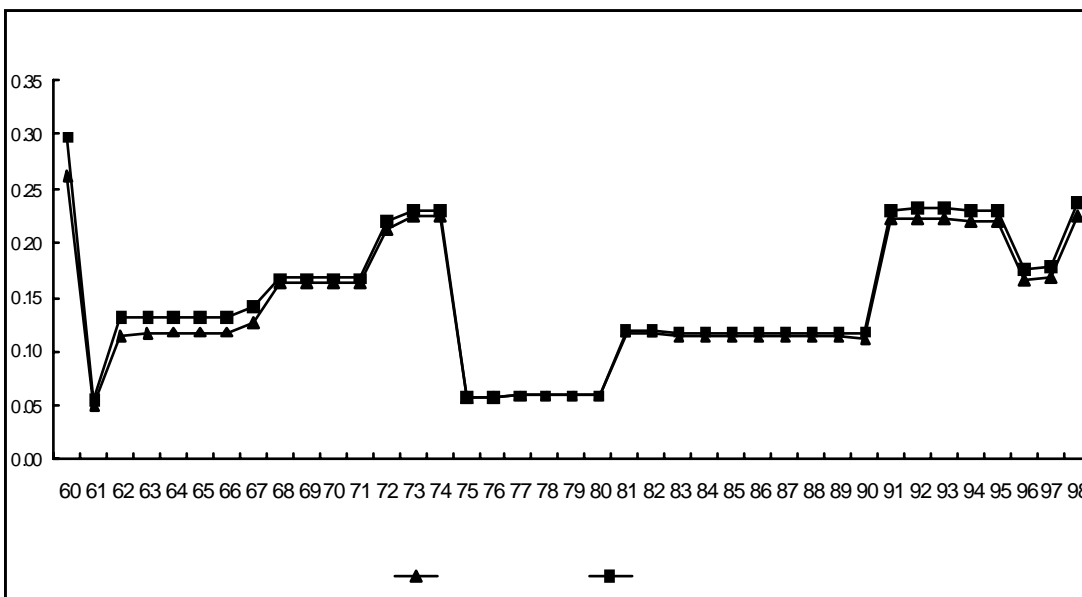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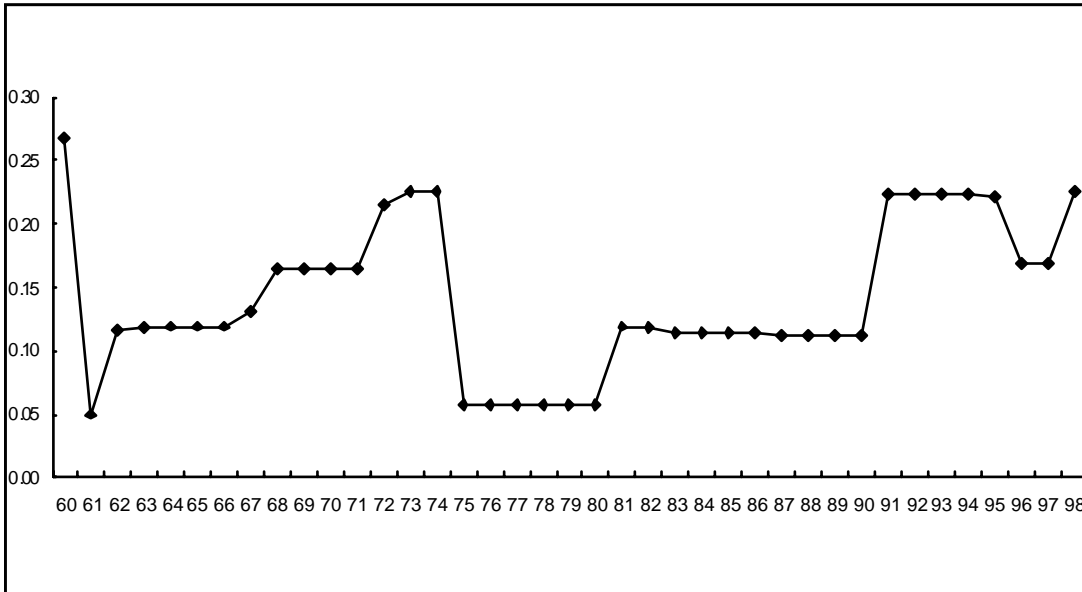
기업규모별, 재원별, 투자자산별로 유효한계세율이 서로 다른 경우 조세정책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야기한다. 따라서 특정자산에 대한 투자, 특정 형태의 투자재원조달, 특정형태의 기업 등을 선호하거나 차별하는 한국의 자본소득과세 정책은 자원배분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볼 때 비판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자본소득과세정책의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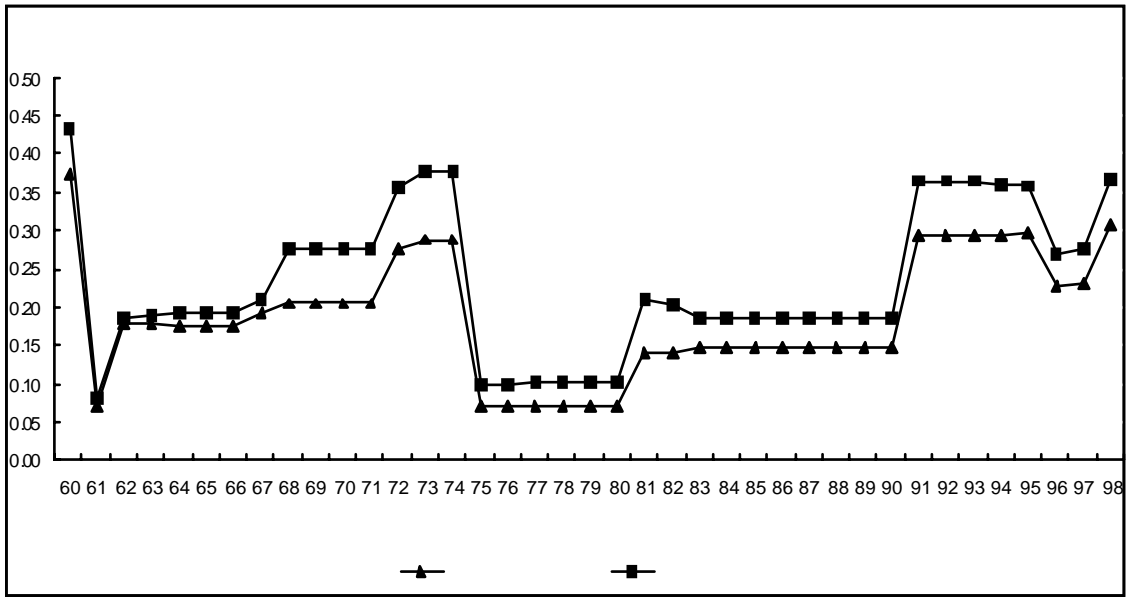
<그림 2-1> 법인단계유효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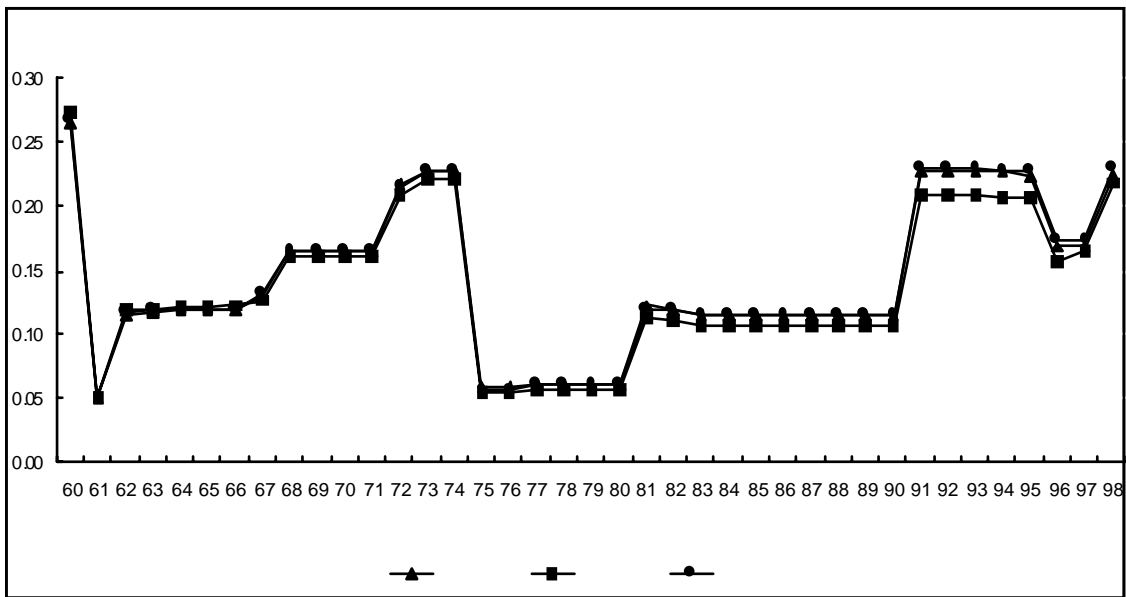


<그림 2-2> 개인단계 유효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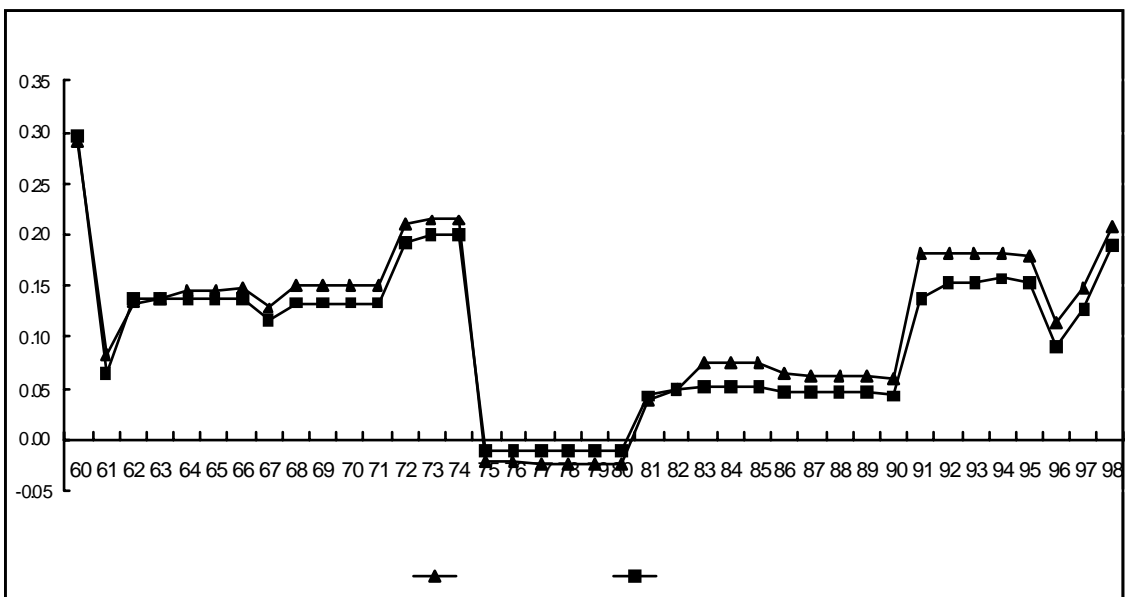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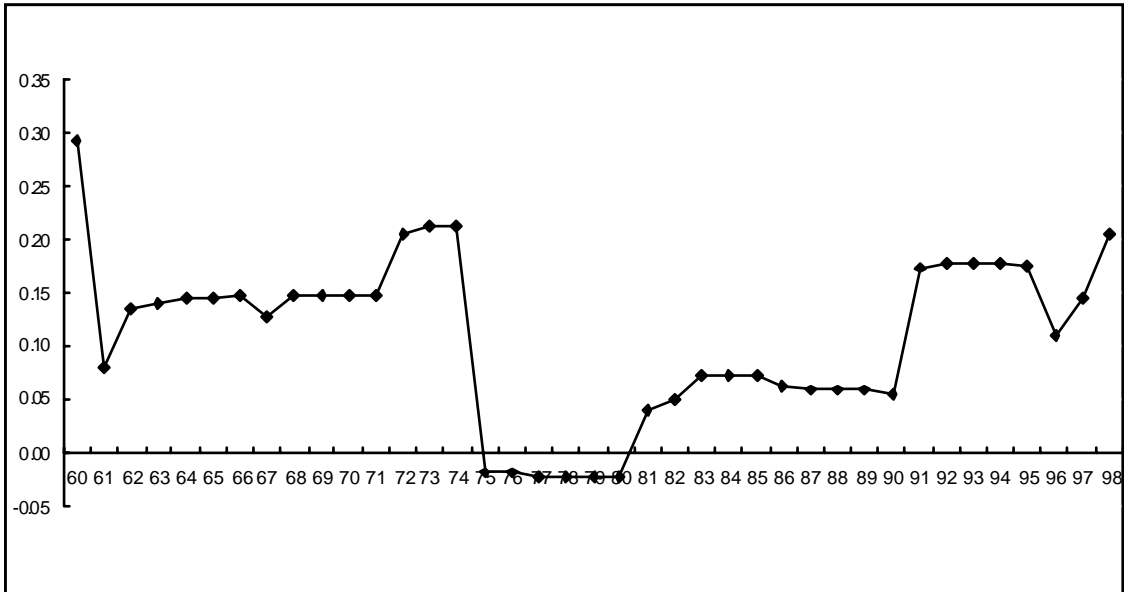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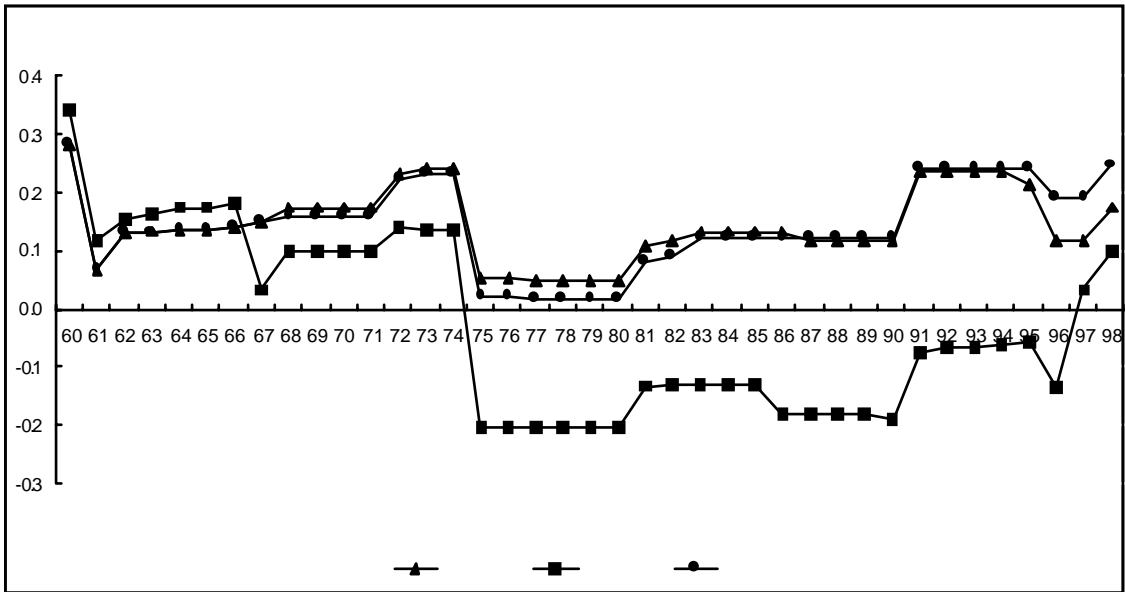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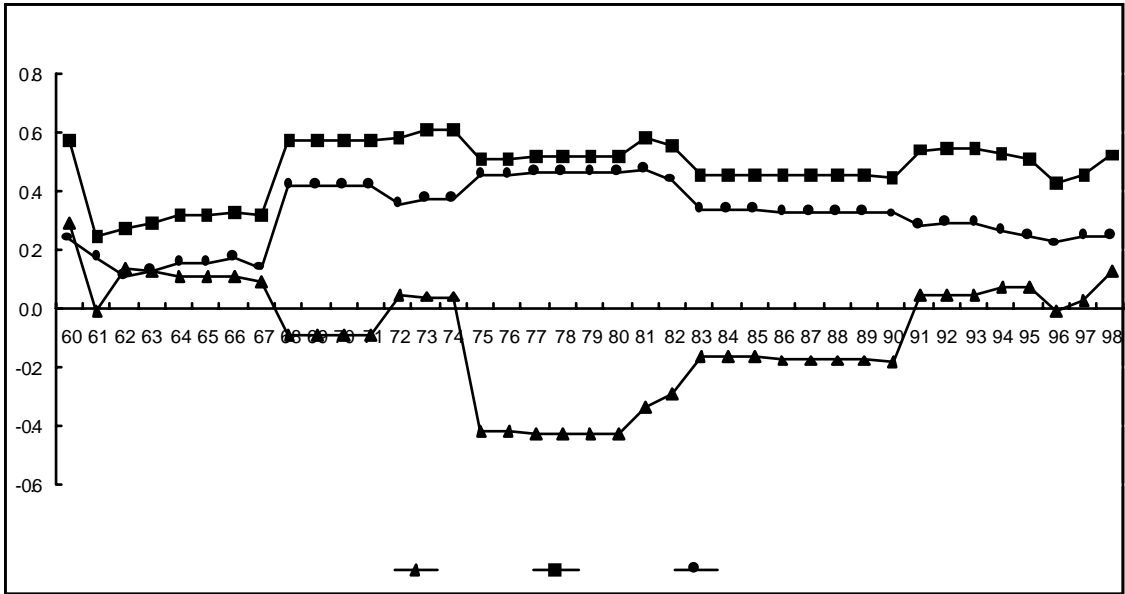
주: 자본이득에 대한 개인소득세율이 0이므로 사내유보 재원으로 이루어진 투자의 개인소득세 유효세율은 0임.





<그림 2-3> 총 한계유효세율





### Ⅲ. 미국의 근본적 조세개혁안

#### 1. 배경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근본적 조세개혁(fundamental tax reform)에 대한 논의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80년대의 조세정책의 흐름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조세정책은 1981년 공화당의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일대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레이건 정부는 소위 “공급측면의 경제학(supply side economics)”을 바탕으로 조세의 형평성보다는 조세정책을 통한 경제성장을 적극적으로 추구하였다. 특히 1981년에는 ERTA(Economic Recovery Tax Act)를 입법하여 강력한 세제지원을 도입하여 경제성장을 도모하였다.

ERTA는 1971년부터 사용되어 온 ADR(Asset Depreciation Range)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ACRS(Acelerated Cost Recovery System)을 도입하여 자산의 감가상각 기간을 대폭 줄이고, 10%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의 범위를 획기적으로 확대하였으며 개인소득세의 세율을 인하하였다.<sup>4)</sup> 그러나 이러한 조세지원정책은 과세기반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대규모 재정적자를 유발하게 되었다. 이에 레이건 정부는 1982년에 TEFRA(Tax Equity and Fiscal Responsibility Act)를 입법하여 ERTA하에서 단계적으로 도입되기로 예정되어 있던 감가상각 가속을 중지하고 감가상각 기간을 늘이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1981년의 조세개혁은 경제성장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된 셈이다. 더구나 과도한 조세지원으로 조세제도가 복잡하게 되었고, 조세지원을 얻기 위한 로비활동이 번성하여 사회적 비용이 높아졌으며, 조세의 형평성도 훼손되었다는 비판도 받게 되었다. 1982년의 TEFRA에 의해 1981년의 ERTA가 지닌 문제점이 부분적으로 완화되었지만 조세개혁이 완성된 것은 결코 아니었다. 따라서 재선에 성공한 레이건은 집권2기에 들어서 좀더 합리적인 조세개혁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 결과가 1986년의 조세개혁법 TRA(Tax Reform Act)이다.

1986년의 TRA는 1981-1986년 기간에 적용된 ACRS를 수정하여 감가상각 기간을 전반적으로 늘이고(Modified ACRS) 1962년에 도입되어 1981년에 이르러서는 ERTA에 의해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지원의 중심수단으로까지 사용되었던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전면 폐지하였다. 동시에 TRA는 법인소득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을 낮춤으로써 ERTA나 TEFRA와는 달리 조세감면을 줄이고 한계세율을 낮추는 원

---

4) 개인소득세의 최고한계세율은 70%에서 50%로 낮아졌으며 법인소득세의 최고한계세율은 1979년부터 1986년까지 46%에 유지되었다. Pechman(1983), pp.307-310.

칙에 충실한 획기적인 조세개혁이었다.<sup>5)</sup> 이러한 조세정책의 변화로 ERTA에 의해 큰 폭으로 벌어졌던 자산간의 조세부담격차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전반적으로 자본에 대한 유효세율도 낮아지게 되었다.<sup>6)</sup>

1986년의 TRA는 1980년대 미국의 조세개혁의 완성판이었으며 향후 한국을 포함하는 세계적인 조세개혁 붐을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6년 조세개혁의 이론적인 바탕은 감면을 최대한으로 줄이고 한계세율을 낮추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제도도 단순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경우 특정 유형의 자산에 집중되는 대한 강한 조세지원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감면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한계세율을 낮추는 것이 좋다는 것이다. 개인소득의 과세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위해 너그러운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하는 정책은 효율성 손실에 비해 형평성 제고에 대한 기여는 크지 않은 것도 문제였다.

그러나 1986년의 조세개혁 이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자 법인소득세율과 개인소득세율이 높아지고 조세지원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게 되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1993년의 세법개정인데 개인소득세의 최고한계세율은 39.6%까지 상승하고 법인소득세율도 34%에서 35%로 인상되었다. 특히 1986년의 법개정으로 50%에서 28%로 낮아졌던 개인소득세의 최고한계세율이 7년만에 다시 39.6%까지 상승한 사실은 미국의 조세제도가 1986년의 조세개혁 이전으로의 회귀하고 있다는 우려를 낳고 근본적인 조세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 2. 1986년 조세개혁의 파급효과

1986년의 미국 조세개혁은 이러한 과세기반을 넓히고 세율을 낮춘다는 두 가지 기본원칙에 입각해 추진되었다. 세율계급의 수를 줄이고 세율을 인하하며 투자세액공제제도의 폐지와 함께 각종 감면제도를 축소 또는 폐지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조세제도도 단순화하는 복합적인 목표를 추구한 것이다. 1986년의 조세개혁은 미국에게도 중요한 조세개혁이었지만 세계각국에서 유사한 조세개혁을 추진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미국의 1986 조세개혁이 다른 나라에 미친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세율

---

5) 개인소득세율은 15단계의 세율계급에 최고한계세율이 50%이던 것을 15%와 28%의 두 단계의 세율구조로 단순화하고 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하였다. 법인소득세율은 5단계의 세율계급에 최고세율이 46%이던 것을 15%, 25%, 34%의 3단계로 단순화하고 세율도 인하하였다. U.S. Congress(1986).

6) 자세한 분석에 대해서는 Jorgenson and Yun(2001), Chapter 4 참조.

인하 바람이다. <표 3-1>에 의하면 전체 18개 OECD국가들 중 13개국에서 법인소득세율이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조세정책의 변화는 미국 조세개혁을 뒷받침한 이론적 바탕이 설득력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국제간의 자본흐름이 조세제도에 민감하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의 1986년 조세개혁은 세계의 조세개혁의 동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표 3-1> OECD 국가들의 법인소득세율 변화

(단위: %)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추세
벨기에	45	41	40.2	40.2 <sup>1)</sup>	-
덴마크	50	50	34	32	-
핀란드	57	42	25	29	△
프랑스	50	37	33.3	33.3	-
그리스	49	40	40	nda	-
아일랜드	51	48	33	30	-
아일랜드	50	40	40	24	-
이태리	46	46	52.2	37	△
네덜란드	43	42	33	30/35 <sup>2)</sup>	-
노르웨이	51	51	28	28	-
포르투갈	50	40	39.6	32	-
스페인	35	35	35	35	○
스웨덴	57	30	28	28	-
영국	45	35	33	30	-
터키	49	47	42.8	30	-
독일	56	50	58.9/46.1	42.2/30 <sup>1)</sup>	-
미국	51	39	40	35	△
오스트리아	55	30	34	34	△

주: 1. 증가(+): 0개, 감소(-): 13개, 변화 없음(○): 1개, 변화(△): 4개

1) 부가세 포함기준

2) 앞의 세율은 과세이익 NLG 50,000까지, 뒤의 세율은 그 이상

자료: OECD, The OECD Tax Database, 2000.

### 3. 근본적 조세개혁안의 내용

1986년 조세개혁 이후 근본적인 조세개혁에 대한 논의는 주로 현행의 소득과세를 소비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논의가 설득력을 지

7) 같은 기간 한국의 법인소득세율은 33%(비상장대법인)에서 30%로 낮아지는 소폭의 변동을 보였다.

니기 위해서는 먼저 소득과세보다 소비과세가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뿐만 아니라 소비과세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소비과세로의 전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적 편익에 비해 현저하게 적어야 한다. 그러나 조세개혁의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편익과 비용이 사회구성원들 사이에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부터 미국의 조세개혁에 이어 조세개혁 붐이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소비과세와 소득과세의 비교는 물론 소득과세를 소비과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정책대안의 사회적 순편익을 측정하려는 노력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조세의 왜곡을 피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소비과세가 좋은지 아니면 소득과세가 좋은지를 판별하기는 어렵다. 여러 가지 분석모형이 동원되고 있지만 정교한 모형을 사용하는 동태적 일반균형분석도 모형의 구조와 사용하는 파라미터의 값에 따라 시뮬레이션의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완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소비과세가 소득과세에 비해 세제의 단순화 측면에서 우월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그 우수성이 소득과세를 소비과세로 전환하는데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을 상쇄하고도 충분히 남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세제도는 소득세제 하에서 소득을 측정하는 것이 어려운 것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지는 않다. 예를 들면 소비를 측정하기 위해 소득세제가 필요로 하는 감가상각이나 물가변동에 대한 연동(indexing)과 같은 번거로운 제도가 필요하지 않다. 효율성의 면에서도 소비과세가 소득과세보다 우월하다는 평가가 많다.

### (1) 근본적 조세개혁안의 대두

얼마나 “근본적”이어야 “근본적 조세개혁”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근본적인 조세개혁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에는 자의적인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최근 미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본적인 조세개혁안의 범주에는 가끔씩 기존의 소득과세 틀을 유지하면서 개인소득세의 기반을 확대하고 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다.<sup>8)</sup> 그러나 현행의 소득

---

8) 예를 들면 민주당의 Richard Gephardt 하원의원의 10% 조세(The 10% Tax)는 법인소득세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개인소득세의 과세대상에 각종 附加給付(fringe benefits: 주로 건강보험료와)와 포괄적인 자본소득(자본이득, 지방정부의 채권이자 등)을 포함시키고 연금납부금의 공제를 중단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한계세율을 낮출 것을 제안하고 있다. Gephardt의원의 10% 조세는 그 명칭에 불구하고 10, 20, 28, 32, 34%의 5단계 세율구조를 지니고 있다.

과세제도를 포괄적인 소비과세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이 근본적인 조세개혁안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다양한 “근본적인 조세개혁안”이 제시되었으며 개혁안 사이에는 구체적인 내용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제도를 단순화하고 과세기반을 최대한으로 확대하며 한계세율을 낮추려한다는 점에서 1986년의 미국 조세개혁과 비슷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1986년의 미국 조세개혁은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의 기본 틀을 유지한 반면 근본적인 조세개혁은 소득과세제도를 포괄적 소비과세제도로 전환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개혁의 범위와 깊이에 있어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큰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소비과세에 관한 논의는 최근에 시작된 일이 아니다. 예를 들면 1970년대 말의 영국의 Meade Committee 보고서(1978)와 1970년대 미국 재무부의 세제개혁안에서 이미 소비과세에 대한 이론적 분석은 물론 소득과세에서 소비과세로 전환하는 방법과 예상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후 학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소비과세로의 전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꾸준한 연구를 해왔지만 그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아온 것이 사실이다. 가장 큰 이유는 전환과정을 무리 없이 관리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소득과세를 소비과세로 전환함으로써 과감한 조세정책의 변화를 추구하는 근본적 조세개혁에 힘이 실리게된 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1986년의 조세개혁이 근래에 보기 드문 획기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과세의 여러 가지 문제를 근원적으로 치유하는 데에는 미치지 못하였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저축 및 투자에 대한 중복과세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세법상의 감가상각과 경제적 감가상각이 일치하지 않고, 물가변동에 대해 자본이득, 이자, 감가상각 등을 적절하게 조정하지 못함에 따라 실질 자본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지 못하는 문제도 그대로였다.

둘째, 1990년대의 미국의 조세제도가 1986년의 조세개혁 이전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다. 예를 들면 1986년의 조세개혁은 투자세액공제 등 다수의 감면제도를 폐지하고 세율계급의 수를 줄임으로써 세제를 단순화하고 한계세율을 낮추는 성과를 얻었지만 1990년대를 지나면서 점차 세제의 복잡성이 더해지고 세율은 높아지는 세제개편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1986년 조세개혁은 당초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도 나오게 되었다<sup>9)</sup>. 결국 1986년 조세개혁은 경제성장과 세부담의 형평성 및 세제의 단순화를 위한 것이었지만 개혁목표의 달성에는 실패하였다는 것이다.

1986년의 조세개혁이 비록 미국의 조세정책 변천사에 큰 획을 긋는 일대 사건

---

9) 이러한 연구의 대표적인 것으로 Auerbach(1999)를 들 수 있다.

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어렵게 된 것은 기존의 소득과 세제도의 기본 틀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소득과세를 바탕으로 하는 기존세제의 틀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소득과세제도가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과거로의 회귀가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여건을 변화시키지 못하였던 것이다. 근본적 조세개혁에 대한 관심과 지지가 학계와 정책담당자들 사이에 급속도로 확산된 것은 이와 같은 배경을 토대로 하고 있다.

## (2) 근본적 조세개혁안의 대략적 내용

근본적인 조세개혁에 관한 논의에서 대부분의 관심은 포괄적 소비과세제도에 집중되고 있다. 특히 Hall and Rabushka(1983, 1995)는 기존의 소득과세제도를 부가가치세 형태의 소비과세제도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Hall and Rabushka의 소비세는 부가가치 중 자본의 몫은 기업단계에서 과세하고 노동의 몫은 개인단계에서 재분배를 위한 인적공제를 허용한 다음 과세한다. 기업과 개인에게 동일한 단일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Flat Tax로 불리는 이 제도는 부가가치를 자본과 노동의 몫으로 구분하고 기업과 개인의 두 갈래로 나누어 과세하는 제도(bifurcated VAT)라 할 수 있다. Hall and Rabushka는 Flat Tax를 도입하면 조세 신고서(tax return)를 우편엽서 크기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근본적인 조세개혁안은 Hall and Rabushka의 제안 외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Armev-Shelby안, Nunn-Domenici의 USA(Unlimited Savings Allowance) Tax, 소매세(National Retail Sales Tax)등을 들 수 있다.<sup>10)</sup> Armev-Shelby안은 Hall and Rabushka의 Flat Tax안을 약간 수정하여 법률안으로 만든 것인데 미국의 하원의원 Dick Armev와 상원의원 Richard Shelby의 공동제안으로 1995년에 상하양원에 제출되었다. 그 기본골격은 Hall and Rabushka안과 동일하고 세율과 개인의 인적공제액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

USA Tax는 현금흐름에 기초한 부가가치세제도이다. 기업의 부가가치에는 11%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에서 저축에 대한 무제한의 공제를 허용하여 계산한 소비에 최고 40%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특기할만한 것은 다른 주요 개혁안과는 달리 제도의 도입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기업의 자본과 개인의 부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이다. 즉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의 자본에 대해 감가상각을 계속 허용하고 개인에 대해서는 제도의 도입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5만 달러까지는 소비에 충당하여도 공제가 허용되며 5만 달러를 초과

10)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Aaron and Gale(1996), Boskin(1996)을 참조하기 바란다.



하는 부분은 납세자의 순저축이 음(net dissaver)일 때 공제가 허용된다.

차입은 개인납세자가 순저축자(net saver)일 때 과세대상이 되며 순저축이 음일 때에는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의 부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제도의 도입 시점에서의 납세자의 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계속해서 관리해야 하는 난제를 안겨주고 있다. 기업과 개인이 납부한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허용함으로써 노동에 부과되고 이는 사회보장세를 부가가치세에 대한 과세로 전환하는 것도 USA Tax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이다.

소매세(National Retail Sales Tax)는 Flat Tax처럼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를 대체하고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같지만 최종소비액에 직접 세금을 부과하는 간접세 형태를 지니는 것이 다르다. 소매세는 기존의 소비세와는 달리 서비스를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반면 투자는 제외함으로써 기업간의 거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소비에 과세하게 되는 것이다. 1996년과 1997년에 Dan Schaefer, Bill Tauzin 의원 등이 미국 의회에 제출한 법안은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상속·증여세, 기타 몇 가지 개별소비세를 대체하는 것으로 17.6%(과표에 세금을 포함하면 15%)의 단일세율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민간단체인 Americans for Fair Taxation은 더 야심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는데 그 내용은 최종소비에 29%(과표에 세금을 포함하면 23%)의 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상속·증여세 외에 사회보장세까지 대체하는 것이다. Flat Tax나 USA Tax처럼 소매세도 재분배를 위한 장치를 필요로 하는데 이 부분은 직접세의 경우와 같이 소비액 또는 세액에 대한 인적공제를 허용하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소매세가 해결해야 할 문제의 하나는 특정거래가 투자를 위한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가 아니라 최종소비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간편한 방법으로 입증하는 일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기존의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최종소비단계에서 총 부가가치에 대해 높은 세율을 적용할 경우 탈세의 유혹이 매우 강해진다는 것이다.

## IV. 한국 자본소득과세제도의 특징과 정책과제

### 1. 경제개방과 법인소득세제의 변화

경제개방은 조세환경을 급속도로 바꾸고 있다. 개방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조세정책을 평가하는 기준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경제개방과 국제적인 자원이동의 신속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동성이 강한 세원에 대해서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

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국제적 이동성이 강한 자원의 대표적인 것은 자본이다. 그러나 교통·통신의 발달로 이동시간과 이동비용으로 측정된 나라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게 됨에 따라 노동의 국제적 이동도 조세정책의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어야 할 날도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위한 높은 세율은 정책적 기능을 제대로 담당하기 어렵게 되고, 세율인하를 통한 세원유치가 더 중요한 정책목표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개방과 관련하여 조세정책도 자본과 일자리의 유치에 무관심할 수 없게 된 것은 어제나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대표적인 세목으로 법인소득세제를 들 수 있다. 그러므로 경제개방의 진전에 따라 각국의 법인소득세제는 많은 변화를 겪어왔는데 그 기저에는 국제적인 조세경쟁과 조세조화와의 필요성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표 4-1>는 OECD 국가들의 법인소득세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1985, 1990, 1994년의 세 시점에서 살펴본 결과이다. 법인소득세수가 세 시점에서 모두 증가한 국가는 4개, 모두 감소한 국가는 7개이고, 그 외 국가들에서는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GDP에서 법인소득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아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전체 세수에서 법인소득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법인소득세수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3%였으나, 지금은 12%수준으로 낮아질 정도로 법인소득세수의 기여도가 감소하고 있다.

<표 4-1> 법인소득세수규모의 GDP 대비 비율

(단위: %)

	1985년	1990년	1994년	추세
캐 나 다	2.7	2.6	2.4	-
미 국	2.0	2.1	2.5	+
호 주	2.8	4.4	4.2	△
일 본	5.8	6.8	4.1	△
뉴 질 랜 드	2.8	2.4	4.4	△
오스트리아	1.5	1.5	1.3	-
벨 기 에	2.6	2.4	2.8	△
덴 마 크	2.4	1.6	1.9	△
핀 란 드	1.4	2.1	1.9	△
프 랑 스	2.0	2.3	1.6	△
독 일	2.3	1.8	1.1	-
그 리 스	1.0	2.0	2.4	+
아이스랜드	0.9	0.9	0.8	-
아 일 랜 드	1.2	1.7	3.3	+
이 태 리	3.2	3.9	3.7	△
룩셈부르크	8.3	6.9	7.6	△
네 덜 란 드	3.1	3.4	3.3	△
노 르 웨 이	8.1	3.8	3.5	-
스 페 인	1.5	3.0	1.7	△
스 웨 덴	1.7	1.7	2.8	+
스 위 스	1.9	2.1	2.0	△
터 어 키	1.5	1.3	1.3	-
영 국	4.7	3.9	2.7	-
증가(+): 4개, 감소(-): 7개, 변화(△): 12개				

법인소득세수가 감소하는 이유로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으로는 국가간의 조세 경쟁, 세율 인하 및 조세지원 확대, 이전가격을 통한 다국적 기업의 탈세 및 피세, 기업의 재무구조의 타인자본 의존심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표 4-1>에서 살펴보았듯이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법인소득세율을 낮추고 과세기반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는 한국의 일반법인의 최고한계세율의 변화를 통하여 법인소득세율의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1981년의 경우 40%에서 점차로 감소하여 1996년 이후부터는 28%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법인소득세율은 뚜렷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4-2> 한국 법인소득세율의 변천과정: 일반법인의 최고한계세율

(단위: %)

연도	법인소득세율
1981	40
1982	38
1983	30
1989	30
1991	34
1994	32
1995	30
1996	28

## 2. 조세부담의 국제 비교

조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는 조세부담의 수준을 적절한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조세부담이 무겁다는 불평이 많으며, 특히 자본과세와 관련하여서는 법인소득세율을 인하해야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조세부담의 적정성 여부는 절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론이 국제간 비교이다. 국제비교는 실제로 국제적인 자본 이동이 중요한 경우에 유용한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조세부담의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지표는 법인소득세의 최고한계세율이다. 그러나 비과세 및 감면이 많아 과세기반이 상대적으로 좁을 경우에는 세율이 높다고 해도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평균세율은 낮아지므로, 조세구조와 조세수입을 고려하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Hyun 외(2000)에서는 자본소득세를 법인단계와 개인단계로 나누어 한계자본이 실제로 부담하는 세부담을 유효세율의 개념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기존의 국제비교 연구인 Jorgenson and Landau(1993)와 같은 방법론을 사용하였으므로 이 결과를 사용하여 한국의 유효세율 수준을 비교·평가해본다.

<표 4-3>는 Hyun 외(2000), Jorgenson and Landau(1993)의 결과를 사용하여 자본소득세의 유효한계세율을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기업단계에서 한국의 유효한계법인소득세율은 OECD 9개국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법인단계의 유효한계세율은 점차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절대값이 매우 큰 음의 세율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 법인기업의 채무구조가 타인자본 의존적이며 투자에 대한 강한 조세지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단계의 유효한계세율이 음의 값을 보이는 사례는 한국 외에 프랑스, 이탈리아, 1985년의 영국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1990년의 경우 이탈리아의 유효한계법인소득세율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프랑스와 한국이 그 다음으로 절대값이 큰

음의 값을 보여주고 있어 매우 적극적인 조세지원정책을 구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조세지원제도와 고도로 타인자본 의존적인 기업의 재무구조가 상승 작용을 하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가능성이 크다.

개인단계의 유효한계세율은 1990년 영국과 같은 수준이었던 것을 제외하면 항상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전반적으로 한국의 개인소득 세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자소득과 60% 가량의 배당소득이 저율분리 과세 되기 때문이다. 법인단계와 개인단계에서 부담하는 세부담을 모두 고려하면 <표 4-3>의 OECD 10개국 중에서 한국의 유효한계세율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Jorgenson and Landau(1993)의 마지막 연도는 1990년이므로, 이후의 추세에 대해서는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1980년대 이후 1990년까지 법인단계와 개인단계의 유효한계세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같은 추세가 1995년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추세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조세지원정책이 방만하게 운영되어 조세수입의 손실과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유발한다는 평가에 따라 조세지원을 축소하는 정책을 시행한 결과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4-3> 유효한계세율의 국제비교

(단위: %)

	유효한 계세율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웨덴	영국	미국	한국
1980년	$t_c$	41.4	10.3	-30.3	16.2	-94.4	7.6	-19.7	-53.3	33.8	-46.3
	$t_p$	23.4	20.0	73.6	33.0	58.0	15.0	31.8	33.9	21.8	7.2
	$t$	55.1	28.2	65.6	43.9	18.4	21.5	18.4	-1.3	48.2	-35.7
1985년	$t_c$	13.6	11.2	-35.3	11.1	-100.3	1.0	-0.9	14.7	27.5	-20.2
	$t_p$	18.5	21.2	74.5	31.6	58.8	16.2	31.9	18.2	17.7	14.1
	$t$	29.6	30.0	65.5	39.2	17.5	17.0	31.3	30.2	40.3	-3.3
1990년	$t_c$	15.0	24.5	-37.3	5.2	-78.4	6.7	-	24.8	34.0	-22.5
	$t_p$	28.2	18.5	64.3	28.6	57.0	22.6	-	14.2	18.8	14.2
	$t$	39.0	38.5	51.0	32.3	23.3	27.8	-	35.5	46.4	-5.1
1995년	$t_c$	-	-	-	-	-	-	-	-	-	-11.2
	$t_p$	-	-	-	-	-	-	-	-	-	25.1
	$t$	-	-	-	-	-	-	-	-	-	16.7

자료: Hyun 외(2000), Jorgenson and Landau(1993).

### 3. 한국 자본소득과세의 정책 과제

한국의 조세체계는 포괄적 소득과세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포괄적 소득과세 제도는 과세소득을 포괄적으로 인식하는데 수반되는 여러 가지 기술적 어려움으

로 인하여 이상적인 수준에 도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특히 소득기반과세에서는 소득을 빠뜨리지 않고 포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득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포괄성이나 정확성은 다같이 사회적 비용의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조세행정기관은 직접적으로 행정비용을 들여야 하고 납세자는 납세의무를 완수하기 위해 납세협력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sup>11)</sup>.

한국의 자본소득과세는 투입자본에 대한 과세는 투자자산의 종류, 법인 규모, 투자재원 등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유효한계세부담을 부과하기 때문에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자본소득에 대한 유효한계세율은 높지 않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 사이의 자원배분 왜곡은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예측은 자원배분의 한계(margin)에서의 대체탄력성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조세격차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신뢰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 대한 시뮬레이션결과와 한국의 유효한계세율 구조를 감안할 때 한국의 자본소득에 관한 조세정책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결론은 부인하기 어렵다. 보다 신뢰성이 높은 정책제안을 위해서는 비효율적 조세정책으로 인한 사회복지의 감소를 계량적으로 측정하는 신뢰할만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한국의 자본소득과세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나라에 따라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소득과세를 근간으로 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소득과세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불만은 소비과세제도의 도입에 대한 관심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실제로 소득과세를 소비과세로 전환하는 나라가 있다면 미국이 선두주자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이미 학계와 정책담당자들의 연구는 정치적인 지지만 확보되면 곧 시행될 수 있을 정도의 다듬어진 조세개혁안을 제시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세계적인 개방경제체제 하에서 각국의 조세정책은 국제적인 규범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특히 경제적 국경의 장벽이 없어진 상황에서 세계경제에서 큰 비중을 지니고 있는 미국이 근본적 조세개혁을 단행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전세계에 미치게 될 것이다. 1980년대에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던 미국의 조세개혁 이후 OECD선진국은 물론 한국도 과세기반을 확대하고 한계세율을 낮추는 정책 전환을 추진하였다. 만약 미국이 Flat Tax와 같은 근본적인 조세개혁을 단행하여 소득과세를 소비과세로 전환한다면 그 충격과 파급효과는 1986년의 조세개혁을 훨씬 능가하게 될 것이다.

미국이나 EU가 과연 근본적인 조세개혁을 선택할지, 그리고 한다면 언제 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근본적인 조세개혁은 이론적·실증적으로 상당한 타당성을

---

11) 우리나라 조세행정에서 소득과약과 관련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현진권(1998)을 참조하기 바란다.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직은 정치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정치적 지지기반이 단단해지면 언제든지 실행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소규모 개방경제를 가진 한국이 대규모 선진국에 앞서 근본적 조세개혁을 단행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보다 현명한 자세는 세계적인 정책변화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면서 변화에 기민하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근본적인 조세개혁은 반드시 실행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조세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더하는데 더할 수 없이 좋은 연습장이 될 수 있다. 특히 정책담당자들이 현행제도의 틀에 묶이지 않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유용한 지적 유희장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지나치게 단기적인 유용성에만 집착하지 말고 한국도 다양한 창의적인 조세정책을 분석하여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어 비교·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축적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한국의 자본소득과세와 관련하여 중요한 정책과제를 과세기반의 포괄성과 조세격차의 축소 관점에서 제시한 다음,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하고 있는 법인소득세 폐지론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다.

#### (1) 자본소득세 기반의 포괄성

한국의 소득세제는 포괄적 소득기반과세를 개념적 토대로 하고 있다. 그러나 Haig-Simons의 정의에 합당한 이상적인 과세기반을 갖추는 일은 현실적으로 선진국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과세대상소득의 포괄성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 자체가 Haig-Simons의 정의에 현저하게 미치지 못하는 불완전한 형태를 지닐 수밖에 없어 엄격한 논의를 전개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소득으로서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거나 과세대상 자본소득이 부정확하게 포착되는 문제를 명시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중요한 조세정책적 의미를 지닌다.

소득과세대상의 범위가 Haig-Simons의 정의에 미치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예의 하나는 자기소유주택에 대한 귀속임대료(imputed rent)이다. 실제로 자기소유주택에 대한 귀속임대료를 과세되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소득과세의 틀을 떠나 소비과세의 관점에서 보면 귀속임대료에 대한 실질적인 과세여부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행제도의 틀 속에 구속되지 않고 근본적 조세개혁의 관점에서 보면 귀속임대료를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하는 현행제도는 포괄성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도 포괄성의 기준에 맞지 않는 예이다. 과세대상의 포괄성에 과세대상을 세분하지 않고 넓은 과세대상에 일관성 있는 과세방법을 적용하는 의미도 있다고 본다면 개인소득세의 분류과세도 포괄성의 떨어뜨리는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은 1974년에 개인소득의

종합과세를 확대하였지만 아직 이자소득의 대부분과 배당소득의 60%가량이 분리과세 되고 있다. 최근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그 대상은 부부합산 이자·배당소득 중 연간 4,000만원을 넘는 부분에 한정되고 있다.

과세대상의 포괄성이 부족하면 과세대상소득과 비과세소득 사이에 조세격차가 발생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낮아지게 된다. 같은 이유로 포괄적으로 넓게 정의된 과세대상에 일관성 있는 세율체계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과세대상 경제활동 사이의 유효세율 차등이 발생하고 그 결과 자원배분이 왜곡된다. 과세대상의 포괄성이 충분하지 않으면 형평성이 훼손되는 것도 쉽게 생각할 수 있다. 한국의 소득과세에서 과세대상소득의 포괄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것이다.

## (2) 조세격차의 축소

법인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투입하는 중요한 생산요소는 노동과 자본이다. 이 두 생산요소에 대해서는 유효세율에 차이가 없어야 자원배분의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법인소득세제도는 노동투입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하는 반면 자본투입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인 경우 과세하고 있다. 현행 법인소득세제는 노동과 자본에 대해 차별적인 처우를 할뿐만 아니라 타인자본을 자기자본보다 유리하게 처우함으로써 재무구조를 타인자본 의존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법인소득세의 중립성 결여는 노동과 자본,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선택을 왜곡하게 된다.

논의의 범위를 자본배분으로 좁혀서 보면 기업규모, 투자재원의 조달방법, 자산종류 등에 따라 뚜렷한 유효한계세율의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조세격차가 한국에 특유한 현상은 아니지만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타인자본과 자기자본 사이의 유효세율 차이는 투자재원의 조달방법에 관계없이 제공되고 있는 조세지원제도가 자원배분의 관점에서는 매우 비효율적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자원배분을 왜곡하는 조세정책이라도 시대적인 필요에 따라 타당성을 지닐 수는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조세의 자원배분 왜곡은 현실적으로 매우 큰 효율성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sup>12)</sup>.

## (3) 근본적 조세 개혁과 법인소득세 폐지안

---

12) 선진국에서는 조세의 자원배분 왜곡이 국민복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정교한 동태적 일반균형모형(dynamic general equilibrium model)을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의 조세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신뢰성이 일반균형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의 모형과 파라미터 값을 사용하는 수준 높은 연구가 나오기까지는 외국의 분석 결과를 참고하여 조세정책을 신중하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법인소득세제 폐지는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의 부분통합의 극단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새롭거나 조세정책 분야에서 생소한 발상은 아니다. 최근 한국의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법인소득세 폐지론은 법인소득세의 존재 이유가 이론적으로 분명하지 않다는 이미 잘 알려진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리의 전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틀린 것도 아니다. 실제로 법인소득세를 폐지할 경우 각종 조세격차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자본배분의 효율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법인소득세 폐지 이후의 조세체계와 조세수입 구조가 어떤 모습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지 않은 데 있다.

쉬운 문제부터 먼저 점검해보자. 법인소득세 폐지에 따른 조세수입 부족에 대비해 재정지출 축소로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세금을 더 많이 거둘지가 분명하지 않다.<sup>13)</sup> 다른 세금을 더 거둔다면 어느 세목에서 얼마를 어떻게 더 거둘지에 대한 방안도 있어야 한다. 그것은 법인소득세 폐지의 성과는 독립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인소득세 폐지와 함께 제시되어야 하는 조세수입 결손에 대한 대응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세수입 결손에 대한 대책과 같이 제시되지 않은 법인소득세 폐지안은 평가가 불가능한 불완전한 대안이라 할 수밖에 없다.

조세수입의 문제를 떠나 조세체계를 중심으로 보면 법인소득세 폐지론은 소비과세로의 전환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소득과세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추측에 불과하며 분명한 언급이 있을 때까지는 단정할 수 없는 일이다. 만약 법인소득세 폐지안이 소비과세로의 전환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조세개혁의 일환이라면 문제는 전혀 달라진다. 그러나 이 경우 국민들에게 법인소득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소비과세로의 전환으로부터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01년 5월의 Paul O'Neill 미국 재무부장관은 미국 연방정부 수입의 10%를 차지하고 최고세율이 35%인 법인소득세를 폐지하고 부족한 세수는 개인소득세를 늘림으로써 보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O'Neill 장관의 제안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철폐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의 제안은 소득과세를 기본으로 하는 조세체계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있으며 법인소득세의 통합론과는 동일선상에 있다. 사실 미국의 자본소득과세제도는 법인소득세의 (부분)통합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고전적 체계(classical system)로 불리고 있다. 만약 O'Neill 장관의 제안이 실행된다면 미국은 사실상 법인소득세의 완전한 통합을 이루는 최초의 국가가 됨으로써 부분통합에 머물고 있는 다른 OECD 국가를 앞지르게 될 것이다.

---

13) 1994~2000년 기간에 법인소득세는 국세수입의 12.4~19.2%를 차지하였으며 평균비중은 15.2%이었다. 재정경제부, 『조세개요』, 2001, p.14.

현시점에서 보기에 O'Neill 장관의 안이 폭넓은 지지기반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더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조세개혁안은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 중 Bush 대통령 진영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온 소비과세로의 전환방안으로 보인다. 만약 이러한 관측이 맞는다면 O'Neill 재무부장관의 말만 믿고 한국이 조세체계의 기본 틀을 선불리 바꾸다가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세계시장에서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국가의 정책흐름을 예의 주시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넘겨짚고 앞질러가기에는 한국경제의 대외개방도가 너무 높고 세계경제에 비해 규모가 너무 작다.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불확실성과 불확실성에 따른 손해를 줄이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다. 미국에서 법인소득세의 폐지나 소득과세의 소비과세 전환 등의 제안이 나오고는 있지만 대테러 전쟁이나 중동사태 등에 비추어 볼 때 1~2년 안에 결말이 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자본소득과세에 관한 한국의 정책기조는 적어도 당분간은 소득과세가 세계적인 규범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법인소득세의 폐지나 소비과세로의 전환은 국제적 자본이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철저한 분석과 사전 준비 없이 선불리 단독으로 결행하기보다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좋을 것이다.

## V. 결론

자본소득과세는 소득의 범위설정과 측정, 물가변동에 대한 조정, 중복과세, 자원배분의 왜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이론적·정책적 문제를 안고 있다. 이미 고전적인 논의가 되었지만, 법인소득과세의 존재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하는 이론은 아직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최근에 와서야 희미하게 들리기 시작했을 뿐,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를 통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무난하다는 주장이 아직도 압도적인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효율성, 단순성, 형평성을 기치로 내건 1986년의 미국의 획기적인 조세개혁이 원래의 취지에 맞게 정착되지 못하였으며, 1993년의 세법개정 이후에는 개인소득세 최고한계세율이 39.6%에까지 도달하고 구조도 점차 복잡해지는 “과거로의 회귀”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과거로의 회귀”에 대한 개혁주의자들의 반응은 주로 소비과세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근본적 조세개혁이었다. 그들에게는 “과거로의 회귀”가 없어도 1986년 이후의 자본소득과세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과거로의 회귀는 어불성설로 보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소득과세의 결함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과거로의 회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득과세를 소비과세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조세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 근본적 조세개혁론자의 주장이다.

1990년대의 소비과세론자의 주장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영국과 미국에

서는 1970년대 말에 이미 소비과세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Hall and Rabushka(1983, 1995)는 자본과 노동의 부가가치를 각각 기업과 개인단계에서 과세하는 두 갈래 부가가치세(bifurcated VAT)를 주장해 왔다. 그 후 1995-1997년에 미국 의회에 Flat Tax, USA Tax, National Retail Sales Tax 등의 근본적인 조세개혁안이 법률안형태로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2000년의 미국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는 근본적 조세개혁에 관한 논의가 증폭되었다. 급기야 2001년에는 미국 재무장관이 법인소득세의 폐지를 제안하고 한국에서도 법인소득세 폐지론이 부상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와중에 한국 자본소득과세의 구조와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최근 미국의 근본적 조세개혁 논의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자본소득과세의 발전방향은 무엇인지를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기업의 투자를 법인 규모, 재원조달방법, 자산종류 등에 따라 구분하고 각각의 경우 유효한계세율을 살펴본 결과, 자원배분의 다양한 한계(margin)에서 뚜렷한 조세격차(tax wedge) 존재함을 드러내었다. 특히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사이의 유효세율 차이는 가장 큰 조세격차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의도적인 조세정책의 결과인 부분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은 투자재원의 조달방법(신주발행, 사내유보, 사채발행)에 대해 중립적으로 제공된 반면 법인소득세는 타인자본에 대한 보상인 이자에 대해서만 비용공제를 허용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한국에만 특유한 것은 아니지만 타인자본 의존적인 한국 기업의 재무구조와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대목이다.

유효세율의 분석은 자본소득과세가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물론 유효세율의 차등이 국민복지에 미치는 영향은 조세격차뿐만 아니라 대체탄력성의 함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측은 불완전한 것이다. 현행 자본소득세제는 유효한계세율의 차등 외에 Haig-Simons 정의에 비추어 본 과세소득 범위의 부적절성, 물가변동에 대한 민감성, 소득측정의 부정확성 등 많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소득과세제도를 유지하는 한 만족스럽게 해소되기 어려운 난제라 할 수 있다. 어쩌면 유효세율의 차등은 오히려 쉽게 해소될 수 있는 문제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한국 자본소득과세의 방향은 무엇인가? 당분간은 세계경제의 흐름을 주도하는 선진국의 정책흐름을 앞지르기보다는 예의 주시하면서 소득과세의 기본 틀 안에서 단순화, 효율화, 공평화를 도모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이는 것이 좋다. 최근 한국 내에서 부상한 법인소득세 폐지론은 논리적으로 완전한 틀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다루기 어렵다. 법인과 개인단계의 소득과세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효한계세율은 Jorgenson and Landau(1993)에 포함된 9개 OECD국가와 비교할 때 한국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세격차를 줄이는 것이 세율을 낮추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수 있다.

조세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비용으로 효율비용, 납세순응비용, 조세

행정비용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조세제도의 사회적 비용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조세제도는 이러한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sup>14)</sup>. 이런 관점에서 미국의 근본적 조세개혁안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소비과세는 구조가 단순하여 조세비용을 낮추는데 유효한 개혁안이 될 수 있다. 또 소비과세 제도 하에서는 소득을 측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과세소득의 범위설정이나 측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소됨은 물론 자본에 대한 유효한계세율이 영이기 때문에 자본의 배분이나 현재와 미래 사이의 자원배분에 관한 왜곡도 없어진다.<sup>15)</sup>

---

14) 우리나라 조세제도의 운영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현진권과 윤건영(1999)을 참조하기 바란다.

15) 다른 조세가 있기 때문에 소비세가 최적이라는 것은 물론 아니다.

## 참고문헌

- 곽태원, 『감가상각제도와 자본소득과세』, 한국개발연구원, 1985.
- 원윤희, 「유효한계세율의 측정을 통한 우리 나라 자본소득과세 분석」, 『한국조세연구』, 제11권, 한국조세학회, 1996.
- 유일호, 『UR 타결에 따른 산업별 조세지원제도 개편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5.
- 윤건영, 「한국자본소득세 정책의 투자유인 효과분석」, 『재정논집』, 제2집, 한국재정학회, 1988a, pp.261~288.
- \_\_\_\_\_, 「자본소득세와 자본의 배분」, 『한국조세연구』, 제4권, 한국조세학회, 1988b, pp.121~158.
- \_\_\_\_\_. 김중웅, 「한국의 법인투자 유효한계세율」, 『공공경제』, 제2권, 한국공공경제학회, 1997, pp.161~200.
- 현진권, 「조세행정의 개선방향과 정책과제」, 현진권(편), 『조세행정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1998.
- \_\_\_\_\_. 윤건영,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평가와 개혁과제」, 한국조세연구원 개원 7주년 기념 심포지엄 발표논문집, 『조세개혁의 방향모색: 한국과 미국』, 연구논문집 99-01, 한국조세연구원, 1999.
- Aaron, Henry, William Gale (eds.), *Economic Effects of Fundamental Tax Reform*, Brookings Institution Press, Washington, DC, 1996.
- Auerbach, Alan, "Tax Reform in the United States: Lessons from the Tax Reform Act of 1986 and Its Aftermath," 『조세정책의 방향모색: 한국과 미국』, 연구논문집 99-01, 한국조세연구원, 1999.
- Boskin, Michael, *Frontiers of Tax Reform*, Hoover Institution Press, 1996.
- Bradford, David, *Blueprints for Basic Tax Reform*, *Tax Analysts*, 1984.
- Hall, Robert and Alvin Rabushka, *Low Tax, Simple Tax, Fair Tax*, McGraw Hill, 1983.
- \_\_\_\_\_ and \_\_\_\_\_, *The Flat Tax*, 2nd ed. Hoover Institution Press, 1995.
- Hyun, Jin K., Yunhi Won, Ilho Yoo, "Marginal Effective Tax Rates in Korea: 1960~1998", Working Paper 00-02,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2000.
- Jorgenson, Dale and Kun-Young Yun, *Lifting the Burden: Tax Reform, the Cost of Capital, and U.S. Economic Growth*, The MIT Press, 2001.
- \_\_\_\_\_ and Ralph Landau, *Tax Reform and the Cost of Capital*, The Brookings Institution, Washington, D.C., 1993.
- Meade, James Edward, *The Structure and Reform of Direct Taxation: Report of a Committee Chaired by Professor James Edward Meade*, London, Allen and Unwin, 1978.
- U.S. Congress, *Tax Reform Act of 1986: Conference Report, Volume II*,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1986.

## 제 2 장

# 우리나라 법인세 어떻게 바꾸어야 하나

## 【요약】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사회 다방면에서 빠른 속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는 조세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조세제도 역시 경제·사회 환경에 영향을 주게 된다. 최근과 같이 다수의 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해 다국적기업이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 하에서 법인세제 개편을 비롯한 국제 조세경쟁(tax competition)이 심화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자본소득세에 대한 개혁을 조세개혁의 중심적 과제로 채택하고 있으며 자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대부분 법인세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자본소득과세가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차원의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법인세의 경우는 법인세 연구 방향은 효율성 분석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형평성 분석 및 법인세가 기업의 재무구조 및 투자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외국의 연구결과를 보면 Fuchs, Krueger, and Poterba(1997)는 40개 대학교 경제학자들에 대해 법인세 귀착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자본은 법인세 전체 부담의 40%만 지게 된다고 밝혔다. Slemrod (1995b)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미국 National Tax Association 회원의 50% 이상이 법인세의 부담이 비자본 생산요소에 전가하고 있다고 한다.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을 비롯해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2000년을 전후로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감세정책의 추진은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가 주요 내용이다. Dalsgaard(2000)의 OECD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으로 중화학공업과 같은 특정 산업에 대해서 자본이 과잉 투자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즉 기업 형태, 투자 및 자금조달의 유형에 따라 조세 유인이 다르게 제공되고 있어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자본소득세율은 세법상으로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자본소득에 대한 표준 법정세율이 유사한 수준이다.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개인의 경우 배당소득이 비과세 대상이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자본소득에 따라 다른 세율체계를 가지고 있어 자본소득세율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한 것이 문제이다.

법인세 개편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세수기반 하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모형을 통한 분석결과 법인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법인세율을 인하해서 발생하는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나 소비세 등을 인상하기보다는 세출을 줄이는 것이 국민 후생측면에서 우월하다. 둘째, 법인세 인하에 따른 소득세 인상은 국민저축을 감소시키는 반면 지출감소는 국민저축을 증진시킨다. 셋째,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의 보전을 세금인상으로 대처하는 경우 형평성의 측면에서 소득세의 인상이 부가가치세의 인상보다 우월하다. 넷째, 법인세 폐지는 자본소득세에 대한 전반적 정비와 더불어 논의가 되어야 한다.

# Ⅰ . 머리말

## 1.1. 문제의 제기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경제·사회 다방면에서 빠른 속도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상황변화는 조세제도에 있어서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는 조세제도에 영향을 미치고 조세제도 역시 경제·사회 환경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우리경제는 외환위기 이후 세계화 및 정보·기술의 급격한 진전과 이로 인한 충격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각종 사회·복지 제도의 도입에 따른 지출증대, 대북 지원 및 통일 관련 재정수요증대 등으로 중장기 재정수요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세계 개혁에 대한 관심이 경제위기의 극복을 위한 정책선택과정에서 후순위로 간주되면서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 수단으로 세계가 동원된 점이 없지 않다는 차원에서 조세제도의 개혁은 오히려 후퇴한 감이 있다.

최근 자본시장의 세계화가 급진전되면서 주요 국가들은 자본의 수익에 대한 자국의 세율을 인하시켜 국제 자본시장으로부터의 자본유입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외국기업이 국내에 진출해 다국적기업이 일반화되고 있는 추세 하에서 법인세제 개편을 비롯한 국제 조세경쟁(tax competition)을 통한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각 나라마다 조세제도 개편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으며 각국 조세정책의 초점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에 맞추어져 있다. 이는 최근 각국 조세개혁의 중심적 과제가 자본소득세이며 자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대부분 법인세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2001년 미국의 재무장관의 발언으로 언론의 관심을 모았고 우리나라도 집중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법인세의 폐지문제도 이 같은 관점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여 그 동안 법인세제와 관련하여 나름대로 개편노력이 있어왔다. 법인세의 한계세율을 낮추려는 노력도 있었으며 법인세와 관련한 감면제도 많이 정비되었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이중과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치도 도입되고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세계적인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추세를 감안할 때 법인세를 비롯한 세계 전반적인 개편은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물론 서로 상충되는 여건 속에서 특정한 세제에 대한 세계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sup>16)</sup> 그러나 현 시점에서 정책의 순위를 설정하고 세계화와 정보화에 적극 대응하는

---

16) 우리 정부의 중장기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은 '넓은 세원·낮은 세율, 경쟁력 있는 세제, 알기 쉽고 간소한 세제'이다. 2002년 재경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의 여건은 '복지지출 증가·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세부담의 공평성을 제고하면서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조세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경제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건전 재정기조를



조세정책의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자본과 고급 두뇌 또는 고급기술의 확보가 오늘날의 국가 국제경쟁력의 관건으로 대두된 현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체질 강화를 위해 법인세제의 대대적인 개편방안은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따라서 법인세의 본질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어진 현실적 여건을 감안하여 우리나라 자본소득과세가 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차원의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고 세원인 기업과 가계의 체력을 보강한 후 그 힘을 바탕으로 국가 부채를 축소하고 재정수요에 대비해야 한다는 기본 명제 하에서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방향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 1.2. 연구방법론

법인세에 관한 연구는 크게 법인세가 자원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효율성 분석과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형평성 분석 및 법인세가 기업의 재무구조 및 투자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 등 크게 세 가지 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위의 세 가지 분야 중 법인세의 효율성 분석은 여타 조세의 효율성 분석과 같이 법인세에 의한 국민경제 총 후생의 감소분을 측정하는 법인세의 초과부담(excess burden)을 추정하는 것이다. 둘째, 법인세의 형평성 분석은 법인세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있는데, 다시 말해 법인세의 실질부담이 경제주체간이나 경제부문별로 여하히 배분되는가를 분석하는 법인세의 귀착(incidence)이라 한다. 법인세의 귀착은 몇 가지 유형으로 다시 세분할 수 있을 것이다.<sup>17)</sup>

최근 법인세 귀착에 대한 학계의 견해가 일치되는 부분은 단기에는 자본이 이동성이 작으므로 법인세가 거의 자본에 귀착되는 반면, 장기에는 자본의 이동이 자유로우므로 법인세 부담이 노동 등 여타 부문으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Fuchs, Krueger, and

---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 및 기업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노동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세계 시장의 통합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미국, 독일, 일본 등 각국은 유리한 투자 및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득세와 법인세를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주요 각국과 세계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만큼 외국보다 높은 세율체계를 유지할 수 없는 등 국가간 조세정책의 상호의존성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낮은 세율 등 외국보다 유리한 조세환경을 유지하면서 세입기반을 확대하여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뒷받침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 17) ① 특히 법인세의 실질적인 부담이 생산자, 소비자 및 생산요소 공급자에게 여하히 배분되는가를 분석하는 것, ② 노동과 자본에 대한 기능적 분배, ③ 법인세 실질부담의 계층별(개인별) 분배(personal distribution): 법인세가 소득계층별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 ④ 기타 법인세의 지역별 귀착(regional incidence), 세대간 귀착(intergenerational incidence): 법인세가 개별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서로 다른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

Poterba(1997)는 40개 대학교 경제학자들에 대해 법인세 귀착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 자본은 법인세 전체 부담의 40%만 지게됨을 밝혔다. 이와 같이 자본의 부담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자본시장의 대외 개방정도가 국가마다 불완전하고 저축의 이자율 탄력성에 대한 추정치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Slemrod(1995b)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미국 National Tax Association 회원의 50% 이상이 법인세의 부담이 비자본 생산 요소에 전가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Auerbach and Slemrod(1997)는 현재 Harberger(1962)의 법인세 귀착에 대한 결론은 거의 사문화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현재까지 수행된 법인세 관련 국내 연구는 거의가 유효세율의 추정에 관한 것들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예로서 노현섭·김태우(1996), 원윤희(1996), 유병훈(1993) 및 조계근(1996) 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강동구(1995), 이우택(1999)과 유시권(1997)은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방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법인세 세율 인하의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안종석(1996)은 개방경제 하에서 법인세 세율인하가 투자 및 저축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고, 김유찬(1995)은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기타 법인세 관련 국내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명훈(1993)은 법인세 전반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었으며, 김종웅(1996)은 법인세의 초과부담에 관하여 다루었고, 이준규(1997)와 이두기·김영락(1998)은 법인세의 형평성과 부담 측정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곽태원(1994)은 우리나라 법인세의 납세비용을 추정하였으며, 최근 박기백·이명현(2000)은 법인세의 세수 추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박정우·이현선(1998)은 이론적·실증적 분석에 의해 법인세 및 각종 세제 감면을 통한 국내투자의 유효세율이 외국인 직접투자에 주는 효과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법인세가 계층별 소득분배와 각 산업에 미치는 생산효과 및 자본 및 노동의 수요 및 균형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한국 응용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법인세 인하와 인상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최초의 시도가 될 것이므로 학구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법인세제 개편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II. 주요국의 법인세 개편 동향과 국제 조세경쟁

### 2.1. 주요국의 감세정책 동향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을 비롯해 미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들은 2000년을 전후로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감세정책의 추진은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로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가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다. 그 밖에도 선진국들은 정보기술의 발달 및 경제의 세계화 등

급격하게 변하는 대외 및 대내적 조세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나아가 조세정책을 수행하는데 따르는 행정비용 및 납세협력비용의 축소와 과세 형평성 등 다양한 조세개혁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세계각국은 투자

유치를 위해 법인세율 및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있는데 최근 주요국의 법인세와 소득세율 경감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1> 선진국들의 감세정책 주요내용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년 5월 '2002년 감세조정안' 하·상원 통과</li> <li>▶ 11년간 1조3천5백억 달러 규모의 세금 감면</li> <li>▶ 소득세 최고세율을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39.6%→33%)하고 소득공제를 확대</li> </ul>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년 1월부터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li> <li>▶ 소득세 최고세율을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51%→42%)</li> <li>▶ 법인세율 인하(40/30%→25%)</li> </ul>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1~2003년까지 1천2억프랑 규모의 세금감면</li> <li>▶ 법인세율을 200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37%→33.3%)</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9년 소득세 및 법인세율 인하</li> <li>▶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50%→37%) 및 기준금액 하향 조정(3000만엔 →1800만엔)</li> <li>▶ 법인세율 인하 (34.5%→30%)</li> </ul>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00~2005년까지 세금감면계획 시행</li> <li>▶ 2005년까지 소득세 규모15%, 금액으로는 580억달러의 세금감면</li> <li>▶ 소득세 과표에 '물가연동제' 도입</li> <li>▶ 법인세율(기술 등의 주요산업)을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 (28% →21%)</li> </ul>

이러한 세계각국의 세율인하경쟁은 OECD 회원국의 법인세율의 추이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법인세율은 1996년 37.7%에서 1997년 36.7%, 1998년 35.5%, 1999년 34.8% 등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최근 독일은 40%인 법인세율을 25%로 경감한 바 있으며 캐나다는 28%의 법인세율을 21%로 경감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벨기에는 현행 39%의 법인세율을 30%로 또는 35%로 낮출 것을 검토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2002회계연도부터 현행 25.5%의 법인세율을 24.5%로 인하하기로 확정하였다. 포르투갈은 현행 32%인 법인세율을 2002년에 30%, 2003년에 28%로 각각 인하하기로 확정하였다. 덴마크는 32%였던 법인세율을 2001년 회계연도부터 30%로 인하하였다. 또한 아일랜드의 경우는 1999년 발효된 재정법(Finance Act 1999)에 따라 사업소득(trading income)에 대한 표준 법인세율을 24%에서 2001년부터는 20%로 인하하였다. 나아가 아일랜드는 2002년에는 동 법인세율을 16%, 2003년부터는 12.5%로 추가 인하할 예정이다. 소득세율도 인하하여 연간 IEP 50,000 (US\$ 60,000)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10%의 경감세율을 적용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동 세율을 12.5%로 인상하는 대신 대상소득을 IEP 200,000 (US\$ 240,000)으로 크게 상향조정하였다.

OECD국가들과 비교할 때 법인세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자본소득세율은 세법상으로 보면 그리 높은 수준은 아니다. 특히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이 OECD국가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며 개인의 배당소득은 비과세의 대상이므로 2001년부터 재설시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감안해도 전반적으로 높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주요국의 세계개편의 방향이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에 대한 조세경쟁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따라서 향후 외국의 세율수준뿐만 아니라 비과세나 감면의 축소 등 과세 저변환경에 대한 변화추이를 감안 대응해야 하는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표 2-2> 주요국의 법인세 과세구간과 세율

	법인세 과세구간	법인세율(%)
한국	1억원 이하	15
	1억원 초과	27
미국	5만달러 미만	15
	5만달러~7만5천달러	25
	7만5천달러~10만달러	34
	10만달러~33만 5천달러	39
	33만5천달러~1천만달러	34
	1천만달러~1500만달러	35
	1500만달러~1822만 3333달러	38
	1822만 3333달러 이상	35
일본	자본금 1억엔 이하, 연간소득 8백만엔 이하	22
	그 외의 법인	30
영국		30
독일	유보소득	40(실효세율 42.2 <sup>1)</sup> )
	배당소득	30(실효세율31.65)
프랑스 <sup>2)</sup>		33.33
대만	5만NT달러 이하	면제
	5만NT달러 초과 10만NT달러 이하	15
	10만NT달러 초과	25

주: 1) 1998년 1월 1일 이전까지는 공동 부가세율이 7.5%였음.

2) 매출액 5천프랑 초과법인은 15% 부가세(surcharge)가 부과됨(1999년까지는 10%).

OECD 주요국가의 법인세가 국가경제에 주는 영향을 나타내는 척도 중 하나로 국민총생산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과 총조세수입 중 법인세수 비중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인세가 법인소득에 비례해 부과되는 만큼 경기변동에 따르는 법인소득의 변화에 따라 법인세수는 변동하게 된다. 따라서 GDP대비 법인세 비중이나 총조세대비 법인세비중을 시계열 상으로 놓고 분석하는데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의 예를 볼 때 일본의 경우는 OECD평균에 비해 법인세수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독일의 경우는 매우 낮다. 전반적으로는 1970년대에 비해 총조세 대비 법인세의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3> OECD 주요국의 법인세 비중

(단위: %)

	총조세대비					GDP대비				
	미국	영국	독일	일본	OECD 평균	미국	영국	독일	일본	OECD 평균
1970	13.2	8.7	5.7	26.3	8.7	3.5	3.2	1.9	5.3	2.4
1975	11.4	6.2	4.4	20.6	7.5	2.9	2.2	1.6	4.4	2.3
1980	10.8	8.4	5.5	21.8	7.7	2.8	3.0	2.1	5.6	2.7
1981	9.1	9.2	5.0	20.3	7.8	2.4	3.4	1.9	5.3	2.7
1982	7.4	9.7	5.1	19.8	7.8	2.0	3.8	1.9	5.2	2.8
1983	5.9	10.7	5.1	19.6	7.4	1.5	4.0	1.9	5.3	2.7
1984	7.6	11.5	5.4	21.1	7.9	1.9	4.3	2.0	5.7	2.8
1985	7.5	12.6	6.1	21.0	8.0	1.9	4.7	2.3	5.8	2.8
1986	7.4	10.6	6.0	20.7	7.8	1.9	4.0	2.3	5.8	2.9
1987	8.6	10.5	5.1	23.0	7.7	2.2	3.9	1.9	6.8	2.9
1988	8.9	10.9	5.3	24.7	7.8	2.3	4.0	2.0	7.4	2.9
1989	9.0	12.6	5.5	24.3	7.8	2.4	4.6	2.1	7.3	2.9
1990	7.7	11.6	4.8	21.6	7.9	2.0	4.2	1.8	6.6	2.8
1991	7.7	9.4	4.3	20.0	7.3	2.0	3.3	1.6	6.0	2.7
1992	7.6	7.7	4.0	17.3	6.8	2.0	2.7	1.5	4.9	2.8
1993	8.3	7.4	3.6	14.9	7.5	2.2	2.5	1.4	4.2	2.6
1994	9.0	8.0	2.9	14.8	7.6	2.4	2.7	1.1	4.0	2.8
1995	9.4	9.4	2.8	15.3	8.0	2.6	3.3	1.1	4.3	2.9
1996	9.6	10.7	3.8	16.4	8.3	2.6	3.7	1.4	4.6	3.0
1997	9.4	12.2	4.1	15.0	8.8	2.6	4.3	1.5	4.2	3.2
1998	9.0	10.9	4.4	13.7	8.9	2.5	4.1	1.6	3.7	3.3
1999	8.3	10.4	4.8	12.9	-	2.4	3.8	1.8	3.4	-
2000	-	9.8	4.8	12.8	-	-	3.7	1.8	3.5	-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1999.

## 2.2. 미국의 조세감면 정책과 법인세 폐지 논의

### 1. 조세감면 정책

미국경제는 1970년 이후 1974년~1975년, 1980년~1982년, 1990년~1991년 등 크게 세 번의 불경기를 경험하였다. 미국정부는 이 때마다 불황을 탈피하기 위해 각기 다른 정책을 사용하였다. 첫번째 경제불황이 시작되었던 1973년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간의 전쟁이 발발하였고 이로 인해 1974년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12%에 달하였으며, 실업률 9%에 달하게 되었다. 당시 포드 대통령은 160억달러에 이르는 감세안을 제안하였으며 미의회는 이보다 많은 210억 달러를 승인하였다. 이러한 감세정책과 일시적인 사회보장

세 감세 등은 개인들의 실질적인 처분소득을 증가시켜 하반기부터 GNP성장률이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두 번째 경제불황은 이란혁명으로 인하여 제2차 석유파동이 일어났던 1979년에 시작되었다. 1980년초 미국의 물가 상승률은 16%로 상승하였으며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한 후 물가상승률은 4%대로 감소하였지만 실업률이 11%대로 증가하는 경제불황을 겪게 되었다. 레이건 정부는 재정정책 보다 총공급을 증가시키는 정책을 선호하였으며 감세정책을 채택하여 개인에게 노동과 저축을 늘리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경기를 부양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기업에게도 감세를 통해 투자를 증가시키도록 유도함으로써 총생산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정책을 폈다. 이로 인해 레이건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은 실효를 거두었지만 본래의 목적인 총공급을 증가시킴으로써 경기가 부양되었다기보다는 감세정책으로 가처분소득이 증가되고 이에 소비증가를 통해 총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경제학자들 사이에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감세정책으로 인해 레이건-부시 시절 재정적자와 연방정부 부채는 눈덩이처럼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세 번째 불황기였던 1990년대 클린턴 정부는 재정적자 악화를 개선 위해 대폭적인 증세정책을 실시하였지만 부분적으로는 노동력과 자본, 기술력의 개발에 비중을 두며 공급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정책을 제시하였다. 1990년대 중반이후 미국경제는 '신경제'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로 사상 유례없는 장기간의 호황을 누렸다. 이로 인해 미국정부의 재정흑자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제4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재정흑자의 사용이 선거의 주요 쟁점사항으로 등장하였다. 제43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조지 W.부시는 선거기간 중 핵심공약으로 전면적인 조세감면 정책(Across-the-Board Tax Cut)을 실시하였다. 부시정부의 조세감면 정책은 미국 공화당의 기본노선인 작은 정부와 시장경제체제에 부합하는 것으로 향후 10년간에 총액 1.6조달러에 달하는 감세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는 2000년 GDP 대비 약 16%에 달하는 규모로 향후 10년간 매년 GDP의 1.4%에 해당하는 재원을 감세정책비용으로 지불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감세 방식으로 소득세의 한계세율을 아래의 <표 2-4>에서와 같이 2006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2~3.6%를 인하한다는 것이다. 또한 소득공제 폭을 <표 2-5>에서와 같이 확대하며 자본이득세율도 인하하는 방식을 논의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감세 방안이 확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활동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정확한 경제적 효과를 논하기 어려우나 부시정부는 감세정책으로 인한 직접적인 세수감소효과와 이로 인한 경제활성화로 세수가 증가하는 간접적 효과를 모두 감안할 때 향후 10년간 총8,000억달러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감세로 인해 개인의 구매력이 증가하여 매년 0.2%의 GDP 성장률이 추가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상·하원의 최종합의 안에서는 최고 상속세율을 2002년에 50%로 낮추며 2007년까지 점진적으로 45%까지 낮추기로 하였으며 2010년에는 상속세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표 2-4> 미국의 개인소득세율 인하계획

	현행28%	현행31%	현행36%	현행39.6%
2001년~2003년	27%	30%	35%	38.6%
2004년~2005년	26%	29%	34%	37.6%
2006년 이후	25%	28%	33%	35%

<표 2-5> 미국의 소득세액 중 자녀세액공제 확대계획

	현행	2001년~2004년	2005년~2008년	2009년	2010년~
자녀세액공제	500	600	700	800	1000

## 2. 법인세 폐지 논의

미국의 법인세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일부 경제학자에 의해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법인세 폐지에 관한 논의이다. 모든 법인세는 이중과세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소득에 두 번 과세를 금지하는 조세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주주의 배당과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를 하면서 그 소득의 원천인 기업 이익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이다. 미국의 오닐(Paul O' Neill) 미국 재무부장은 2001년 5월 20일 파이낸셜 타임지(Financial Time)와의 인터뷰에서 법인소득세를 폐지하여 세제를 단순화하고 경제의 효율성을 높여 성장을 촉진하는 파격적인 세제개편안을 검토할 것이라 언급하였다. 미국 연방정부 수입의 10%를 차지하고 최고 세율이 35%인 법인소득세를 폐지하고 부족한 세수는 개인소득세를 늘림으로써 보충한다는 것으로 매우 획기적인 정책제안으로 주목을 받았다. 법인세 폐지로 연간 2천억 달러의 세금을 기업에 돌려주게 되면 기업실적이 좋아지고 주가 상승으로 이어져 미국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미국의 법인세 폐지논의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며 1960년대 및 1970년대 경제학자들에 의한 활발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1985년에는 미의회 예산처(U.S Congressional Budget Office)가 '법인소득세 개편'(「Revising the Corporate Income Tax」)이란 보고서를 발간하고 1992년에 미국재무부가 '법인소득세와 개인소득세의 통합에 관한 재무성 보고서: 사업소득에 대한 한번의 과세' (「Report of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on Integration of the Individual and Corporate Tax Systems : Taxing Business Income Once」)란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법인세의 통합 또는 폐지가 검토되었다.

미국이 오랫동안 법인세폐지를 검토하였고 레이건 행정부 시절에도 거론되었지만 당시의 만성적인 재정적자상태여서 구체화되지 못했다. 1990년대 중반이후 미국경제는 사상 유례없는 장기간의 호황을 누렸다. 이를 바탕으로 재정흑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막대한 규모의 재정흑자는 감세정책의 바탕이 되었으며 오닐 미재무장관의 발언도 이러한 재정흑자와 무관하지는 않다. 그러나 오닐 장관의 발언이 외국언론에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펴어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저금리를 계속 유지해

야하는 미국으로서는 법인세 폐지가 외국자본의 이탈을 막는 비책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인소득세의 통합을 유보해온 미국에서 법인소득세 폐지론이 나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법인소득세의 폐지와 통합이 동일한 경제원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인소득세의 통합론과 폐지론은 다같이 개인단계와 법인단계에서의 중복과세를 피한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다만 통합론은 기존의 조세체계 틀 속에서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반면 폐지론은 조세체계를 단순화하면서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다를 뿐이다. 만약 미국의 법인소득세를 폐지하면 소득과세는 개인소득세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미국은 자기자본에 대한 중복과세를 폐지에 있어 다른 선진국들을 앞지르게 될 것이다. 1980년대에 미국의 세계개혁이 세계적인 세계개편을 선도하였던 것처럼 한국의 조세정책 담당자들도 자본소득세 정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 부시진영은 소득과세에 기초한 현행 조세제도의 골격을 직접세 형태의 누진적 소비과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오닐 미재무장관의 법인소득세 폐지안은 부시행정부가 조세제도의 기본 축을 소득과세에서 소비과세로 옮기는 야심적이지만 정치적 위험이 큰 정책전환보다는 이중과세 폐지로 자본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획기적이지만 다소 제한적인 목표를 가진 정책을 선택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2.3. 국제조세경쟁

주요국의 최근 세계개편 방향은 생산요소의 세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자본 및 노동의 유치 및 생산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폐쇄경제 또는 자본이동이 제한된 경제환경에서 국내 조세제도의 국제적인 측면은 자국민의 국외소득 및 외국인의 국내수입에 대한 과세로 그 영향력이 국한되며 이에 따라 국내조세가 여타경제에 미칠 수 있는 국제적인 파급효과 또한 제한되어 왔다. 그러나 무역 및 투자의 국제화진전, 다국적기업의 글로벌화, 기술혁신 및 국제금융시장의 발달과 경제의 블럭화 등은 한 국가의 조세정책이 여타 국가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였고 이로 인한 세계변화에 따른 국제적인 투자의 이동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폐쇄경제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직접세에 대한 유효세율부담을 낮추면 그것이 주요 사회간접투자를 감소시키지 않는 한 투자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이 발생하지 않아 투자를 증대시키게 된다. 또한 정부지출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지출비용을 여타 과세원을 통하여 조달할 경우에도 투자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개방경제 하에서는 정부가 자본과세의 수준을 낮추는 대신 소비과세를 확대하는 경우와 같은 국내경제정책 또한 다른 나라의 자본소득과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이는 자본 및 유동적 서비스로부터의 소득에 대한 일국의 과세권 확보를 위한 세율인하정책이 타



국의 자본에 대한 유인효과를 수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국제적 유동자본에 대한 조세경쟁에 가담함에 따라 외국인에게 지불되는 은행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수준이 점차 낮아지는 현상을 유발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궁극적으로 모든 국가로 하여금 세수확보를 위해 요소 및 소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조세구조로의 전환을 유도하게 된다. 다음의 <표 2-6>에서 보듯이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 변화에서 나타난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구유럽국가의 경우 잘 나타나는데 이들 국가는 1985년 51~57%에 달하던 법인세율을 1999년 28%로 낮추었다. 스웨덴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국가들이 법인세율을 1985년 40~50%대에서 1999년 20~30%대로 대폭 낮추었다.

<표 2-6> OECD국가의 법인세율 변화추이

	1985년	1990년	1995년	1999년
벨기엘	45	41	40.2	39
덴마크	50	50	34	32
핀란드	57	42	25	28
프랑스	50	37	33.3	33.3
그리스	49	40	40	40
아이슬랜드	51	48	33	30
아일랜드	50	40	40	28
이탈리아	46	46	52.2	37
네델란드	43	42	33	35
노르웨이	51	51	28	28
포르투갈	50	40	39.6	34
스페인	35	35	35	35
스웨덴	57	30	28	28
영국	45	35	33	31
터키	49	47	42.8	25
독일	56	50	58.9/46.1	40
미국	51	39	40	35
오스트리아	55	30	34	34

자료: OECD, the OECD tax Data Base, 1999

이러한 세계각국의 조세경쟁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나친 조세경쟁이 자본배분에 왜곡 등 부작용을 가져다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OECD는 유해조세관행에 대하여 공동 대응하기로 하였다. 금융, 서비스 등 유동적 활동을 유치하기 위한 각국의 지나친 조세감면정책은 관련국 모두의 재정기반 잠식, 노동, 소비로의 세부담 이전, 자원배분 왜곡 등 부작용을 초래한다. 따라서 OECD는 바람직하지 않은 조세감면제도의 합리적 판정기준과 이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회원국은

물론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적 모니터링체제의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1998년 5월 OECD 각료 이사회에서 서비스, 금융분야의 조세감면제도를 대상으로 작성된 보고서가 승인되었는데 아울러 향후 제조업 등 실물활동에까지 논의를 확대하고 비회원국까지 연계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다만, 절대적 bank secrecy 보호국가인 일부 회원국이 '금융정보의 과세당국간 교환'에 관한 권고를 문제삼아 보고서 채택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당초 기대가 완전한 공동보조 실현에는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경쟁에 대한 OECD 내에서의 논의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OECD에서는 금융, 서비스분야 조세피난처 및 유해감면제도와 관련하여 회원국 유해감면제도의 파악과 일정기한내 폐지 등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였다. 조세피난처와 유해감면제도의 차이는, '해당 국가의 소득(법인)세 세원규모'이다. 즉, 국제적 조세경쟁의 대상이 될 소득세 세원 자체가 거의 없는 국가는 조세피난처에 해당될 수 있는 반면, 상당 규모의 소득세 세원을 보유하고 아울러 이를 통해 상당 규모의 소득세를 징수하고 있는 국가가 운영하고 있는 특정 감면제도는 유해감면제도에 해당된다. OECD는 조세피난처 리스트 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회원국에 대해 금융정보를 포함한 과세당국간 정보교환의 강화 등을 권고하고 있다. OECD는 앞으로도 OECD내 포럼 창설을 통한 가이드라인, 권고 등의 지속적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 III. 우리나라 법인세 현황

#### 3.1. 법인세율

우리나라 법인세법상에서 법인세의 과세대상, 즉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간 동안 얻은 수입에서 사업에 소요된 여러 가지의 비용을 뺀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업의 수입이나 비용이 훨씬 더 종류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무엇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며 어떤 시점에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을 허용하느냐에 따라 과세대상이 달라지게 된다. 법인세의 경우에는 공공법인과 일반법인, 영리단체와 비영리단체 등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법인 중에서도 어떤 업종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 다양한 성격을 갖기 때문에 과세대상을 정의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의 납세 의무자는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내국법인과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물론 적정유보초과소득, 토지 등 양도차익, 청산소득 등에도 법인세를 차별적으로 부과해 오다가 2002년들어 적정유보초과 소득과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특별부가세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가 재발할 경우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할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었다.

<표 3-1> 법인세의 납세의무자 및 과세소득

법인종류별		과세소득별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 등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sup>3)</sup>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내국법인	영리법인	일반	국내외의 모든 소득	×	○	○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법인 등 <sup>1)</sup>	국내외의 모든 소득	○ <sup>2)</sup>	○	○	
	비영리법인	국내외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	○	×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	○	×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	×	○	×		

주: 1) 대규모 기업집단소속 법인 등은 내국법인(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및 비영리법인은 제외)으로서 자기자본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을 말함.

2) 적정유보초과소득과세는 2002 사업연도부터 폐지되었음

3) 특별부가세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여 폐지하기로 하였음

자료: 국세청, 2000.

법인세 세율은 현재 법인의 형태와 관계없이 과세표준 1억원 미만은 15%, 1억원 이상은 27%의 세율을 2002년 1월 1일 이후 적용하고 있다. 농협 등 조합법인에는 12%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며 또한 국세 외에 과세표준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부과하고 있다. 아래의 <표 3-2>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상장여부, 영리·비영리, 공공법인 등에 따라 별도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세율체계가 복잡하였으나 지속적인 단순화 및 세율 인하를 진행시켜왔다. 2001년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적 수단 중 하나로 법인세율 인하가 국회에서 정책적 이슈로 등장함에 따라 2002년 1월 1일부터 법인세율을 1%p 인하하였다.

<표 3-2> 우리나라 법인세율의 변화

1980	5천만원 이하 25% 5천만원 이상 40% 대주주 비중 35% 초과	5천만원 초과 25% 5천만원 초과 33%	5천만원 초과 20% 5천만원 초과 27%
1981	5천만원 이하 22% 5천만원 이상 38% 대주주 비중 35% 초과	5천만원 초과 22% 5천만원 초과 33%	동일 공공법인 5%
	일반법인(비상장대기업)	비영리법인	공공법인
1982	5천만원 이하 20% 5천만원 이상 30(33)%	5천만원 초과 20% 5천만원 초과 27%	5%
1988	8천만원 이하 20% 8천만원 이상 30(33)%	8천만원 초과 20% 8천만원 초과 27%	3억원 이하 10% 3억원 이상 15%
1990	1억원 이하 20%      1억원 이상 34%		3억원 이하 17% 3억원 이상 25%
1993	1억원 이하 18%      1억원 이상 32%		3억원 이하 18% 3억원 이상 25%
1994	1억원 이하 18%      1억원 이상 30%		1억원 이하 18% 1억원 이상 25%
1995	1억원 이하 16%      1억원 이상 28%		1억원 이하 16% 1억원 이상 25%
1997	1억원 이하 16%      1억원 이상 28%		
2002	1억원 이하 15%      1억원 이상 27%		

### 3.2. 법인세수

<표 3-3>에서와 같이 법인세 세수실적은 1997년 9조 4,247억원, 1998년 10조 7,758억원, 1999년 9조 3,654억원, 2000년에는 17조 8,784억원으로 전년대비 90.8%나 증가하였다. 이로써 20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법인세수가 전체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1.8%로 내국세 중에서는 부가가치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3-3> 법인세 징수 실적 추이

(단위: 억원)

구 분	1997		1998		1999		2000	
	실적	증감률	실적	증감률	실적	증감률	실적	증감률
총 국 세	699,277	7.6	677,977	-3.0	756,580	11.59	929,347	22.83
일반회계	609,092	6.74	588,376	-3.4	650,671	10.5	819,846	26.0
○소득세	148,679	0.6	171,940	15.6	158,546	-7.7	175,089	10.4
○법인세	94,246	0.7	107,758	14.3	93,654	-13.0	178,784	90.8
○상속세	6,047	6.8	3,095	-48.8	4,807	55.3	4,487	-6.6
○증여세	5,565	38.8	3,701	-33.4	4,205	13.6	5,402	28.4
○재평가세	1,672	-22.8	4,572	173.4	10,173	122.5	5,372	-47.1
○부가가치세	194,880	16.0	157,068	-19.4	203,690	29.6	232,120	13.9
○특별소비세	30,364	-2.6	22,115	-27.1	27,133	22.6	29,846	10.0
○증권거래세	2,619	-9.5	2,425	-7.4	13,537	583.1	27,359	79.9
○인지세	3,901	9.5	3,035	-22.1	3,709	22.2	3,876	4.5
○과년도수입	7,760	33.0	9,228	18.9	11,771	27.5	14,525	23.3
○교통세	55,471	14.9	65,040	17.2	72,557	11.5	84,036	15.8
○관 세	57,976	9.1	38,360	-33.8	46,873	22.1	57,997	23.7
특별회계	90,186	14.1	89,601	-0.6	105,909	18.2	109,501	3.3
○주 세	17,898	7.3	18,145	1.3	20,780	14.5	18,644	-10.1
○전화세	7,886	19.3	9,219	16.9	11,914	29.2	14,574	22.3
○교통세	-		-		-		-	
○교육세	53,985	30.8	52,031	-3.6	52,969	1.8	57,983	9.4
○농특세	10,398	-30.0	10,154	-2.3	20,234	99.2	18,299	-9.5

자료: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표 3-4>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60년 이후 우리나라 경제에서 법인세의 비중은 GDP 규모 혹은 총조세 규모, 법인소득 등과 대비해 볼 때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1960년대에는 1%에도 미치지 못하던 법인세의 GDP 대비 비중이 이후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대에는 2%를 상회하였다. 특히 2000년에는 외환위기 극복이후 1999년의 경기 호황을 바탕으로 세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GDP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에는 약 3.5% 수준까지 증가하였다. 박기백(2001)은 지방세인 주민세를 포함할 경우 법인 과세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8% 수준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sup>18)</sup> <표 3-4>에 나타난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최근들어 국세대비, 총조세대비 그리고 법인소득 대비 법인세 비중이 높아지는 등 경제전반에 걸친 법인세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18) 박기백, “최근 법인세 추이와 시사점,” 재정포럼, 조세연구원, 2001년 9월호

<표 3-4> 주요관련지표 대비 법인세 징수실적

(단위: 백만원, %)

	법인세	국세대비	총조세대비	법인소득대비	GDP대비
1961	1,707	6.6	6.0	-	0.6
1965	5,695	9.8	8.2	-	0.7
1970	42,351	11.6	10.6	-	1.6
1975	130,480	9.4	8.4	43.9	1.3
1980	485,206	8.4	7.4	20.2	1.3
1981	594,062	8.2	7.3	32.8	1.3
1982	781,303	9.3	8.2	32.1	1.4
1983	863,691	8.6	7.5	24.7	1.4
1984	923,535	8.5	7.4	19.7	1.3
1985	1,126,731	9.5	8.3	20.8	1.4
1986	1,191,401	8.8	7.7	20.2	1.3
1987	1,682,444	10.3	9.1	20.8	1.5
1988	2,247,429	11.5	10.0	22.5	1.7
1989	3,107,894	14.6	11.9	23.2	2.1
1990	3,226,128	12.0	9.7	21.5	1.8
1991	4,585,547	15.1	12.0	26.6	2.1
1992	5,941,051	16.9	13.3	29.7	2.4
1993	5,862,329	14.9	11.7	27.8	2.1
1994	7,387,568	15.6	12.2	29.6	2.3
1995	8,662,631	15.3	12.0	27.6	2.3
1996	9,356,104	14.4	11.4	28.3	2.2
1997	9,424,669	13.5	10.7	28.3	2.1
1998	10,775,797	15.9	12.7	32.7	2.4
1999	9,365,392	12.4	9.9	24.2	1.9
2000	17,878,400	22.4	18.2	20.8	3.5

자료: 통계청 kosis.nso.go.kr 및 국세통계연보 각년도.

<표 3-5>에서와 같이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1998년 기준 2.6%로 일본 3.8%, 독일 1.6% 등 OECD평균인 3.3%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00년 동 비중이 3.8%까지 올라갔음을 감안할 때 외국보다 현재 낮은 수준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2000년 들어 법인세수가 급증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의 기업구조조정의 결과 재무구조 개선의 결과 나타난 구조적 변화요인일 수도 있고 경기호황에 기인한 일시적 요인일 수도 있다.

<표 3-5> GDP 및 총세입 대비 법인세수 국제비교(1998년 기준)

(단위: %)

	우리나라	미국	일본	독일	영국	스웨덴
GDP대비 법인세수	2.6	2.6	3.8	1.6	4.1	2.9
총세입대비 법인세수	12.2	9.0	13.3	4.4	11.0	5.7

자료: OECD, 2000.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경제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경쟁력과 재무적 안정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기업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제조업 전체로 보아도 부채비율은 외환위기 이전인 1997년 396.3%에서 2001년 상반기 198.3%까지 하락하였다. 미국(27.7%)과 일본(33.1%)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차입금의존도도 위기 이전 평균 45.7%에서 2001년 상반기 42.1%로 하락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회계기준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하락하게 된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금융비용 및 인건비 부담 축소에 따른 수익성 개선효과에 비하면 영업수익성은 위기 이전 수준에서 크게 개선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1990~1996년 상반기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7.6%를 기록하였으며 최근 3년간 1999년 7.8%, 2000년 8.9%, 2001년 5.5%로 2001년에는 영업이 크게 악화되었다. 그러나 1999년~2000년 3년간 평균 영업이익률이 7.1%로 다소 악화되었다고 보여진다.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고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어느 정도 높아짐에 따라 매출액대비 인건비부담률은 1997년 13.2%에서 2001년 10.0%로 하락하였다. 또한 기업들의 금융비용부담률도 1990~1996년 상반기에는 평균 5.7%에 달하였지만 2001년에는 동비율이 4.2%까지 하락하였다. 이러한 인건비 부담 감소나 금융비용 축소가 영업수익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환위기 이후 근본적인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위기 이후 2000년 들어 법인세수익이 급증한 것은 기업의 전반적 경영투명성이 확보되어 세수기반이 늘어났을 수도 있다는 조심스러운 해석도 가능하다.

<표 3-6> 기업의 주요 경영지표 추이

	1990년~96년 <sup>1)</sup>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미국 <sup>2)</sup>	일본 <sup>3)</sup>
재무구조 관련지표								
부채비율	301.7	396.3	303.0	214.7	210.6	182.2	159.4	159.7
차입금의존도	45.7	54.2	50.8	42.8	41.2	39.8	27.4	29.7
유동비율	94.8	91.8	89.8	92.0	83.2	97.9	122.1	132.3
수익성 관련지표								
매출액영업이익률	7.6	8.3	6.1	6.6	7.4	5.5	5.4*	2.9**
매출액경상이익률	2.6	-0.3	-1.8	1.7	1.3	0.4	2.8*	2.9**
금융비용부담률	5.8	6.4	9.0	6.9	4.7	4.2	2.4*	0.8**
인건비부담률	13.2	11.4	9.8	9.8	9.7	10.0	-	-
이자보상비율	-	129.1	68.3	96.1	157.2	132.6	224.9*	551.0

주: 1) 매출액영업이익률, 매출액경상이익률 및 금융비용부담률은 1990년 상반기~1996년 상반기 평균이며 투하자본수익률 및 가중 평균자본비용과 인건비부담률은 1992년 상반기~1996년 상반기 평균임.

2) 2001년 기준임. (\*는 2001년 상반기 기준)

3) 2000년 기준임. (\*\*는 1999년 기준)

자료: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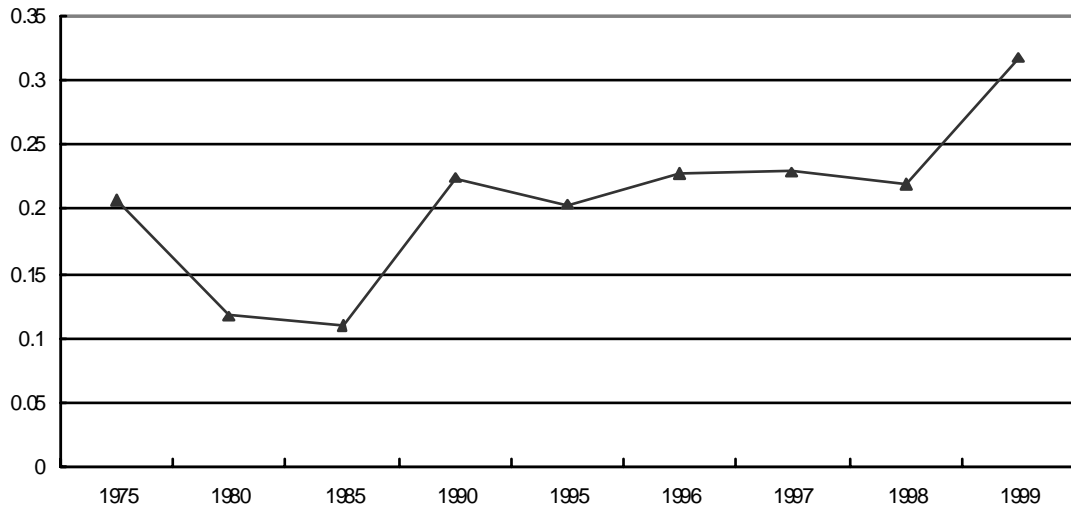
### 3.3. 유효세율기준의 법인세 부담

지난해 법인세 개편에 대한 논의는 주로 법정세율의 인하에 초점을 맞추어져 논의되어 왔으나 사실은 법정세율보다 법인세의 경제적 효과를 더 잘 설명해 주는 것은 실효세율(effective tax rate)이다. 법인세에 주어지는 각종 감면과 공제와 특별부가세를 감안하여 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세부담을 나타내주는 지표이다. 박기백(2001)이 추정한 바에 의하면 법인의 영업잉여(profit)와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한 실효세율(법인세/법인영업잉여)은 외환위기 이후 상당폭 상승하였다.<sup>19)</sup> 1980년 전후에는 실효세율이 10%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이후 그 비율이 증가하여 외환위기 이전까지는 22~23%로 높아졌고, 1999년에는 30%를 상회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경영통계를 이용하여 법인의 법인세부담을 계산 이를 실효세율로 정의해 사용하는 데의 문제점은 영업잉여가 이익과 결손을 합한 것이므로 결손이 많을 경우 영업잉여가 낮아져 실효법인세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1999년 법인실효세율이 증가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

19) 박기백, “최근 법인세 추이와 시사점,” 재정포럼, 조세연구원, 2001년 9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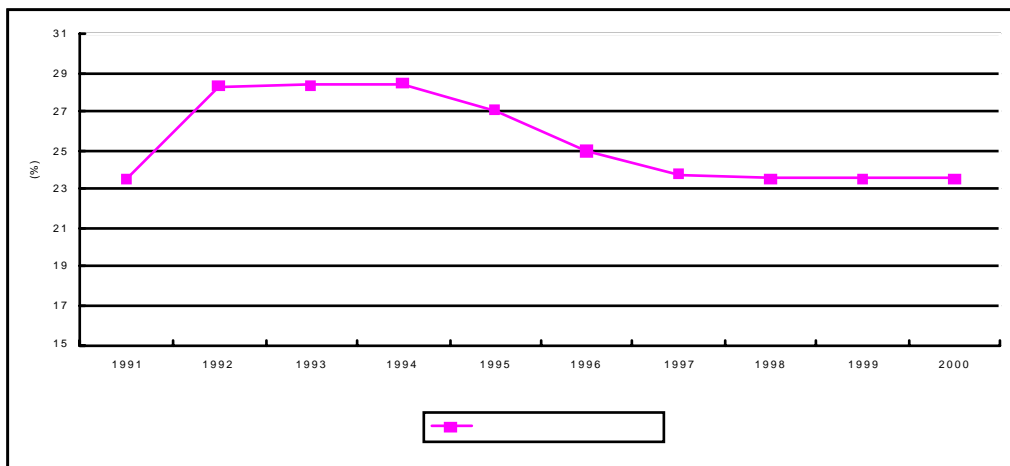


<그림 3-1> 실효세율(영업잉여 기준) 추이



따라서 국세통계연보의 법인세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소득 또는 과세표준 대비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한 실효세율을 산정해 보면 은 1994년 25.5% 이후 점차 낮아져 2000년도에 16.9%로 저하하였다.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평균유효세율을 계산하여 보면 1994년 28.5%를 정점으로 하여 외환위기 이후에는 23.6%의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3-2> 결정세액기준 유효세율추이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법인세표

미래의 투자에 대한 기업의 세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유효한계세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동 세율이 낮은 편이며 외환위기 이전에는 마이너스였으며 외환위기 이후에는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sup>20)</sup>

### 3.4. 한국의 법인세제도의 문제점

Dalgaard(2000)의 OECD 보고서<sup>21)</sup>는 우리나라의 경우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으로 중화학공업과 같은 특정 산업에 대해서 자본이 과잉 투자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조세지원은 주로 기술개발, 중소기업 등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조세지원으로 인해 투자에 대한 한계 유효세율이 외환위기 이전에는 음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사실상 조세 제도 자체가 투자에 대해 보조금을 주고 있다고 동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표 3-7>에서와 같이 기업 형태, 투자 및 자금조달의 유형에 따라 조세 유인이 다르게 제공되고 있어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법인세 세율 수준과 더불어 법인세제 개편 상 지적되어야 할 중요한 점은 기업 형태별, 자금조달별, 자금조달형태별로 세금부담이 다르다는 소위 조세차별에 의한 비효율성의 문제이다. 실질적으로 기업규모별 즉 중소기업인가 대기업인가에 따라 차별해 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유효세율도 다르다. 또한 투자재원에 있어서도 차입에 의한 자금조달은 우대되고 있는 반면 유상증자나 사내유보에 의한 투자는 세부담을 많이 받고 있다. 또한 투자자산 즉 자본재에 대한 세율도 자산의 종류에 따라 차별대우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대한 세금부담이 기계에 대한 세금부담보다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 3-7> 한계 유효세율의 가중평균

(단위: %)

	기업규모		자본재			투자재원		
	대기업	중소기업	건축물	기계	비상각자본	대출	유상증자	사내유보
1982	-24.44	-14.47	-14.16	-31.02	-16.08	-51.55	41.56	44.86
1987	-21.80	-19.82	-10.09	-32.76	-9.41	-32.76	27.66	30.17
1992	-25.21	-30.31	-8.47	-43.39	-7.55	-46.46	18.51	22.18
1997	-15.78	-16.56	-2.31	-28.59	-6.04	-32.96	21.75	24.26

자료 : Dalgaard, 2000.

1970년대말 이후 조세 유인의 축소, 법인세율의 인하 및 조정, 그리고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유효세율의 변화는 다소 줄어들고 있다. 따라서 조세로 인한 배분상의 왜곡이 OECD의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더 이상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지만 투자

20) 현진권, '한계유효세율을 통해 본 우리나라 세부담 추이',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2001년 5월호

21) Dalgaard, Thomas, "The Tax System in Korea; More Fairness and less Complexity Required," Economic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271, OECD 2000.

및 자금조달에 대한 한계 유효세율은 OECD 국가보다 낮은 편이다. 자금조달의 유형에 따른 세율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기업의 자금조달에 미치는 조세 왜곡이 국제기준에서 본다면 아직까지 상존하고 있다. 결국 우리나라의 기업과세가 투자에 주는 왜곡은 줄었지만 조세유인이 아직 크다고 할 수 있다.

<표 3-8> 제조업에 대한 한계 유효세율

(단위: %)

	자금조달 <sup>1)</sup>			유형자본 <sup>2)</sup>			가중 평균	표준 편차
	사내유보	유상증자	부채	기계	건축물	재고		
미국	1.67	4.90	1.43	1.51	2.54	2.02	1.91	1.20
일본	2.66	3.88	0.36	0.97	3.14	2.79	1.98	1.23
독일	1.06	2.21	1.21	0.85	1.40	1.91	1.24	0.48
영국	2.74	2.24	1.46	1.88	2.21	3.09	2.24	0.53
한국(2000)	0.89	2.22	0.46	0.44	1.33	1.26	0.87	0.61
한국(2001) <sup>3)</sup>	0.61	1.41	1.41	0.64	1.34	1.26	0.97	0.35
멕시코	0.77	1.04	1.04	0.73	0.75	1.43	0.89	0.25
스웨덴	1.73	2.17	0.68	1.14	1.43	1.99	1.41	0.51
OECD 평균	1.72	2.59	0.99	1.17	1.71	2.25	1.55	0.56

주: 1) 기계장치 50, 건축물 28, 재고 22의 가중치로 계산함.

2) 사내유보 55, 유상증자 10, 부채 35의 가중치로 계산함.

3) 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시행을 반영함.

자료: Dalsgaard, 2000.

법인세와 관련 앞서 지적되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자본소득세율은 세법상으로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자본소득에 대한 표준 법정 세율이 유사한 수준이다.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개인의 경우 배당소득이 비과세 대상이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2001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한계 세율이 높아지는 하나 배당소득의 경우 종합과세대상이 된다고 해도 부분귀속(partial imputation)제도에 의해 이중과세를 부분적으로 조정 받으며, 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도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자본소득에 따라 다른 세율체계를 가지고 있어 자본소득세율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것이 문제이다.

<표 3-9> 자본이득세율의 국제비교

(단위: %)

	이자소득에 대한 최고 세율	총법인세율	한계 배당세율	금융 자본이득
미국	47	40	68	0~20
일본	20	41	71	26
독일	56	58	50	0
영국	40	31	48	0~40
한국 <sup>1)</sup>	24(45)	31	46(45)	0~22
멕시코	40	32	40	0
스웨덴	30	28	50	30

주: 1) 한국의 경우 ( )안에서와 같이 2001년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재실시됨에 따라 이자 및 배당소득의 최고 한계세율이 44.5% 증가함.

자료: Dalsgaard, 2000.

Dalsgaard(2000)의 OECD 보고서가 지적하였듯이 우리나라는 세수기반을 확대하고 형평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며 조세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세제개혁이 필요하다. 법인세 폐지의사를 피력한 미국 재무장관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법인세 개편은 심층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sup>22)</sup> 현재 법인세의 개편방향 논의는 주로 법정세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법정세율이 법인의 세부담을 정확히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는 없고, 각종 감면과 공제, 특별부가세를 감안한 실효세율이 더 적합한 세부담 지표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따라서 법인세의 개편방향 논의에 앞서 법인의 세부담 구조와 추이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22) 국회에서 법인세 인하가 중요한 정치적 과제 중 하나로 부상하였으며 작년 11월 조선일보와 미래경영연구원과의 공동 프로젝트로 법인세폐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하였음. 금년들어 상공회의소는 '경기회복을 위한 조세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을 경쟁국인 대만 수준(25%)으로 인하하고, 2005년까지 23%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하였음.

<표 3-10> 자본소득과세 과세방법의 국제비교

	과세방법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분손익이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어 법인세로 과세</li> <li>▶ 특별부가세 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토지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대권) 주식 등(과점주주주식, 부동산과대보유법인의 주식, 특정시설물 이용권이 부여된 주식)</li> <li>- 기준시가 방법: 토지 또는 건물, 기준시가가 고시된 특정시설물의 이용권</li> <li>- 실지거래가액 방법:비상장법인의 주식, 부동산 과다법인의 과점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의 기타 자산</li> </ul> </li> </ul>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처분익: 전액이 당기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됨</li> <li>▶ 처분손: 3천달러 한도로 당기의 다른 소득과 상쇄가능</li> <li>▶ 개인, 신탁, 유산재단의 순자본소득: 최고세율 20%로 과세</li> <li>▶ 법인자본소득: 일반세율로 과세</li> </ul>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자산:50만엔 기초공제후 과세양도익을 타원전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li> <li>▶ 부동산양도익: 분리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기보유부동산:20%(주민세6%)</li> <li>- 단기보유부동산: 40%(주민세 12%)혹은 종합합산세액 증가분의 100%</li> <li>- 초단기보유부동산: 50%(주민세15%)혹은 종합합산세액 증가분의 120%</li> </ul> </li> </ul>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세율이 적용됨</li> <li>▶ 과세대상이 되는 자본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취득원가를 차감하여 계산</li> <li>▶ 세액공제를 받는 자본소득은 취득원가를 낮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 건물, 공장, 기계설비</li> <li>- 선박, 항공기</li> <li>- 영업권</li> </ul> </li> </ul>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본소득은 과세소득에 포함됨</li> <li>▶ 고정자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정자산의 매각으로 발생한 자본소득의 50%를 당해연도와 전년도에 동종 신규자산의 취득원가에서 경감</li> <li>- 실현된 자본소득이 대체 자산의 취득에 즉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투 자보조금 설정 가능</li> </ul> </li> <li>▶ 유가증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가증권 매매에 의해 실현된 자본소득은 이연공제할 수 없음</li> </ul> </li> </ul>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7년 이후 일반소득과 같이 부가세를 포함한 표준 법인세율을 적용</li> <li>▶ 경감세율 적용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인참여지분</li> <li>- 경영권 인수로 취득한 주식</li> <li>- 5년 이상 보유한 벤처캐피탈투자자금</li> </ul> </li> </ul>
대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중치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토지 이전 및 저당권 설정시 가치증가분</li> <li>- 세율:토지가치증가분100%까지 40%, 100%~200%는 50%, 200%초과분 60%</li> </ul> </li> </ul>

모든 세부담은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하나, 법인세가 폐지된 국가는 아직까지는 없다. 그러나 최근 법인세를 폐지하여 세부담을 피하고자 하는 해외투자법인들을 유치하고 있는 조세피난처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법인소득세가 존재함으로써 법인소득에 대한 세후 수익률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법인기업의 투자·재무·배당결정에도 많은 왜곡이 일어나고 있으며, 법인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된 후에 주주에게 배당된 소득에 대해서도 개인소득세가 또다시 과세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법인세로 인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여 법인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에 '1/3합산(gross-up)방식'에서 '저세율 합산방식'으로 배당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여왔다. 1999년에는 '법인세부담율 합산방식'에 의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을 시도하였다. 이로써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으나, 2002년 들어서는 오히려 '16%합산방식'으로 배당세액공제가 축소되어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후퇴하게 되었다.

<표 3-11> 이중과세제도의 국제비교

	법인단계		개인단계	조정방식
	적용세율	과세소득에 대한 공제제도		
한국	27% /15%	과세소득에 포함 (공제제도 없음)	gross up비율을 19% 또는 실제 법인세부담률에 의한 비율(법인세부담률 <sup>2)</sup> /(1-법인세부담률) 중 선택 - 공제율 한도: 38%	임퓌테이션방식
미국	35% (기본세율)	80% 이상 지분소유: 100% 공제 20% 이상 지분소유: 80% 공제 20% 미만 지분소유: 70% 공제	종합과세 (조정제도 없음 <sup>1)</sup> )	조정없음
일본	30%	25% 이상 지분소유 : 100% 공제	과세소득 1천만엔 이하: 배당소득의 10% 세액공제 과세소득 1천만엔 초과: 배당소득의 5% 세액공제	개산배당세액공제방식
영국	30%	전액공제	수취배당액의 1/9를 과세소득에 산입하고 산출세액에서 다시 세액공제	임퓌테이션방식
독일	30%	개인주주와 동일	수취배당액이 100/70을 과세소득에 가산하고 산출세액에서 다시 세액공제	임퓌테이션방식
프랑스	33.33%	개인주주와 동일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은 소득에서 공제)	수취배당액의 50%를 과세소득에 산입하고 산출세액에서 다시 세액공제	임퓌테이션방식
대만	15%/25%	배당소득의 80% 공제	33.33~48.15%의 값을 갖는 세액공제가능비율을 실제배당수령액에 곱한 금액	임퓌테이션방식

## IV. KOCGE 모형

### 4.1 KOCGE 모형: 개요

본 연구에서 법인세 개편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에 사용된 KOCGE모형(Korean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한국 계산가능일반균형모형)은 일반적으로 CGE모형(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 혹은 AGE모형(Applied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Model)으로 알려진 모형의 한 계열이다. CGE모형은 크게 Scarf의 맥을 잇는 Harberger- Scarf- Shoven- Whalley(HSSW)모형 계보와 ORANI모형계보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응용일반균형모형은 Scarf의 맥을 잇는 HSSW 계통인<sup>23)</sup> Ballard- Fullerton- Shoven- Whalley(1985)모형을 기초로 국내 경제에 맞도록 변형한 것이다. 본 모형의 장점은 각종 조세 체계와 세율의 구조의 변화가 개별 경제주체의 경제적 의사 결정-노동의 공급, 저축 행태, 투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계층별 소득분배와 생산요소 소유별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과 경제전체의 후생변화에 미치는 효과 등 각종 조세제도의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KOCGE 모형을 이용한 모의실험을 통하여 현재 제시되고 있는 법인세제도의 여러 가지 개편방안에 대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특히 법인세제도 개편이 경제의 후생, 소득분배, 노동공급, 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정성적 분석은 물론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 4.2 사용 모형<sup>24)</sup>

일반균형모형의 4가지 중요 요소는 소비자의 자원부존량 및 수요함수, 생산기술 그리고 균형조건이다. 본 모형에서 경제는 소비부문, 생산부문, 정부부문의 세 부문으로 구성된다. 가계부문은 10개 소득계층으로 나뉘며 각 계층은 주어진 예산조건 하에서 고유의 순차적 효용함수를 극대화시키며 생산부문에서는 자본과 노동을 이용하여 CES생산함수에 의해 26개의 생산재와 10개의 소비재를 생산한다. 정부부문은 개인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법인세를 징수하여 조세수입을 충당하며 주어진 세입 내에서 지출하는 균형예산을 집행한다.

KOCGE 모형의 구성 및 균형, 기준균형 측정 및 자료와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

23) Shoven과 Whalley(1972), Fullerton- Shoven -Whalley(1983), Ballard- Fullerton- Shoven- Whalley(1985) 등이 이 계보를 대표한다.

24) 본절의 내용은 이미 김성태 외(1999a, b)에서 소개되었으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재정리하였다.

김성태 외(1999a, b)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기존의 모형과 본 연구에서 이용한 모형의 차이점에 대해서만 설명기로 한다.

본 논문의 모형이 기존의 모형(김성태 외(1999a, b))과 다른 점은 기존의 모형은 산업자본에 대한 과세로서 세율  $\tau_{Ki}$ 가 부과된 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에 초점을 맞추려고 법인 과세소득에 대해서 세율  $\tau_{Ci}$ 로 과세된다는 점이다.

본 모형에서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투입되는 본원적 생산요소는 자본과 노동 두 가지로 가정한다. 자본과 노동은 모두 동질적이며 산업부문간 이동이 자유롭다고 가정한다. 자본( $K$ )은 10개 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계부문에 의해 소유되고 있으며  $j$ 가계에 의해 소유되는 자본은  $K_j$ 로 표기된다 ( $j=1, \dots, 10$ ). 자본은 26개 생산부문에서 생산요소로 투입되며 산업  $i$ 에 투입되는 자본은  $K_i$ 로 표기된다 ( $i=1, \dots, 26$ ). 가계부문은 부존자원으로써 노동을  $E_j$  만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중  $l_j$  ( $j = 1, \dots, 10$ )는 여가로 사용하고 남은  $L_j$ ( $j=1, \dots, 10$ )를 노동으로 공급하여 노동소득을 갖게 된다. 한편 노동은 26개 산업부문에서 생산요소  $L_i$  ( $i=1, \dots, 26$ )로 사용되어 재화를 생산하게 된다. 따라서  $E_j=L_j+l_j$  이며 경제 전체로는 다음 식을 만족한다.

$$E = \sum_{j=1}^{10} E_j = \sum_{j=1}^{10} L_j + \sum_{j=1}^{10} l_j = L + l = \sum_{i=1}^{26} L_i + \sum_{j=1}^{10} l_j$$

기업은 생산요소  $L$ 과  $K$ 를 구입할 때 한 단위 당  $P_L, P_K$ 의 가격을 지불하여야 한다.  $i$  산업 생산자는 세전가격에 노동소득세<sup>25)</sup>와 법인세인  $\tau_{Li}, \tau_{Ci}$ 를 지불하게 되며 이 세율은 산업별로 다르다. 따라서 생산자가 실제로 노동생산요소를 구입시 지불하게 되는 세후가격은 다음과 같다.

$$P_{L_i}^* = P_L(1 + \tau_{L_i})$$

자본에 대해 지불하는 세후가격은 다음과 같다.<sup>26)</sup>

$$(1) \quad P_{K_i}^* = P_K \left( 1 + \frac{\tau_{Ci}}{1 - \tau_{Ci}} \times KENC_i \times (1 - re_i) \right)$$

단 여기서 법인세 세율  $\tau_{Ci} = \frac{CIT_i}{TCCAP_i}$ ,  $CIT_i$ =산업  $i$ 의 법인세 납부액,  $TCCAP_i$ =과세 대상 법인소득,  $KENC_i$ = $i$  산업 법인부문의 자본 비중= $i$ 산업 법인부문 자본소득/전체 자본소득,  $re_i = \frac{RE_i}{CCAP_i}$  =법인부문 자본소득( $CCAP_i$ ) 중에서 사내유보( $RE_i$ )가 차지하는 비중을 각각 나타낸다.<sup>27)</sup>

25) 노동소득세는 기업이 노동 1단위를 고용하는 데 지불하는 조세로써, 연금 각출금 중 고용자 부담분으로 정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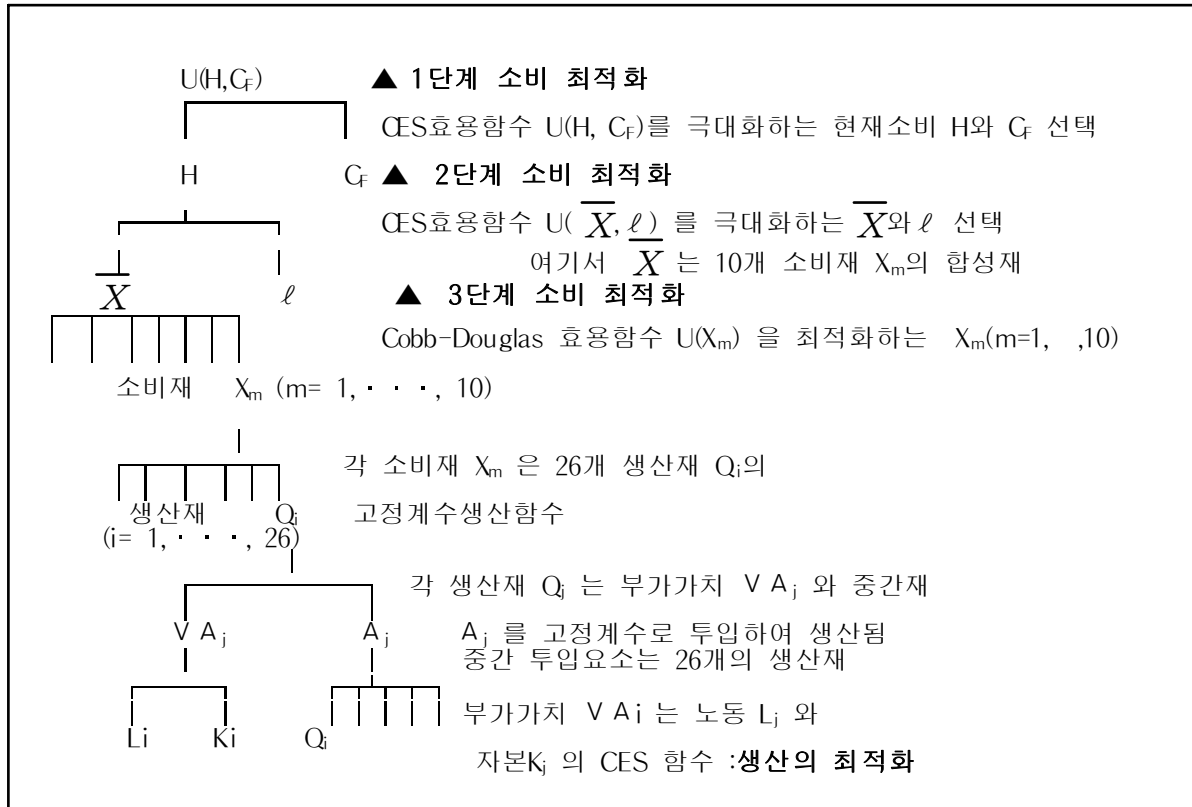
26) 자세한 도출과정은 지면관계상 생략하였음.



정부의 균형예산식도 부록의 (A565)와 같이 바뀌어야 될 것이다.

KOCGE 모형 565개의 방정식 체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록A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다. 모형의 소비 및 생산구조를 그림으로 예시하면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모형의 소비 및 생산구조



## V. 법인세 개편방안 모의실험

### 5.1 법인세 개편에 관한 5가지 모의실험(안)

#### 1.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완전통합: 방안 A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완전히 통합하는 방안은 법인세를 폐지하고 감소된 세수를 개인소득세의 세율 인상을 통하여 흡수하는 방안이다.

27) 원래 김성태 외(1999a, b)방정식 체계에서 자본의 세후 가격은 다음과 같았다.

$$P_{Ki}^* = P_K (1 + \tau_{Ki})$$

## 2. 법인세 세율 인하와 기타 조세의 세율 인상

법인세 개편을 고려할 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현재의 세수를 그대로 유지한 채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 경우 법인세 세율 인하는 곧 기타 조세의 세율인상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법인세 세율 인하와 개인소득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B와 법인세 세율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C에 대하여 모의실험을 통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방안 B와 C 역시 실질세수 동일조건을 만족시켜야 될 것이다.

### (1) 법인세 세율 인하와 개인소득세 세율 인상: 방안 B

방안 B는 실질 동일세수 조건하에서 법인세 세율( $\tau_{ci}$ )의 인하와 개인소득세 세율( $\tau_i$ )을 인상시키는 세제개편 방안이다. 방안 B는 현실적으로 법인세 개편이 세율인하로 방향이 잡히는 경우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의 하나로써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법인세율 인하 폭은 10%, 20%, 30%, 40%, 50%를 고려하게 될 것이다.

### (2) 법인세 세율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율 인상: 방안 C

방안 C는 동일세수 조건하에서 법인세 세율( $\tau_{ci}$ ) 인하와 부가가치세 세율( $\tau_{vt}$ )을 인상하는 것이다. 법인세의 세율을 일정 비율(10%, 20%, 30%, 40%, 50%) 인하시키는 대신 부가가치세 세율이 동일세수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인상될 것이다.

## 3. 법인세 세율 인하와 정부지출 감소

보통 법인세 세율을 인하하는데 따른 세수의 감소를 기타 조세의 세율을 인상시키는 방안은 해당 조세의 인상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경제계층으로부터 심한 조세저항을 받게되므로 현실적으로 채택하기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보다 현실적인 법인세 인하 방안은 세율 인하에 따라 정부수입이 감소하는 만큼 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것이 될 것이다. 정부지출은 일반적인 정부의 소비지출을 줄이는 방안 D와 정부가 가계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감소시키는 방안 E가 있다.

법인세를 여타 조세로 대체하는 방안 B와 C는 동일 세수조건 하에서 추진되는 반면, 법인세 인하와 정부지출을 감소시키는 D와 E는 균형예산조건 하에서 추진되는 개편방안이 된다.

### (1) 법인세 세율 인하와 정부소비지출 감소: 방안 D

방안 D는 법인세 세율을 인하하고 그에 따른 세수의 감소분만큼 정부지출( $G$ )을 감소하는 방안이다. 균형예산조건 하에서의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모의실험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

여기서  $R$ 은 새로운 균형의 조세수입으로 내생변수이며,  $G$ 는 새로운 균형의 정부지출인데 이제는 조세수입에 따라 변하므로 내생변수가 될 것이다. 법인세 세율의 인하는 앞서와 같이 (10%, 20%, 30%, 40%, 50%)가 될 것이며 각 인하 폭에 대해 모의실험을 하게 될 것이다.

## (2) 법인세 세율 인하와 이전지출 감소: 방안 E

방안 E는 법인세율 인하와 그에 따른 정부수입의 감소분만큼 가계를 위한 이전지출을 감소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법인세 세율을 단순히 인하하는 것과 동일한 방안이 된다. 왜냐하면 법인세가 인하되면 세수( $R$ )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  $(R-G)$ 가 감소하므로 가계  $j$ 에 대한 이전지출  $(R-G) d_j$ 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도 역시 법인세 인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법인세 세율을 일정 비율(10%, 20%, 30%, 40%, 50%) 인하시키는 방안들에 대해 각각 분석한다.

## 5.2 개별 개편방안에 대한 평가 기준

### 1. 법인세 개편에 의한 후생변화 측정

특정 조세개혁이 경제의 효율성에 미치는 분석은 기본적으로 후생의 동등변화(Equivalence Variation; EV)와 보상변화(Compensating Variation; CV)를 추정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Hicks의 보상변화 추정을 택하였으며 보상변화는 다음과 같이 측정된다.

$$(5) \quad CV = E(U^N, P^N) - E(U^0, P^0)$$

여기서 함수  $E(\cdot)$ 는 지출함수(expenditure function)를 의미하며,  $U^0, P^0$ 는 각 최초 조세체계 하에서의 균형인 기준균형에서의 효용수준과 가격벡터를 나타내며  $U^N, P^N$ 은 각각 조세제도나 조세행정의 변화에 의한 새로운 조세체계 하에서의 균형인 비교균형의 효용수준과 가격벡터를 나타낸다.  $E(U^N, P^N)$ 은 새로운 가격벡터  $P^N$ 하에서 효용수준  $U^N$ 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지출을 나타낸다. 따라서 보상변화는 가격벡터 변화시 소비자가 최초의 효용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소득의 보상분을 나타낸다. 소비자선호가 同調的(homothetic)인 경우 보상변화 CV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 \quad CV = \frac{u^N - u^0}{u^N} \cdot I^N$$

여기서  $I^N$ 은 비교균형의 소득수준을 나타낸다. 다수의 소득계층으로 구성된 경제의 총후생보상변화(CV)는 소득계층별 보상변화의 합이다. 즉

$$CV = \sum_{j=1}^H CV_j$$

여기서  $CV_j$ 는 소득계층  $j$ 의 보상변화를 나타내며  $H$ 는 총 계층의 수로 본 분석의 경우  $H=10$  이다.

## 2. 법인세 개편에 의한 소득분배효과의 측정

법인세개편이 경제의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은 소득의 10분위 배분율과 Gini계수로서 추정하였다. 10분위 배분율은 상위 20% 소득계층의 소득총계에 대한 하위 40% 소득계층의 소득총계의 비율로 측정되며, 10분위 배분율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공평한 것을 나타내며 Gini계수는 작을수록 소득분배가 공평한 것을 나타낸다.

## 3. 법인세 개편이 노동의 공급과 저축에 미치는 효과

법인세 개편이 소득계층별 노동 및 경제 전체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법인세 인하가 가계의 노동의욕을 감퇴시키는가 아니면 고취시키는가에 따라서 경제활동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의실험에서는 법인세 개편에 따른 가계별 노동공급( $L_j$ ,  $j=1, \dots, 10$ )과 경제전체의 노동공급( $L = \sum_{j=1}^{10} L_j$ )의 변화를 추적하게 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법인세 개편이 소득계층별 저축 및 경제 전체 저축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법인세 인하가 가계의 저축의욕을 감퇴시키는가 아니면 고취시키는가에 따라서 경제활동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의실험에서는 법인세 개편에 따른 가계별 저축( $S_j$ ,  $j=1, \dots, 10$ )과 경제전체의 저축( $S = \sum_{j=1}^{10} S_j$ )의 변화를 추적하게 될 것이다.

## 4. 법인세 개편이 산업별 생산과 요소소득에 미치는 효과

법인세 개편이 산업별 생산( $Q_i$ ,  $i=1, \dots, 26$ )과 생산요소별 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법인세의 부담이 자본과 노동 중 어느 생산요소에 더 지워지게 되는지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최초 생산요소가격( $P_L(0)$ ,  $P_K(0)$ )과 개편 후 생산요소가격( $P_L(1)$ ,  $P_K(1)$ )을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도 법인세 개편이 세수에 미치는 효과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 5.3 법인세 개편 모의실험 결과

한국의 법인세 개편을 다섯 가지 방안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모의실험을 한 결과는 <표 5-1>에 종합적으로 요약되어 정리된 바와 같다.

<표 5-1> 법인세 개편 모의실험 결과

	A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	B 법인세율 인하 <sup>(a)</sup> 개인소득세 인상	C 법인세율 인하 <sup>(a)</sup> 부가가치세 인상	D 법인세율 인하 <sup>(a)</sup> 정부지출 감소	E 법인세율 인하 <sup>(a)</sup> 이전지출 감소
효율성 (CV: 보상변화)	CV 감소	10%인하시 CV증가 20~50%인하시 CV 감소	모든 법인세율 인 하에 대해 CV감소 CV감소폭:세율인하 폭에 비례해 증가	모든 법인세율 인 하에 대해 CV증가 40% 인하: CV증가 규모 극대화	10%인하시 CV증가 20~50%인하: CV 감소
형평성(소득분배)	소득분배 개선	소득분배 개선	소득분배 악화	소득분배 악화	소득분배 개선
세수효과	세수 불변	세수 불변	세수 불변	세수 감소	법인세율10%인하: 총세수1.7%감소 법인세율50%인하: 총세수 7.8%감소
산업별 생산효과	총생산량 증가	총생산량 감소 <sup>(c)</sup>	총생산량 감소 <sup>(c)</sup>	총생산량 감소 <sup>(c)</sup>	총생산량 증가 <sup>(d)</sup>
생산요소별 법인세 귀착 <sup>(b)</sup>	노동가격 상승 (1.046%) 자본가격 상승 (7.977%)	노동가격 상승 (0.570%) 자본가격 상승 (4.494%)	노동가격 상승 (0.502%) 자본가격 상승 (4.500%)	노동가격 하락 (1.346%) 자본가격 상승 (2.501%)	노동가격 상승 (0.184%) 자본가격 상승 (5.327%)
노동공급	노동공급 감소	노동공급 감소 <sup>(c)</sup>	노동공급 감소 <sup>(c)</sup>	노동공급 감소 <sup>(c)</sup>	노동공급 증가 <sup>(d)</sup>
저축	저축 감소	저축 감소 <sup>(c)</sup>	저축 증가 <sup>(d)</sup>	저축 증가 <sup>(d)</sup>	저축 증가 <sup>(d)</sup>

주: (a) 10%, 20%, 30%, 40%, 50% 인하

(b) 노동가격( $P_L$ )과 자본가격( $P_K$ )의 변화율은 법인세율을 50% 인하시킨 경우에 해당 하는 것임.

(c) 단 감소규모는 법인세율 인하 폭에 비례함

(d) 단 증가규모는 법인세율 인하 폭에 비례함

## 1. 후생 효과

다섯 가지 법인세 개편방안에 대한 후생효과를 보상변화를 중심으로 측정한 결과는 <표 5-2>에 정리된 바와 같다. 첫째, 법인세를 인하하고 후속 수단으로 기타 조세를 증가시키는 정책과 정부지출을 감소하는 방안 중에는 후자가 경제의 총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법인세를 인하하고 정부지출을 감소시키는 경우 이전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E)보다는 정부의 소비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D)이 더 큰 후생의 증진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법인세율을 현재 수준의 40% 인하하고 정부의 소비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5조 3,741억 원(GDP의 2.02%)의 후생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 법인세 개편 방안의 후생효과: 보상변화(CV)를 중심으로

(단위: 10억 원)

개편방안 A 법인세와 소득세 의 통합	법인세율 인하 폭	개편방안 B 법인세율 인하 개인소득세 인상	개편방안 C 법인세율 인하 부가가치세 인상	개편방안 D 법인세율 인하 정부지출 감소	개편방안 E 법인세율 인하 이전지출 감소
-1,258.6	10% 인하	108.2	-211.4	1,108.9	119.4
	20% 인하	-75.2	-705.4	1,687.2	-53.0
	30% 인하	-249.9	-1,183.5	2,231.9	-217.2
	40% 인하	-416.3	-1,646.4	5,374.1	-373.2
	50% 인하	-574.6	-2,095.0	3,238.9	-521.4

셋째, 2001년말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 개편방안 중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방안은 경제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완전히 통합하는 경우 보상변화(CV)는 -1조 2,586억 원으로 경제전체의 후생은 GDP(264조 7,817억 원)의 0.47%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법인세를 인하하고 기타 조세를 인상시키는 방안들 가운데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방안은 모든 경우 경제후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법인세를 인하하고 개인소득세를 인상하는 경우 현재 수준의 10%를 인하시키는 방안만이 후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 2.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법인세를 인하시키는 것은 고소득 계층의 세 부담을 경감시켜 궁극적으로 세후 소득을 증가시키므로 소득분배는 오히려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소득세를 인상하는 경우 소득세의 부담이 법인세보다는 더 누진적이므로 소득분배는 개선되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법인세를 인하하고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역진적이므로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법인세를 인하하는 대신 정부수입의 감소분만큼 정부지출을 감소시키는 경우이다. 분석 결과 정부의 소비지출을 감소하는 경우에는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반면, 가계에 대한 이전지출을 감소시키는 경우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정부지출은 공공재의 비배제성 때문에 모든 소득계층에 대한 혜택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하므로 정부 소비지출을 감소시키는 경우 상대적으로 저소득계층에 더 심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 소득분배는 악화된다. 반면에 가계에 대한 이전지출은 소득에 비례하므로 법인세 인하로 이전지출을 감소시키는 경우 고소득계층에 누진적으로 부담을 주게되므로 소득분배는 개선될 것이다.

## 3. 노동공급과 저축에 미치는 효과

법인세와 소득세의 완전통합과 법인세를 인하하고 소득세를 인상시키는 경우에는 모두 노동과 저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법인세 폐지가 장기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소득세를 인상하는 방안 B의 경우 역시 노동의 공급과 저축을 모두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방안 C와 정부의 소비지출을 감소하는 방안 D의 경우 노동의 공급은 감소시키는 반면 저축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과 저축을 모두 증가시키는 개편방안은 법인세를 인하하고 가계에 대한 이전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 E인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의 공급과 저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에도 법인세 인하와 기타 조세의 인상이란 개편방안보다는 법인세 인하와 정부지출의 감소 방안이 더욱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 4. 산업별 생산효과

법인세를 인하하고 개인소득세를 인상시키는 방안 B와 부가가치세를 인상시키는 방안 C는 모두 산업 총생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법인세 세율 인

하 폭에 비례하여 산업 총생산의 감소량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생산효과는 몇몇 산업의 경우 생산량이 증가하였는데 일반기계, 정밀기계, 건설산업과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산업은 양(+의) 생산량효과를 일관되게 보인 산업들이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정부 소비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 D는 산업 총생산을 감소시키는 반면, 정부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 E는 산업 총생산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법인세 세율 인하 폭에 비례하여 산업 총생산의 변화량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생산효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방안 D의 경우 거의 모든 산업의 생산이 감소하였으나 요업토석제품, 제1차금속,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 및 전자기계, 정밀기계와 건설산업의 생산은 증가하여 법인세 인하 방안에 관계없이 법인세 인하의 효과를 보는 업종으로 드러났다. 방안 E의 경우 반대로 산업별 생산효과는 거의 모든 산업을 제외하고는 생산이 증가하였으나 섬유 및 가죽, 도소매, 통신, 사회 및 서비스산업들이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 5. 세수 효과

법인세를 폐지하거나 인하하고 기타 조세를 인상하는 방안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세수가 동일하여야 되므로 세수에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세수의 변화가 있는 방안은 법인세를 인하하고 정부 지출을 감소시키는 경우들이다. 법인세를 현행 수준에서 10%, 20%, 30%, 40%, 50% 인하하고 정부 소비지출을 감소시키는 경우 각각 세수는 2.1%, 3.9%, 5.7%, 7.3%, 8.9% 감소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법인세를 인하하고 정부의 이전지출을 감소시키는 방안 E의 경우에는 약간 세수 감소규모가 방안 D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 5.4. 법인세의 귀착

법인세의 귀착(incidence of corporate income tax)은 법인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노동과 자본 중 어느 생산 요소에 귀착되는가를 분석하는 것이다. 즉, 이는 법인세 세율( $\tau_{ci}$ ) 단순 인상이 자본가격과 노동가격 및 자본소득, 노동소득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법인세 귀착을 분석하기 위한 모의실험은 여타 조세체계는 불변인 채 법인세의 산업별 유효세율을 일정 비율(10%) 인상시킨 다음 노동가격과 자본가격의 변화를 살핀 후 식 (5-5)와 같은 전가 요인(shift factor)을 계산하는 것이다.

$$(5-5) \quad \text{shift factor} = 1 + \frac{\Delta P_K K}{\Delta R}$$

단, 여기서  $\Delta R$  = 명목세수 변화분,  $K$  = 부존 자본량,  $\Delta P_K$  = 자본가격 변화분.

만약 shift factor = 0 이면 자본이 100% 세 부담을 지게되는 것을 의미하며, 0보다



작으면 자본이 100%보다 더 큰 세 부담을 지게되는 것을 의미하며, 0보다 크면 노동이 부분적으로 세 부담을 분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인세 세율을 10% 인상하는 경우 shift factor=1.5712로 추정되어 법인세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노동에도 부분적으로 귀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법인세의 부담이 자본뿐만 아니라 노동에도 부분적으로 귀착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법인세를 인하하는 경우 법인세 부담 경감의 효과가 자본소유자뿐만 아니라 노동자에게도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 VI. 결론 및 법인세 개편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6.1. 결론

법인세 개편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세수기반 하에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법인세율을 인하시켜서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은 효율성의 증진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처럼 효율성의 증진이 기대했던 대로 달성된다면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는 중장기적으로 보전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인세율의 인하가 투자를 기대했던 만큼 촉진시키지 못하고 투자가 촉진되더라도 투자가 생산의 증대로 이어져 국민소득의 증대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면 궁극적으로 세수감소와 함께 재정여건을 악화시키는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외환위기이후 재정위기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법인세율 인하가 가져올 효율성과 세수 그리고 형평성에의 영향을 사전에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에 실제 법인세율의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법인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법인세율 1%p 인하를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이 통과되어 2002년부터 시행되었다. 더구나 법인세율의 인하효과에 대한 논의가 국회 내에서 한창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법인세 폐지에 대한 논의도 국회 외부에서 제기되고 이에 대한 논쟁도 진행된 바 있다. 앞에서 충분히 논의된 바 있듯이, 법인세율 인하 그리고 법인세 폐지는 그 파급효과를 예상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효율성, 형평성 그리고 안정적인 세수의 세 가지 목표에 그 영향이 어떠한 것인가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하기란 어렵다. 아직까지 법인세율 인하를 중심으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의 파급효과에 대해 제대로 짜여진 분석 방법과 객관적인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연구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의 정부와 국회는 과감하게 법인세법 개정을 단행해 왔다. 더구나 법인세법 개정에 대한 제대로 된 사후평가도 하지 못해왔던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시도하는 법인세법 개편의 파급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의 시도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시도한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법인세법 모의실험결과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는 있다. 첫째, 법인세율을 인하해서 발생하는 세수감소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소득세나 소비세 등을 인상하기보다는 세출을 줄이는 것이 국민 후생측면에서 우월하다. 이는 세금인상이 가져오는 자원배분의 왜곡이 지출감소가 가져오는 그것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2001년 법인세율의 인하가 정당화되고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세출의 억제가 전제되었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2002년 예산심의 당시 건전 재정을 회복하기 위한 세출억제 노력없이 단지 법인세만 인하한 것은 법인세 인하로 발생한 정책효과의 진정한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 많다.

둘째, 법인세 인하에 따른 소득세 인상은 국민저축을 감소시키는 반면 지출감소는 국민저축을 증진시킨다는 점 또한 모의실험결과로 도출되었다. 이는 법인세 인하가 효율성의 증진으로 이어질 경우 기업저축이 증진되지만 세수보전을 위한 소득세의 인상은 개인저축의 감소를 초래하고 이러한 감소가 증대된 기업저축을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는 조세의 왜곡효과가 한국에서도 크게 나타날 수 있고 이는 효율성 저하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 법인세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의 보전을 세금인상으로 대처하는 경우 형평성의 측면에서 소득세의 인상이 부가가치세의 인상보다 우월하다. 누진적인 세목인 소득세의 인상이 역진적인 세목인 부가가치세의 인상보다 형평성차원에서 우월하기 때문이다.

넷째, 현 조세제도 하에서 다른 세제에 대한 개혁이 없이 법인세를 소득세로 흡수하는 식의 통합, 즉 법인세의 폐지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을 따를 경우, 효율성과 저축 그리고 노동공급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효율성의 증진이 주된 목적이 되고 있는 법인세 폐지의 논거가 본 연구에서의 모의실험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이는 법인세 폐지가 자본소득세에 대한 전반적 정비와 더불어 논의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네 가지 정책적 시사점은 본 연구의 기초가 되는 KOCGE 모형을 사용한 모의실험 결과를 해석하면서 도출된 것으로서 본 모형이 설정한 가정과 모수 값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본 모의실험에서 얻은 결론과 정책시사점의 방향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민감도분석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결국 본 연구에서 도출한 정책시사점을 출발점으로 하여 보다 폭넓고 깊이 있는 논의가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법인세 개편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한국적 기업환경과 세제여건을 고려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6.2. 법인세 개편에 대한 정책시사점

앞서 논의하였듯이 최근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이 법인세율 인하를 통하여 경기침체를 탈피하는 한편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최근 우

리나라에서도 법인세율 폐지 내지는 인하 등 조세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중이다<sup>28)</sup>. 이에 대해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9~36%이며, 법인세율은 15%와 27%로서 OECD 국가들 중에서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조세경쟁을 당장에 우려할 염려는 없다는 것이 정부측 주장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의 조세경쟁차원의 세계 개혁과 후발 개도국과 선진국 사이에 끼어있는 우리나라의 기업의 현 위치를 감안할 때 조세경쟁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법인세의 이중과세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오히려 외국에 비해 이중과세를 해소하려는 조치가 후퇴한 측면이 있다. 최근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법인세로 인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여 법인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4년에 '1/3 합산방식(gross-up)'에서 '저세율(18%) 합산방식'으로 배당세액공제를 확대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고, 1999년에는 '법인세부담률 합산방식'에 의해 이중과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다. 그러나 2001년에는 오히려 저세율(16%) 합산방식으로 복귀함으로써 배당세액공제가 축소되어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조치가 후퇴되었다. 법인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법인세율을 낮추어 법인에 투자한 자본소득에 대한 세후수익률을 높임으로써 보다 많은 법인출자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법인의 재무결정에 있어서도 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손비처리에 따른 혜택도 줄어들게 되고 법인소득이 배당될 경우에 나타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줄어들게 됨으로써 타인자본보다는 자기자본을 선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단기적으로는 배당세액공제를 다시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켜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외국의 세율수준, 비과세·감면의 축소 등 과세저변 확대 추이와 경기상황을 보아가면서 재정건전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율을 적정수준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법인세의 개편방향에 관한 논의에서 주목할 점은 현재의 논의가 주로 법정세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정세율이 법인의 세부담을 정

---

28) 상공회의소는 '경기회복을 위한 조세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율을 경쟁국인 대만 수준(25%)으로 인하하고, 2005년까지 23%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하였음. 또한 결손금의 이월기간을 확대해 줄 것도 요구했음. 또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도 지난 2월 한국(서울)의 비즈니스 환경이 경쟁상대인 홍콩·싱가포르·도쿄·상하이 등 5개 국제도시와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이라는 내용의 '기업환경조사(Business Environment Survey) 특별보고서'를 발표하였음. AMCHAM은 개선사항으로 주민세를 포함할 경우 최고 40%와 30%에 달하는 한국의 근로소득세와 법인세는 5개 경쟁도시 가운데 3위 수준이지만,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관행 정착을 위해 세율(稅率)을 더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근로소득세율의 경우 홍콩·싱가포르 수준인 20%대로 낮출 것을 건의하였음.

확히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는 없으며, 각종 감면과 공제, 특별부가세를 감안한 실효세율이 더 적합한 세부담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세의 개편방향 논의에 앞서 법인의 세부담 구조와 추이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 1. 법인세 개편 방안

### (1) 조세감면제도의 정비

법인세 세율인하나 법인세 폐지를 논의하기 이전에 우리 법인세제가 처해 있는 복잡하고 폭넓은 조세감면의 효과와 한계를 분석해야 한다. 우리의 법인세제는 각종 감면으로 세금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이윤의 폭이 좁아서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세금경감의 폭이 외국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각종 정책지원수단으로 조세를 활용한 결과 2000년 기준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세금감면이 14.6%에 이르고 이는 GDP의 2.5%에 달하는 규모이다.

이처럼 세금감면의 비중이 크다는 것은 세금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세금의 중립성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실 우리의 중소기업은 각종 세금감면이 워낙 복잡해서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잡한 세금감면에 대해 그때그때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세금에 대한 전문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쟁국과 세금에 있어서 효율성 경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금감면에 대한 재검토부터 해야 할 것이다. 우선 복잡한 세금감면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대폭 정비하고 축소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중복적이고 유사한 감면이 있으면 과감히 통폐합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감면제도는 시한을 두고 폐지하도록 하는 등 비과세와 감면의 전반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조세의 시장중립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과거 개발연대부터 존치되고 있어 감면의 기득권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수출산업,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 등 각종 산업지원제도들을 축소·정비해야 할 것이다. 각종 부동산 관련 양도세 감면, 농어촌 경제활성화를 위한 감면 등 실효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하며 일몰법제도와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인 조세감면관리의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 (2) 조세지출예산제도의 활성화

OECD보고서에서 Dalsgaard(2000)는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관련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정책으로 중화학공업과 같은 특정 산업에 대해서 자본이 과잉 투자되는 부작용을 초래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조세지원은 주로 기술개발, 중소기업 등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부문에 대한 조세지출액은 1998

년의 경우 GDP의 0.6%인데 이는 OECD 대부분 국가들의 동 비중이 0.2% 수준임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sup>29)</sup> 조세지원 또는 조세유인(tax incentives)은 투자 세액 공제, 면세, 소득 공제, 공공기업 등에 대한 낮은 세율, 그리고 일종의 조세이연에 속하는 가속상속제도, 비과세 적립금 제도 등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998년에는 조세지원 일몰제도가 도입되어 조세혜택은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자동 소멸되도록 되었다.

<표 6-1> 조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지출

(단위: 10억원)

	세목				국내총생산 대비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계	
중소기업	89	197		286	0.1
설비투자	14	349		362	0.1
기술 및 인력개발	17	354		370	0.1
사회간접자본과 주택	242	299		541	0.1
도시·농촌 균형발전	385	62	32	479	0.1
저축 및 금융기관	2,621	231		2,852	0.6
사회보험	249	302		551	0.1
근로자	1,192	14		1,206	0.3
교육문화	156	467	5	629	0.1
기타	4	451		455	0.1
총계	4,967	2,726	38	7,731	1.7

자료: Dalgaard(2000)

이와 같은 조세지원은 기업 형태, 투자 및 자금조달의 유형에 따라 조세 유인이 다르게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자원배분에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기계장비에 대한 투자와 부채조달에 대한 유인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조세감면은 간접적인 형태의 정부지출이라는 점에서 나라살림을 효율적으로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세금감면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지출과 세출예산을 연계시키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조세지출예산제도라고 이해하고 있는데 조세감면에 대해 세출예산의 분류에 맞도록 통계를 작성하고 공표함으로써 세출예산을 심의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9) 참고로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2001년 조세지출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에는 법인세에 대한 조세지출이 2조 5,386억 원이었으며 2000년에는 4조 3,286억원이며 2001년에는 4조 9,481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001년 전체 조세지출전망액은 14조 1,911억원으로 GDP전망액 551조원의 2.6%, 관련국세 전망액의 13.6%에 해당되고 있음. 조세지출규모는 국세 대비 1999년 13.9%, 2000년 13.8%, 2001년(전망) 13.6%로서 그 규모가 축소되는 추세에 있음.

### (3) 법인세율 인하와 이중과세조정

법인세율은 본 연구결과가 설명하는 것처럼 재정건전화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율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모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현행 법인세 세율을 10~20% 인하(최고 한계세율 기준으로 2.7~5.4% 포인트)시키고 세수 감소분만큼 이전지출을 줄이는 것이 효율성측면에서나 국민전체의 후생측면에서 최적의 것으로 판단된다. 법인세율을 낮출 경우 법인에 투자한 자본소득에 대한 세후수익률을 높임으로써 보다 많은 법인출자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법인세율이 인하되면 법인의 재무결정에 있어서도 차입금 지급이자에 대한 손비처리에 따른 혜택도 줄어들게 되고 법인소득이 배당될 경우 나타나는 이중과세의 문제도 줄어들게 됨으로써 타인자본보다는 자기자본을 선호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단기적으로는 배당세액공제를 다시 확대하고 법인의 부동산양도시 법인세와 함께 추가로 부과되는 특별부가세를 폐지하면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국가들은 법인세로 인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여 법인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1999년에 도입되었던 법인세 부담률 합산방식에 의한 이중과세조정으로 환원해야 할 것이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법인세제의 단일세율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자원배분의 왜곡효과를 축소해야 할 것이다. 단일세율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전히 없앴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효과를 도모하고, 기업의 접대비에 대한 손금산입을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해야 할 것이다.

### (4) 결손금 공제제도의 선진국 수준 개선

결손금 공제제도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해 누적적자로 인한 재무구조 악화상태를 조기 극복하는데 장애가 된다. 결손금 이월공제제도는 계속기업(going concern)의 일반원리에 따라 세계각국에서 적극 시행하고 있으며, 공제기간이 짧으면 사업년도간의 소득-비용 상계가 불충분해 진다.

<표 6-2> 결손금 공제제도 국제비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한국	멕시코	스웨덴
결손금 이월공제기간(년)	20	7	무제한	무제한	5	10	무제한
결손금 소급공제기간(년)	2	1	1	1	0(2 <sup>1)</sup> )	0	0

주: 1)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2년간의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

우리 기업의 경우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이 짧아 IMF(1997년) 이후 거액의 적자가 발생하고 1999~2000년간 소폭 흑자를 낸 기업들이 과거의 결손을 해소하는데 제약을 받게될 전망이다. 따라서 결손금에 대한 이월공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소급공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소급공제는 경기후퇴로 다수 기업들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 과거의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불황기의 기업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5) 구조조정 지원세제의 상시화

변화와 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업의 사업구조조정이 상시화 되고 있으나 현행 세제는 1회성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기업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적용시한 연장방식을 탈피해 구조조정 지원세제를 항구화해야 할 것이다. 벤처기업 주식을 다른 벤처기업에 현물출자할 경우에 대한 양도세 50% 감면제도는 주식스와핑방식에 의한 우호적 M&A로 활용중인 바 과세이연방식으로 전환해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 지주회사 설립시 주식의 교환·이전에 대한 양도세 과세이연 역시 2003년말까지 한시 적용되고 있는데 주식의 명목만 바뀌는 데 대한 지원이므로 항구적인 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6)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최근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관련세제의 미비로 세부담이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분할 전에는 사업부문간의 물품이동에 해당하여 손익을 계산할 이유가 없다. 한편 분할 후에는 회사간 거래에 해당하여 손익을 인식해야 한다. 이로부터 이익이 과대계상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또한 분할 전에는 적자사업과 흑자사업을 서로 상계할 수 있으나 분할 후에는 회사단위가 달라져 상계가 불가능하여 세부담이 증가한다. 현재 정부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인 바 첫째, 자회사에 대한 최저지분율의 적정수준 책정문제, 둘째, 적자회사 인수 등에 의한 조세회피에 대한 차단 방법, 셋째, 제도도입의 시기의 세 가지가 주요 쟁점사항으로 대두될 전망이다.

연결납세제도는 도입은 중장기 검토과제로만 미루어 둘 것이 아니라 2003년부터 도입한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본도 내년부터 제도도입방침을 사전에 밝히고 입법추진 중에 있다. 자회사에 대한 최저지분율은 독일의 입법례(50% 이상)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50% 이상이면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확실하고,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 최저지분율이 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50%인 점도 감안해야 한다.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적자회사 인수시 이월결손금의 상계를 불허할 수 있을 것이다.

## (7) 기업과세제도의 간소화<sup>30)</sup>

앞서도 언급했듯이 우리의 법인세 체계는 복잡하여 공제, 감면, 비과세혜택을 100% 누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요즘 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로 법인세율 인하가 논의되고 있지만 법인의 세부담은 법인세율 외에 공제 및 감면, 비과세, 특별부과세, 결손금이월 및 소급, 최저한계세율 등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법인세부담의 완화 및 방법은 세수에 미치는 영향, 세제의 간소화, 행정적 부담, 비과세 및 감면 축소여부, 경제상황 변화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인세에 대한 국제적 조세경쟁이 심화되어 불가피하게 법인의 세부담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법인세율보다는 특별부가세를 축소, 폐지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율의 경우 세율 1% 인하는 대략 과세표준 0.01의 세수감소를 가져온다고 할 수 있다. 2000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과세표준이 약 61.6조원이므로 세율 1% 인하가 약 6천억원 정도의 세수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특별부가세를 축소, 폐지하는 것은 세제의 단순화, 행정부담의 감소, 기업의 부동산 투기 억제, 세수 감소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 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적절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과세표준이 작은 중소기업은 특별세액감면이 존재하고, 최저한계세율이 높아 각종 세제상의 유인을 활용할 필요가 없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낮추어 주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 2. 준조세의 정비

세율인하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또 한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이 세금을 통해 경제하려는 의욕을 갖게 하여 궁극적으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려면 세금 비슷한 형태로 부담하는 각종 비용들 이른바 준조세를 획기적으로 정비해야 한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할 당시 100대 과제를 제시하고 그 안에 준조세의 정비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기업들은 세금보다 준조세가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세금 이외에 특별부담금 (부담금, 부과금, 예치금), 분담금, 출연금 사회보장성 부담금, 기부금, 성금, 행정요금 등 수없이 많은 종류의 부담은 우리 기업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준조세를 정비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종 부담금들을 통합 관리하는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담금 중에서 세금의 성격이 강한 것은 세금으로 전환하고 당초 취지가 퇴색된 것은 폐지해야 할 것이다.

법적 강제성에 의한 부담금 중 수익자부담이 아닌 많은 부분을 조세로 흡수하

---

30) 박기백, 최근법인세 추이와 시사점, 2001. 9 재정포럼



여 일반 조세화하고 동시에 정부지원단체 및 사회단체들의 자발성을 가장한 반강제적 부담금 등을 과감히 없애는 등 예산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기금 등에 대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관련 법제정에 앞서 작은 정부의 원칙 하에 각종 공단 및 협회 등 산하 단체·기관들을 정비하는 과정을 통하여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의 부담금 등은 편익세제 성격은 없이 예산의 경직성 만 증가시키는 문제점을 갖고있다. 따라서 설령 부담금들을 그대로 존치시킨다고 하더라도 그 징수액은 일반예산에 편입시켜야 한다. 지금까지 부담금 등의 재원을 바탕으로 진행되어 오던 사업들은 매년 예산 배정과정에서 그 필요성을 재평가 받아야 할 것이다.

각 분야별 개선방안은 첫째 유사한 취지의 법정준조세와, 존치 필요성이 퇴색된 법정준조세를 폐지 및 정비해야 한다. 둘째, 부담요율을 경감하고 납부제도를 개선하고 셋째, 부과근거, 부과기준의 사용 및 운영내역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

기업입장에서 보면 준조세의 종류가 많고 부담도 큰데 비해 정부가 생각하는 준조세의 범위는 너무 엄격히 한정해서 부담자 측에서 제시한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난다. 각종 준조세가 많이 생기는 것은 징수 및 부과가 편하고,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부처가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부부처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부담금관리기본법이 2002년 2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sup>31)</sup>. 정부는 이 법의 시행에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부과방법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 유사, 또는 중복 부과되는 부담금 등은 통폐합시키고 징수 목적과 용도간의 괴리가 큰 경우 조세로 전환하고 부과실적이 미미한 부담금 등을 폐지시켜야 한다.

둘째, 부담금 등의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기금백서 수록내용의 내실화 각종 기금의 집행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수록 공개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셋째, 특별회계, 기금 신설을 가능한 억제하고, 아울러 일반회계로의 전환을 통하여 부처의 재원에 대한 재량권을 축소해야 한다.

넷째, 부담금과 관련된 각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총비용이 미리 결정되어야

---

31) 그동안 많은 준조세가 부과되어 기업의 경제활동에 제약이 되고 국민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음. 진경련 등 경제계에서는 경제부처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준조세 개선방안을 정부에 건의하였으며(2000.10.5), 준조세 개선방안을 토대로 기획예산처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준조세 정비방안을 마련 확정해 발표하였음(2000.12.4). 또한 준조세정비방안에 따라 관련 후속 입법안도 마련되어 『부담금 관리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고(2001.12.21), 동법 시행령이 함께 공포되었음(2001.12.31). 이에 따라 『부담금 관리기본법』이 시행됨(2002.1.1)에 따라 각 해당기관은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를 기획예산처에 작성 및 제출해야 하며, 부담금 신설 시에는 사전심사를 받고, 부담금 운용에 대해서도 평가를 받는 등 제제를 받게된다.

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부담금 징수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부담금을 중심으로 한 준조세의 정비는 기업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면서 경제의욕을 커지게 하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 기업의 경우 이러한 부담금뿐만 아니라 각종 정치자금이나 부패에 연루된 자금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음성적인 자금부담 또한 기업에게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지출되는 경비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넓은 의미의 준조세라고도 할 수 있다. 최근 이러한 음성적인 기업비용으로서의 준조세를 양성화하기 위해 법인세 1%의 정치자금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성화방안은 음성적 정치자금과 부패자금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는 정치사회적 풍토가 자리잡지 않는 한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을 줄여주는데 기여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본적으로 고비용정치와 부패구조의 척결이 선행되지 않는 한 법인세 1%의 정치자금화는 그 실효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동구, 1995, 『우리나라 법인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제과세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 곽태원, 1994, 『우리나라 조세제도 운영비 추정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김성태 · 이인실 · 안종범 · 이상돈, 1999a, 「한국 조세제도와 조세행정의 조화로운 개혁방안」, 『경제학연구』 제47집 제3호, pp.23-63.
- 김성태 · 이인실 · 안종범 · 이상돈, 1999b, 「한국 조세제도의 초과부담 추정」, 『국제경제연구』 제5권 제3호, pp.45-72.
- 김유찬, 1995, 「법인세율 인하의 투자유인 효과」, 『재정금융연구』 제2권 제1호.
- 김종웅, 1996, 「법인소득세와 개인자본소득세의 초과부담」, 『논문집』 제14집, 경산대학교, pp.17-33.
- 노현섭 · 김태수, 1996, 「기업규모와 유효세율간의 관계」, 『한국조세연구』 제11권, 한국조세학회, pp.157-188.
- 박기백 · 이명현, 2000, 『세수추계의 기법개발 연구: 법인세, 관세의 세수추계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 전환효과』, 조세연구원 연구보고서 00-03.
- 안종석, 1996, 「개방경제 하에서 조세정책이 투자 및 저축에 미치는 효과 분석」, 『재정금융연구』 제3권 제2호.
- 원윤희, 1996, 「유효한계세율의 추정을 통한 우리 나라 자본소득과세 분석」, 『한국조세연구』 제11권, 한국조세학회, pp. 111-156.
- 유병훈, 1993, 「한국 법인기업의 유효세율에 관한 연구」, 『영남경상논총』 제11권, 영남경상학회, pp.245-264.
- 유시권, 1997, 『기업회계 기준 개정과 법인세법의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정책보고서 97-09.
- 이두기 · 김영락, 1998, 「조세혜택법인의 내재적 조세와 법인세 부담률에 관한 실증연구」, 『산업경제연구』 제12권 제4호, 한국산업경제학회, pp.451-478.
- 이명훈, 1993, 「법인세의 무변명 지급이자 과세」, 『재정논집』 제8집, 한국재정학회, pp.31-60.
- 이우택, 1999, 「법인세제의 평가와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13호, 한국세무학회, pp.67-100.
- 이준규, 1991, 「법인과세의 공평과 법인세부담의 측정방법」, 『사회과학논총』 제9집, 경희대학교 사회과학대학, pp.239-258.
- 조계근, 1996, 「우리나라 제조업의 유효한계세율 분석」, 『재정논집』 제11집 제1호, 한국재정학회, pp.185-214.
- 현진권, 2001, 「한계유효세율을 통해 본 우리나라 세부담 추이」,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2001년 5월호

- Auerbach, A. and Joel Slemrod, 1997, "The Economic Effects of the tax Reform Act of 1986,"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pp.589-632.
- Ballard, Charles, Don Fullerton, John Shoven, and John Whalley, 1985, *A General Equilibrium Model for Tax Policy Evalu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Bradford, David, 1978, "Factor Prices May be Constant, but Factor Returns are Not," *Economics Letters*, 1, (No. 3), pp.199-203.
- Fuchs, Victor, Alan Krueger, and James Poterba, 1997, "Why Do Economists Disagree about Policy? The Role of Beliefs About Parameters and Values," *NBER Working Paper* 6151.
- Gravelle, Jane and Laurence Kotlikoff, 1989, "The Incidence and Efficiency Costs of Corporate Taxation When Corporate and Noncorporate Firms Produce the Same Good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7, pp. 749-90.
- Gravelle, Jane and Laurence Kotlikoff, 1995, "Corporate Taxation and the Efficiency Gains of the 1986 Tax Reform Act," *Economic Theory* 6, pp.51-81.
- Harberger, Arnold, 1962, "The Incidence of the Corporation Income Tax,"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70, pp.215-224.
- Harberger, A. C., 1966, "Efficiency Effects of Income from Capital", *Effects of Corporation Income Tax*, ed. M. Krzyzaniak, Wayne State Univ. Press.
- Harberger, Arnold, 1995, "The ABC's of Corporate Tax Incidence: Insights into the Open Economy Case," *Tax Policy and Economic Growth*, Washington D.C.: American Council for Capital Formation.
- Kotlikoff, Laurence and L. H. Summers, 1987, Tax Incidence, In *Handbook of Public Economics*, edited by Alan J. Auerbach and Martin S. Feldstein, Amsterdam : North-Holland.
- Mutti, John and Harry Grubert, 1985, "The Taxation of Capital Income in an open Economy : The Importance of Resident-Nonresident Tax Treatmen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27, pp.291-309.
- Shoven, J. B. and J. Whalley, 1992, *Applying General Equilibrium*, Cambridge Surveys of Economic Literature.
- Sibert, Anne, 1990, "Taxing Capital in a Large Open Econom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4, pp.297-319.
- Slemrod, Joel, 1988, "Taxation With International Capital Mobility," In *Uneasy Compromise : Problems of a Hybrid Income-Consumption Tax*, edited by Henry J. Aaron, Harvey Galper, and Joseph A. Pechman, Washington

D.C. : The Brookings Institution.

Slemrod, Joel, 1995a, "Free Trade Taxation and Protectionist Taxation,"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2, pp.471-489.

Slemrod, Joel, 1995b, "Professional Opinions About Tax Policy," *National Tax  
Journal* 48, pp.121-147.

『우리나라 자본소득과세의 정책과제』  
정책세미나 토론내용

- 일 시 : 2002년 5월 14일(화) 14:00 ~ 17:00
-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 주 최 : 한국경제연구원,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후 원 : 대한상공회의소
- 사 회 : 장오현(동국대 교수)
- 토론자 : 곽태원(서강대 교수)  
엄기웅(대한상공회의소 상무)  
정세균(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  
최경수(재경부 세제실장)

**정세균 의원:** 먼저 말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준비하신 내용들이 대부분이 법인세 인하를 찬성하는 입장에 있으신 것 같으니까 저 같이 반대하는 입장에 선 사람이 꼭 필요할 것 같아서 바쁘지만 억지로 나왔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법인세 추가인하나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조세개혁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조세개혁에 대한 논의가 좀더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을 텐데 왜 하필 법인세인가 하는 의문을 갖습니다. 우리나라 조세체계가 전반적으로 누구는 누더기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데 잘못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인 논의와 개선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을 것이라든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법인세가 주 이슈가 되고 작년부터 이 문제가 활발히 토론이 되고 있고 심지어 언론에서도 나서서 적극 밀고 있는 반면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지 않아서 아쉬운 생각입니다. 부가세는 이대로 괜찮은가 라는 물음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법인세보다는 부가세를 손질하는 것이 더 급한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신용카드의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과거에 세원이 누락되던 부분이 많이 포착이 되기 때문에 부가세율을 조정해 주는 것이 경기측면이나 모든 측면에서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논의는 왜 없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작년 연말에 국회에서 법인세 때문에 문제가 많았고 그 당시에는 왜 법인세인하를 주장하는 야당측에서는 경기부양에 감세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에 저같은 경우에는 감세보다는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효과가 있다. 그 논쟁을 벌이던 끝에 2%를 인하하려던 야당과 일부 반대하던 여당의 타협안으로 1%인하를 하는 것으로 끝이 났는데 작년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세제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 앞섰기 때문에 지금 차분하게 그런데서 벗어나서 학자들 간에 법인세에 관해서 검토가 되는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는 근거가 다른 나라들이 법인세를 내리고 있어서 우리가 먼저 내려야 한다라는 주장은 아닌가 또 미국이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정치가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내리자는 데 반대하는 것은 아주 바보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반대해 왔고 앞으로도 반대측 입장에 서서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법인세가 과대해서 그렇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법인세라기보다는 기업자체의 기술력, 노사문제, 재무구조 등이 원인이지 법인세가 혼자 기업만 부담하고 규모가 작은 기업은 그에 따라 적게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능력이 있는 기업에게만 부과하고 있는 법인세를 굳이 지금 왜 내려야 하는지 아무리 두분 논문을 잘 읽어봐도 잘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

세를 인하한다는 것이 작년에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경기부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보다는 세수를 더 늘려서 재정지출을 하는 것이 오히려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 대해서만 감세정책을 취하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대만 등도 경기부양을 위해서 재정지출을 확대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미국도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법인세 폐지론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현재 법인세율 인하는 현재 추진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런 추세다라는 것도 저로선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는 이 법인세를 인하하면 세입기반을 약화시켜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금을 한번 내리면 올리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에 1%내린 것도 힘든데 우리나라가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지금 복지정책, 공적자금 회수가 되지 않아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통일비용 마련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입기반을 약화시키는 감세조치는 대단히 신중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인세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9년도부터 기간세목이기 때문에 의존도가 상당한데 우리나라가 적자재정을 꾸려가고 있는 과정에서 법인세의 인하로 세입기반을 항구적으로 축소시키는 조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는 감세조치는 소득 재분배에 역효과를 나타내고 고소득층에만 효과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IMF 후에 지니계수가 악화된 것은 우려하는 바고 현정권이 이 문제 때문에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니계수를 개선해야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소득재분배에 효과 측면에서 고소득층에게 돌아간다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해하는 일이고 특히 법인세 경우에는 대법인이 부담을 하고 경영성과가 있는 기업이 내는 형편이기 때문에 더 올리자는 것도 아니고 현행 정도의 모습을 그냥 가져가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논문에서도 나왔듯이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다른나라에 비해서 결코 높은 것이 아니라는 데서는 모두 동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다라고 하여 우리도 법인세율을 1%인하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심화되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외국으로 이전할 기미가 보여서 국가적인 이익에 손해가 되면 그때 내리면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구요. 설사 우리가 법인세율을 대폭 삭감한다고 해서 다국적기업이나 미국의 우수기업들이 우리나라로 이전해 올 것이냐? 그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세 인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넷째로 국가 채무가 많이 쌓여 있는데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현재 200조 + α라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가 지고 있는 채무입니다. 거기에 공적자금 회수도 어렵고 공적자금 이자에 대해서도 정부가 골머리를 썩고



있는 입장인데 이 상황에서 국가 채무를 걱정해야 하는데 세율인하라는 것은 도 대체 납득할 수 없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인세를 폐지하자라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심하게 이야기하면 흑세무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법인세를 폐지하면 20조원을 어디서 어떻게 마련한다는 말입니까? 대체자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세재개혁을 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폐지론은 정말 현실성이 없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가 선제적으로 법인세를 폐지해서 국제적으로 앞장서 나가면 국가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라는 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같이 큰 경제 대국에서 그런 조치를 취하면 다 따라가겠죠. 하지만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다고 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어렵고 법인세 때문에 기업들이 투명하게 회계장부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법인세는 기업의 투명성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법인세 폐지론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미국에서는 감세정책을 취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것 때문에 미연방정부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섰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감세정책이 실지로 재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학문적으로 검토하고 그것을 우리나라 정책입안에 참고하여 여러 학자분들이 수고해주셨으면 하고 아르헨티나의 경우에는 인기 영합적인 정책 재정건전화를 재대로 지키지 못하여 위기를 맞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 세제개편 논의 법인세 논의가 아르헨티나를 참고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법인세를 추가인하한다든지 법인세를 폐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박태원 교수 :**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100년 동안 소득세가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소득세가 퇴역해야 한다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1세기 중에는 소비기반 과세쪽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짐은 미국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라는 것에 이의는 없을 것으로 알고요. 이걸 우리가 대비해야한다는 관점에서 학자들이나 조세 행정담당관들이 미국을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도 대비해야 한다고 보고 법인세 폐지도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라는 말이지요.

이 CGE모형은 문제가 많은 모형이지만 대안이 없으면 유용한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이 모형을 활용하지 못하다가 2~3년 전부터 여러 학자분들이 연구를 하셔서 좋은 논문들을 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형들이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해가면서 상당히 안정적이고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라고 하지만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기에 토론을 위해서 문제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하여 안정적이라고 해도 처음에 파라미터 설정이 잘못되었으면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반복하여도 잘못된 결과가 도출된다는 것입니다. 법인세 부분을 시뮬레이션하려면 우리나라 법인세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감가상각 제도라든지 그 밖의 여러 가지 감면제도가 여러 부분에 자원배분이 되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이것이 자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ダイナ믹하게 모형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시뮬레이션 결과에 의문을 제기하면 제일 좋은 결과를 얻은 것이 세율을 인하하고 지출을 감소하는 대안입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하지만 이 모형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을 크게 부각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회의가 듭니다. 이렇게 세율을 인하하고 지출을 억제시키는 것이 거시적인 현상이라면 이 모형이 거시적인 현상을 형상화할 수 있느냐는 것이 의문이고 만일 그것이 아니고 정부부분을 줄이는 것이 경제전체를 공공제와 사적제 간의 배분을 최적화 함으로서 국민후생이 늘어난 것이라고 하면 과연 이 모형에서 유틸리티 함수를 어떻게 반영한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통쾌하지만 과정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CV(보상변화)를 가지고 후생판정을 하셨는데 EV를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요 이 모형에 신빙성에서 조금 의심을 하는 것은 대안 중에서 법인세를 내리고 부가세를 올리는 방안하고 법인세를 내리고 소득세를 올리는 방안을 비교하셨는데 부가세를 올리는 방안보다 소득세를 올리는 방안이 좋게 나왔습니다. 이것도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 믿어달라는 것은 논리적인 설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분배 때문에 그렇다면 분배가 후생함수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가중치가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러한 것이 분명히 설명이 되지 않은 것 같구요. 결과를 보면 생산에 있어서도 부가세보다 소득세가 좋게 나왔는데 경제이론적으로 좀 설득이 되지 않는데 혹시나 파라미터설정이 잘못이 아닌지 그런걸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형이 충분히 설명된 풀버전의 논문을 보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적어도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대안들을 적어 주셨는데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다만 논문 자체가 모델을 가지고 시뮬레이션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거기서 결론이 도출이 되었지만 그것과는 다른 방식의 것들이 섞여 있어 논문이 산만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오히려 두 가지를 따로 나누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조되어야 하는 부분이 부담금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세행정을 하는데 노출된 법인세는 낮추면서 보이지 않는 부담금은 터무니없이 높이고 비효율적으로

사용한다면 우리 기업의 전략적으로도 어리석은 짓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담금에 대해서 근본적인 노력을 모아야하지 않을까 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두서없는 저의 코멘트를 마칩니다.

**엄기웅 상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요. 저는 조세전문가도 아니고 사업자 단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쪽 시점에서 조세감면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사실 요즈음 대선 시즌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같이 정책대결에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 비방의 글들이나 또는 정치인들의 정치자금을 잘못 쓴다고 하는 것들만 지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세금감면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지요. 하지만 공화당은 내내 재정적자에 허덕이다가 클린턴 전대통령이 집권 후 재정흑자로 돌아서고 모든 세계개편 덕을 클린턴이 보아서 무역흑자까지 내고 의료보험 등 재정지출을 늘리는 쪽으로 갔었습니다.

저희 사업자 쪽에서는 법인세의 당장 폐지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주류가 그쪽으로 간다면 그때 정책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 저희쪽 상공회의소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법인세의 세율은 인하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조세개혁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법인소득을 개인소득으로 흡수하자 법인·개인소득을 소비과세로 전환하자로 정해져 있죠. 결과적으로는 법인세를 폐지하자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논의도 없고 여러 가지 대안도 없는 상태에서 법인세 폐지론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지금 당장 폐지하면 이중과세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상공회의소에서는 폐지보다는 낮추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하겠습니다. 당장 급한것은 외국자본이 떠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인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피부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에 가입했고 가입국들이 법인세를 낮추는 택스 컴피테이션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손놓고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거꾸로 부가가치세 다음으로 법인세가 높은데 작년에 법인세 2%인하 논의에서 1%삭감으로 결론이 났고 소득세도 40%에서 4%인하가 된 36%가 되었기에 OECD 가맹국으로서 대열에 동참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전 법인세 제개선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단기적인 전략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기적인 전략으로 OECD 국가들은 법인세제 면에서 완벽하게 되고 있느냐? 배당소득 이중과세 방지문제죠. 우리나라도 완전통합(full imputation)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하고 하는 것이죠. 업계에서 보면 배당소득도 과세하고 법인세도 과

세하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든 완전히 없애는 것이 어떻겠느냐하고 봅니다 법인세 문제도 여러 국가들이 인하한다면 가야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세율이 2개거든요 소득 1억 이하에 대해서는 15%, 1억이 넘을 시에는 27% 세율을 매기고 있는데 이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겠지만 법인세를 적게 내는 기업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고 법인세를 많이 낼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이런 차등과세는 기업의 효율성과 거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본은 불리하고 타인자본은 유리하게 되어 있는 이자 지출에 대해서 세금을 메기자는 것인데 예를 들어 자기 자본의 200%를 차입하게 되면은 손금보상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자본을 높이면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없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증자소득공제를 주장해 왔습니다. 그것을 도입해서 자기자본에 유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월공제문제입니다. 기간을 짧게 할 것 없이 10년 15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해주어서 단기년도에 손실이 낮다 전년도에서 환급 받으면 어떻겠느냐 이러한 소위 백워드 포워드를 동시에 쓰는 법인세 조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법인세나 조세감면은 반대합니다. 감면제도 만큼 비효율적이고 자원배분을 악화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감면은 계속 줄이되 감세는 허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찬동을 합니다. 찬동 이유로 첫째로 기업이라는 것은 영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서 문을 닫는다는 것은 정부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기업이 영속성이 되면서 고용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게 해서 기업을 죽인다 이것은 말이 안됩니다. 저는 차라리 세율을 계속 낮추어 가면서 세수를 늘리는 방안 그리고 재정지출을 줄이는 방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장기개선 문제는 미국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법인소득을 개인소득으로 가는 방안에서는 개인소득을 올리는 방안도 문제가 있고 부가가치세를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좀더 신중히 검토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법인과 개인소득을 소비과세로 간다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없는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만일 부가가치세가 있는 유럽에서는 법인과 개인소득이 소비과세로 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와 소비과세로 가는 그 부분과의 어떤 중복성은 없는지 문제제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는 간접세를 통합하자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간접세가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쇼핑 등으로 물건을 살 경우 과세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간접세부분은 세계가 통일되는 방안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방안에서는 미국 방식에 일단 찬동하지만 전세계적인 추세를 봐가면서 대응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준조세문제입니다.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개편하기 전에 최고 40% 였는데 4대 보험을 들면 55%까지 올라가는데 이것은 납세자의 부담을 주는 데 이

것 중 일부는 납세자에게 돌아간다고 이를 논하지 않으면 조세부담은 다른 나라보다 낮은 거냐 외국의 자본유치에 수월하겠냐는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기 때문에 같이 다루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IMF때 진니계수가 악화되면서 소득자들의 소득불균형이 악화되었다는데 제가 발견한 것은 사업자 소득이 악화되었다는 것이고 근로자들의 소득은 그리 악화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IMF 이후 사업자가 소득불균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40% 이상이면 소득불균형이 많이 악화되었다는 것인데 사업자가 38%정도였고 근로자는 28%선이었습니다. 악화되었다는 것은 근로자들의 염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간에 세제는 기업의 영속성을 초점을 맞추어 정부가 조세개편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최경수 실장 :**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과세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해에 법인세의 폐지와 축소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제였는데 지난해 논쟁때는 구체적인 대안 없이 폐지를 하자 인하를 하자는 논쟁이었지만 오늘 재정학회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제시하면서 논의하시는 것에 대해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선 현재 소득과세가 미국과 일본에서는 소득과세를 비롯한 직접세가 80%가 되기 때문에 근로의욕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세 재원을 가지고 소득과 소비와 재산에 대해서 균형 있게 선택을 하자에서 소비과세로 전환을 하자라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소득을 기반으로하는 과세나 소비를 기반으로하는 과세나 이지만 부가가치세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나 타 국가에서는 소득과세와 소비과세가 거의 50:50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런 국가에서는 소비과세로 상당히 빨리 진전되지 않았나 하고요. 극단적으로 미국이나 일부국가에서 종합소비세제 소비를 기준으로 일원화하자라고 하지만 저축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오로지 소비에 관해서만 과세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소득 불평등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대안제시에 있어서 논리적인 문제, 예를 들어 법인세와 소득세의 통합문제에 있어서 노동봉급이 감소되고 저축이 감소되고 이렇게 되면은 총 생산량이 증가가 되면서 소득분배가 계산되는데 오히려 총 효용이 감소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몇 가지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 법인세 폐지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실무적으로 보면은 법인세를 폐지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법인세를 줄이면서 바로 세출을 줄이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재정여건상으로 세출을 줄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적자금이라고 해서 잔고가 100조 정도 있습니다. 금리가 약 6~7%라고 할 때 이것을 가지고 공적자금을 차환발행을 한다고 할 때 이자에 대해서는 재정에서 부담해 주어야 함

니다. 이럴 때 매년 6~7조 정도를 부담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현재 국세가 103조 정도가 목표인데 6~7조 정도의 부담증가 복지면에서의 부담증가 여러 가지 요인에서는 세출요인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세출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세출을 증가시키지 않고 소득세나 부가세를 가지고 증가했을 때에는 우리기업들이 개인기업들이 모두 법인으로 전환해서 남은 개인기업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에 대해서 미실현이익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이때 법인이 배당을 안하고 계속 유보를 했을 때 유보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조세액을 제시했을 때 상당히 논란거리가 되고 이론적으로 법인세 폐지는 이야기하기가 쉽지만 실무적으로 법인세 폐지는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이 올 수 있고 법인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면 5~6%정도 인상이 되었을 때 엄청난 조세저항이 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물가인상과 이런 문제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법인세 폐지를 이야기 할 수 있겠지만 실무적으로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인하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법인단계와 개인단계의 이 세부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순수한 이중과세 조정장치를 가지고 각국마다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과 같이 법인세폐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만은 그런 나라들은 언제라도 법인실체설에 입장에서 개인단계에서 세공제를 전혀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라던가 구라 파국가마다 이중과세 조정장치가 아주 상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중과세 조정장치가 한 전체의 법인단계세액에서 한 10%만 주주단계에서 이것을 공제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아주 full imputation 프랑스 한 국가만 full imputation하고 대부분은 부분적으로 해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가정을 가지고 법인단계에서 이것을 가지고 법인소득을 가지고 주주단계에서 완전히 배당을 했다고 이렇게 간주해서 법인단계 세부담을 국가별로 비교를 해보니까 우리 한국의 경우는 현재 비율을 가지고 법인에서 순수하게 부담하는 세액이 한 13% 됩니다. 그러면 미국은 현행세율대로 했을 때 한 35% 일본은 부분적으로 imputation하기 때문에 23% 그 다음에 영국이 우리나라와 거의 유사하게 한 13% 수준이고 독일이 지금 현재 25%세율을 가지고 약 17.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상당히 full imputation을 많이 이중과세 조정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인세부담율에서 결코 높지 않고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가지고 물론 평균적인 세부담을 가지고 비교해도 그렇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현재 평균 취득세 부담율을 가지고 비교해봐도 법인자체가 부담하는게 full imputation을 제외한 그런 세율을 해봐도 우리의 부담수준이 지금 중소기업의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 만은 1억 이하에 대해서 경우에는 15% 세율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데 게다가

가 또 특히 제조업이라던가 일부업종의 경우에는 또 20-30% 경감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세부담율을 실질적으로 12%밖에 세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의 경우도 실제 현행 명목세율은 27%입니다. 만은 실효세 부담율이 22%로 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국 수치를 가지고 어느 나라와 비교해 봐도 우리의 법인단계 세부담이 낮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기업세부담을 가지고 생각할 때 우리나라 재정수입 정도라던가 또 우리기업의 해외 경쟁력 문제 또 국가경쟁력이 어떠냐 이런 점을 고려해 가지고 우리기업이 외국에 나가서도 충분히 활동 할 수 있고 그 다음 또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점을 감안해서 현재 법인단계 세율을 가지고 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저희들도 앞으로 이게 정답이다 이런 답이 없습니다. 하나의 법인세율 수준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정답이 없고 앞으로 우리기업의 경쟁력이라던가 재정수입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미국이라든가 하나의 외국의 법인세 추세를 고려해서 법인세율을 가지고 검토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이인실 박사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상공회의소 엄기웅 상무님께서도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그 차등과세 시정문제는 사실상 세율체계 자체는 현재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다 대기업이다 이렇게 구분 없이 단순하게 과세소득기준에서 1억 이하는 15% 1억을 초과할때는 27% 이렇게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나의 감면이라던가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차등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 제도는 앞으로 상공회의소에서 지적했다시피 중·장기적으로는 폐지를 해야 될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단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 급격하게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행 제도를 가지고 당분간 유지할 수 있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중과세 조정장치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중과세 조정장치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고 그러나 문제는 지금 현재 이게 full imputation을 우리가 1999년 이전까지만 해도 full imputation시스템을 했습니다. 만은 지금은 법인세율이 낮은 단계의 세율을 기준으로 해서 imputation시스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중과세 조정장치 full imputation을 못하는 이유가 저희들 실무상에서 지금 소액주주 배당은 분리과세 되어있고 대주주 배당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되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부담을 해보니까 오히려 법인단계하고 개인단계 세부담을 종합해 보았을 때 대주주가 유리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낮은 단계 16%로 세율로 갔다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full imputation으로 간다면 현행 종합과세 이자료와 배당에 대한 세율체계를 가지고, 소액주주를 가지고, 분리과세제도를 가

지고, 유지하고 있는 이상은 대주주에게 세액을 오히려 경감해 주는 그런 불합리한 제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조정장치를 낮은 세율을 기준으로 해서 imputation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차입금 지급이자 문제는 어느 나라나 동일합니다. 이것은 배당에 대해서 비용을 인정해주지 않는 이상은 어느 나라나 동일한 하나의 시스템이고 그 다음 이 증자 소득공제를 가지고 계속 유지를 했을 때 또 하나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이것을 가지고 한 10년 동안 과거에 운영을 해봤습니다. 일부 불필요한 증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 일부 업종에서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한 10년 동안 운영을 하다가 폐지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월공제 확대에 대해서는 현 이월공제 확대가 5년인데 현재 이월공제 문제는 조세시효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5년으로 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라든가 기업의 현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저희들도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법인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재정학회에서 많은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고 토론회에서도 많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종합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문 교수:**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들 하셨지만 중·장기적으로 생각할 때 법인세 폐지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4~6년 생각한다고 하시면 초과적인 법인세 한 1~2%포인트 정도는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대한 세제감소에 대한 어떠한 대응방안이라든가 대체방안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단지 하나 염려가 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초과적으로 인하한다고 했을 때 잘 아시다시피 근로소득자 같은 경우도 44%가 세금을 한푼도 안내지만 일반사업자들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세제가 직접세하고 소비세가 50대 50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법인세를 폐지 한다하더라도 직접세율이 워낙 높으니까 아마 실질적으로 큰 타격은 없을 거란 말이죠 재정수입이나 국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소득측면 뿐만 아니라 소비 같은 경우 탈로나 탈세 그러한 측면을 생각한다면 법인세인하가 일반 탈로·탈세와도 연관시켜봤을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그러한 것도 함께 초점이 조금 틀릴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조세 탈로·탈세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직접세로서의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법인세를 만약 지금 이인실 박사님의 연구결과처럼 소득세라든가 부가가치세 일부를 부분적으로 인상 전환한다고 했을 때 그사이에서 빠져나가는 탈로나 탈세가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효과까지도 감안해서 추가적인 연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1:** 우선 오늘 세미나 제목이 『자본소득과세 정책과제』 정책세미나 인데 정책과제라는 것이 굉장히 매력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실성이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막연이 현실을 떠나 것은 하나의 이상이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현박사가 발표한 결론을 보니까 자본소득과세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면서 소비와 소득의 관점에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저는 굉장히 동감이 갑니다. 또 한가지는 납세협력비용 문제 이 두 가지에 중점을 두었는데 지금 우리 나라에서 자본소득과세 정책과제를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지금 정책과제로 제시할 필요성이 있는가? 이러한 것도 막연히 외국에서 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런 것보다는 현재 우리나라 조세체제가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본소득과세 문제를 정책과제로 다뤄 보기로 했다라는 이슈를 한번 내보이면 국민이든지 다른 사람이 이해하기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고 두 번째로는 아까 이인실 박사께서 시뮬레이션을 아주 열심히 하셔서... 아까 곽태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여러 가지 분류형으로 해서 문제점만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도 저는 현실성문제하고 연관되어서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법인세를 인하한다고 볼 때 세출을 감소를 해서 소위 밸런스를 유지한다. 또한 부가세를 올리는 방법도 있다. 여러 가지 제시를 해 주셨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정부세출 실제적으로 지금 줄일 수가 있느냐? 지금 줄일 수가 없다면 지금 이 아이디어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부가세를 올릴 수 있느냐? 우리나라가 높다고 봐야하느냐? 이런 정책과세를 제시하려면 어떤 세출의 감소든지 부과세 인상이라든지 할 때 거기에 대안도 짧게 comment 해준다면 우리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정부에서 정치인들이나 혹은 세출예산 줄이겠습니까. 절대 못줄입니다. 흔히 저는 옛날부터 그런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정부에서 세출예산을 줄이려면 세출을 집행한 장관이 잘못 집행했을 때 책임을 져라 그렇지 아니면 국회에 감사원을 뒤라 감사원이 수시로 감사를 하게 해라 이러한 대안을 내놓고 세출을 줄이라고 해야지 현 체제아래서 어떻게 세출을 줄이느냐 이것은 현실성이 없다.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내도 이것이 현실성이 없다면, 그냥 아 그거야 다 아는 것 누구나 주장하는 것 이러한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심여를 기울여서 우리 이박사님이 열심히 하셨는데 그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구요. 간단하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 많이 하셨어요 법인세 없앤다 인하한다 하는 문제 이게 왜 필요하냐고 우리나라에서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면 왜 필요한가 지금 미국이나 선진국은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직접세율이 크거든요 그런데 거기서는 간접세율의 균형문제라든지 기업경영의 효율화 문제 그러한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간접세의 비중이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직접세의 효과를 가지고 있잖아

요 이것이 최소한 50%도 넘는데 여기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가 이렇게 또 의심이 되고 또 한가지는 아까 주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인세를 만약 과세하지 않는다면 예전에 지상배당문제가 있어 기업이 유보소득을 놔두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모든 기업이 투명화 되어 있는데 삼성이 몇 천억 가지고 있다. 국민들에게 배당 해야죠. 지금 어느 때인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현재 그런 문제는 제가 볼 때 아마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저의 소견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법인세의 폐지문제고, 마지막으로 서울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세율을 저는 한 10년 전부터 내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대안의 시제가 뭐냐 하면은 넓은 세원 이건 굉장히 좋은 예기죠. 넓은 세원 중에서도 과표 현실화입니다. 거래금액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 선입니다. 그것을 한 다음에 세원을 넓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표 현실화가 전 안되어 있거든요. 전문직업이라든지 이런 문제 먼저 과표 현실화를 해놓고 거기에 맞게 세금을 내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해 봐야 합니다. 넓은 세원 그것은 당연한 예기죠. 그것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과표 현실화시키자. 요즘 정치자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대가성이 있으면 최고죠 대가성이 없으면 끝이죠. 왜 끝입니다. 증여세 과세해야 됩니다. 정치자금에 의지하려는 것이면, 증여 아납니까. 그런 세원을 자꾸 현실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두서없이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광 교수:** 법인세 폐지문제는 저한테 특별한 사항으로 생각되는데 지상을 통해서 일일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되었지만 문자 그대로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된다. 옛날의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시대는 지났다고 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 한이 없는데 한 두가지만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하는 배경 자체 기술적인 측면이 될 수는 없고 우선 첫째로 우리나라의 세금이야기 보다는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세출에 금년도예산이 115조인데 여기에서 3분의 1정도를 덜어내야 만이 대한민국이 발전의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제가 말하고자 하는 가장 큰 핵심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론 적자재정을 못하는 정치를 하면서 세금징수가 적게 들어와야만 가능하다. 지금 우리가 여러 사항 속에서 많은 국가채무를 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보면 세계 잉여금이 해마다 발생을 한다. 세계 잉여금을 가지고 다음해의 예산이나 추경에 보편은 본 예산에 거절된 것이 추경예산에 그 아이템 모두 살아납니다. 그것은 다른 아이템도 아니고 본 예산을 기획예산처에서 심사할 때 죽은 수많은 사업들이 추경에 가서 살아납니다. 이러한 사실들도 우리 학자들은 지금 모르는 것입니다. 단순히 판공비비리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중앙정부 예산 지방정부 예산이

얼마만큼 낭비가 되고 있느냐 일본이 안돼는 것이 최경수 실장이 일본에 가서서 잘 아시겠지만 일본의 어려운 문제가 재정의 엄청난 낭비 때문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NHK의 기자가 2시간동안 4차선 고속도로에 서있었는데 차가 한 대도 지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지방정부도 보세요. 쓸데 없는 건물이 엄청나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우리가 또 IMF 같은 경제 위기가 온다면, 지난번은 민간부분에 허가를 잘못해서 IMF가 왔고, 앞으로는 공공부분에 생산성이 없거나 낮은데 투입한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위기가, 이러한 정신상태와 제도를 가지고 간다면 분명히 온다고 봅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세율을 27%를 0으로 한다는 것이 폐지인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소득세가 한때 70% 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6% 내려 왔습니다. 자 그럼 70% 였던게 36% 내려오면 34%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27%가 0% 된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것이 발상의 전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세 자체만 한번 놓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31나 32개 세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목 중에서 법인세만큼 우리가 이야기하는 형평성에도 전혀 기여를 못하고 효율성에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세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물론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31~32개의 세목 중에 법인세만큼 형평성이나 효율성 모든 측면에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 아무 목적도 달성하지 못하는 세목이 있으면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그 다음에 지금 직접세 간접세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해주셨는데 그런데 교과서는 그렇게 잘 해놓고 논의는 아주 엉터리입니다. 어느 세목이 직접세이고 어느 세목이 간접세입니까. 제가 보기에 어느 세금도 직접세인 세금이 하나도 어느 세금이 간접세인 세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일반사람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이야기를 한다면 말을 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재정학자들이 앉아서 지금 국제통계 한번 보세요. 소비에 대한 과세 재산에 대한 과세 소득에 대한 과세는 일본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소득세가 증가가 안됩니까. 됩니까. 모든 직접세와 간접세를 엄밀하게 전혀 분류할 수 없는 그러한 정확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모른다. 국세청이 단지 어떻게 분류를 해 놓으면 그 비율을 가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을 보고 정책이 잘되니 잘못되니 이렇게는 하지 맙시다. 사실 이게 말이 안돼는 창피한 얘기 지 않습니까. 학자들이 이래서 되겠어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한 본질점에 대해서 사실을 많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도 진짜 해야할 고민은 앎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저의 주장이 옳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두가 던져지면 진짜 왜 그러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되지 어떤 사람들은 머리에 빨간 사람들 만이 하는 것 같이 생각진 말아야 합니다. 저도 제 주장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 말아야 하고, 그러한 주장

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한민국 세제가 진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걸을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기웅 상무:** 최고수님이 법인세 폐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왜 대안이 없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법인세 폐지를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는 데로 정부지출을 줄여라하는 방향에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지금도 그것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지금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하나의 구체적인 대안이 결여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법인의 실체에 대해서 부인하는 입장이신데 경제의 중심역할을 하는 것이 법인입니다. 그런 법인에 대해서 법인세 폐지를 하고 어떻게 어디에서 과세를 해야 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때에는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하나의 대안이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최광 교수:** 책임 있는 자는 당연히 대안을 가지고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대안을 말씀드렸는데요. 법인세에 해당하는 만큼 세출에서 삭감을 해야 하고 물론 현재 징수하고 있는 법인세 두 배 정도를 징수해야 합니다. 이것도 올바른 정책이라는 것이 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방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매년 27%이니까 매년 5%포인트씩 감소를 해나가서 5년 안에 없애던지 논의를 나누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영 교수:** 첫번째 법인세율을 낮추면서 다른 세율을 높이거나 지출을 낮추는 것을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기업관련된 여러 가지 감면제도를 없애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제는 정부에서 어느 산업 어느 부분이 발전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하는 단계는 지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법인세에 관련해서 다른 텍스 컴피테이션에 대해서 이야기 하셨는데 OECD 국가만을 이야기하는데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저희보다 낮은 세율일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율을 폐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경수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세율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소득재분배(income shifting)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소득으로 사람들이 보고를 안하고 모든사람들이 법인소득으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걸루 세수감소나 디스토크션이 생기는 것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폐지는 우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여러 가지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율이 높기 때문에 낮추어야 한다 경기부양 등 일반론적으로 효율성을 하자 이중과세를 없애자 또는 조세경쟁 때문에 좀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한목목을 추가

하면 법인세율이라는 것이 투자활동 기업활동을 조장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법인세율이 성장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이 간접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실증 연구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그런 근거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진권 박사:** 제가 이 페이퍼에서 주장하는 것이 법인세를 폐지를 하자는 주장을 한 것은 아니고요.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사회에서 30년 동안 근본적인 세계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학계에서나 정책입안자들 사이에서 논의가 되고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 속에서 한번풀어보자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했었습니다. 당장 내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어떤 형태든지 이런 법인세폐지 등이 좋은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폭넓은 차원에서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레슨 그것을 가지고 받아보자는 측면에서 이야기했습니다. 1986년도에 세계개혁이라는 것이 미국에 의도한대로 되지 않고 과거로 회귀한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진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또 한가지 미국경제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주는 의미가 상당히 큼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전 세계개혁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준비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외에 사소한 것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실 박사:** 모형에 관해서 이야기하신 것은 일반 균형 모형에 파라미터 설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이게 지금 산업이 26개고 소득계층이 10개고 이렇게 복잡하게 경제 calibration에 맞춰 있습니다. 이제 하나라도 잘못되면 맞추기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다각도로 검증을 했기 때문에 모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지만 거기에 맞추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하구요. 객교수님에게는 저희가 완전한 보고서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폐지문제와 법인세 인하의 문제인데 폐지문제는 지금 당장 맨땅에 헤딩하자는 말이 아니고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이러한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해야 하면서 나가야 해야 한다. 우리도 이제 생각할 때가 되었다라는 개념을 가지시면 될 것 같구요. 인하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적어도 10%의 인하는 큰 무리가 없겠다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구요 현재 27%면은  $\pm 2.7\%$  정도면 최적상태로 갈 수 있다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구요. 이걸 한 이유는 무작정 작년 같은 세율을 가지고 논의를 하면서 경기부양이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좀더 어느만큼만을 하는 것이 경제에 효율적이냐는 차원에서 저희가 했구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10% 정도는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대안도 가지지 않고 이런 것을 하느냐고 하셨는데 역할분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하면서 지출을 줄이는 것이 분명히 여러 가지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행정쪽 담당하시는 분이 고민을 하셔서 국회에 감사를 요청하던지 대통령을 갈아치우던지 해서 하는 것은 그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이곳에 오기전에 점심시간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차기정부과제를 했었어요. 쪽내용을 하고 결국 우리가 낸 과제를 실행할것이나 해서 기자분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정부조직을 바꾸는 것이냐 하는 것이었구요. 거기에 오늘 말씀하신 것이 모두 들어있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장오현 교수(사회자):** 잘아시다시피 오늘 이 토론회는 국내외적으로 조세정책환경이 크게 대세로 변화하고 있다는 이런 문제 의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실겁니다. 오늘 논의가 자본소득과세를 중심으로 법인세 부분에 치중해서 논의가 되었지만 앞으로 이런 논의를 보다 더 확대하고 심화시켜서 소득 소비 재산세제를 포함해서 여기에 정부지출이라던가 준조세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차트를 마련하는 계기가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